

建築士

■ 등록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 (사) 라-26
 ■ 1985년 12월 31일 제 3종 우편물 (나)급인가 ■ 우편번호/ 137-070
 ■ 1990년 9월 15일 발행 ■ 통권 257 호 ■ 발행/ 대한건축사협회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다.

리

로폴만을
결실일뿐
커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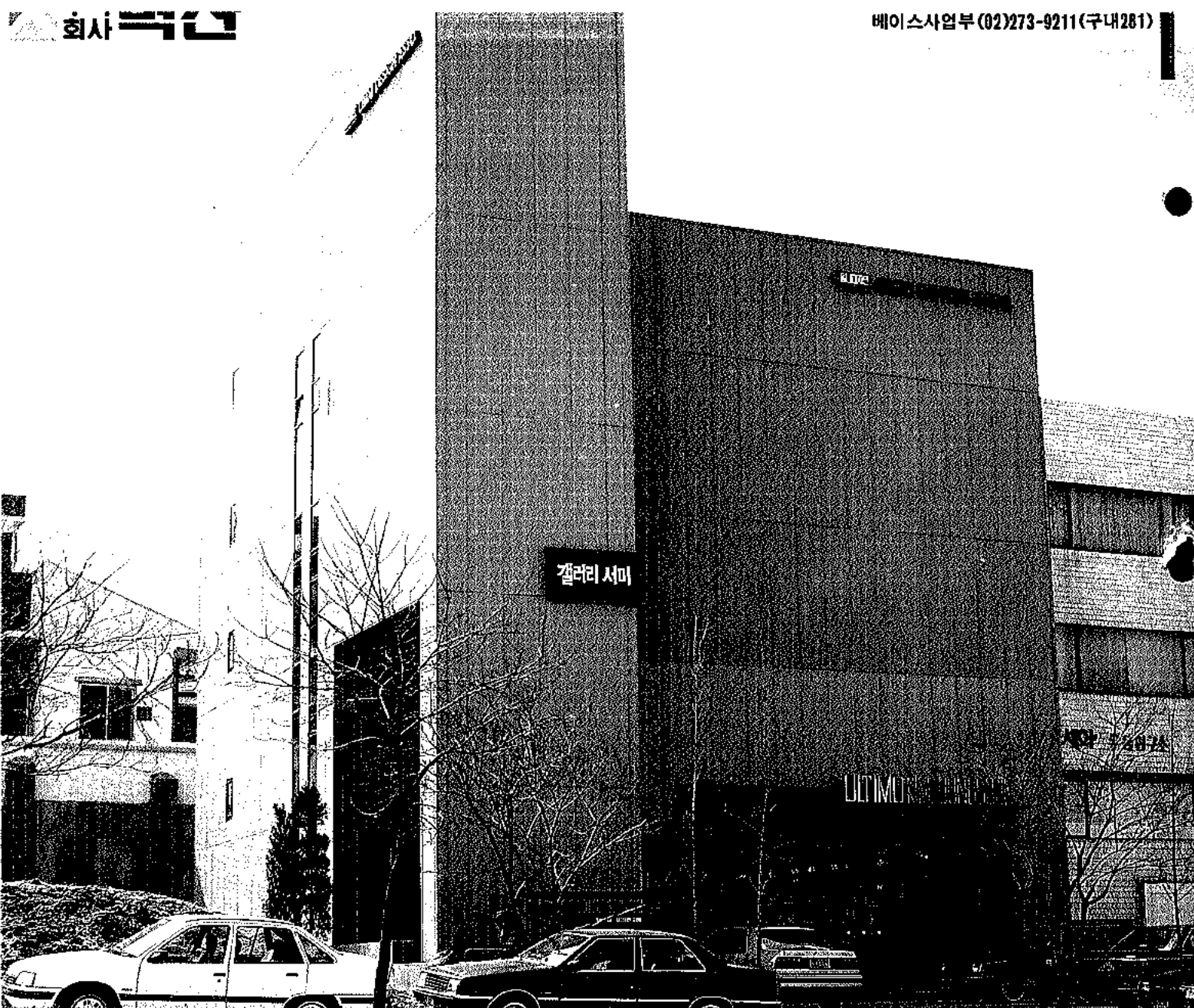
와 노력
앞으로
부스치로
여, 보다
이바지

로폴은
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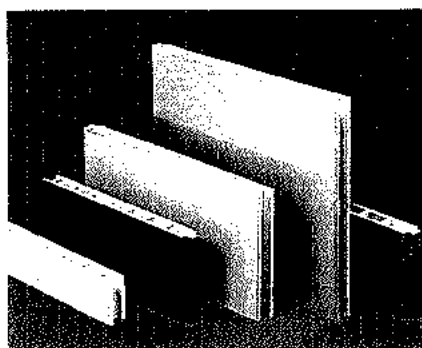
로폴

원료제조원
학주식회
 등복구 여의도동 43 ☎ 784-
 구 성암동 45-25 ☎ 73-114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부하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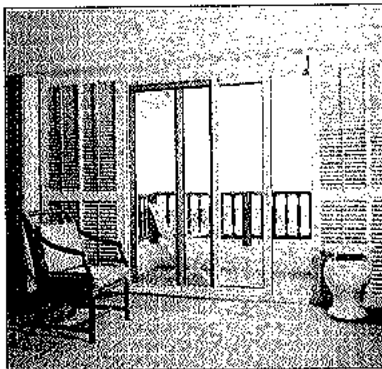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명품창문 이견창호와 세계수준의 제주신라호텔이 만났습니다

제주도 중문에 본격 리조트호텔로 문을 연 제주신라.
세계적 수준의 제주신라호텔 330개 객실 창문으로
이견창호 Royal Lift Sliding Series가 선택된 이유—

세계 10대 호텔로서 신라호텔의 명예가
제주신라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호텔측이 창문 하나의 선택에 보여준
세심함은 컸다.
평상시 강한 바람은 물론,
여름에 특히 태풍이 많은 제주해안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떤 창문이 적합할까?
'밀폐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창문'—
이견창호 특유의 장점이 호텔측이 요구하는
기능에 그대로 일치되어 뛰어난 기능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주는 창문으로서
멋진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설계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뛰어난 기능으로 건물의 품격을 더해주는 이견창호

디자인·소재에서/기존 창호와 전혀 다른 개념의 소재 결합과 칼라의 조합으로
건물의 다양한 요구에 알맞게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방음·단열에서/컴퓨터로 정밀 설계되고 밀폐성높은 가스켓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방음, 단열 효과가 특히 뛰어납니다.

환기·개폐에서/특수 기어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부드러우며 환기만을 위한
특수 개폐가 가능, 환기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므로 쾌적한 실내가 유지됩니다.

안전·수명에서/특수 유리와 고강도 소재 사용, 특수 배수 시스템에 의해
수밀성과 내부식성, 내풍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대풍, 폭우등의 악천후에서도
변형되지 않으며 독특한 잠금장치로 인해 도난, 침입의 우려가 없습니다.

시공에서/공장 완제품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간단하며 전사공법에 의한
깨끗한 마감 처리로 정기적인 보수 필요없이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견 시스템 윈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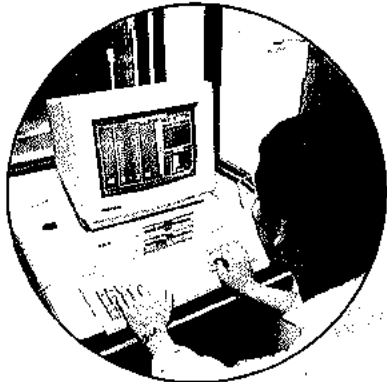
■ 상설전시장 안내 위치 : 강남구 논현동 58-7 테석빌딩 3층
전화 : 540-2071~9 FAX : 540-2080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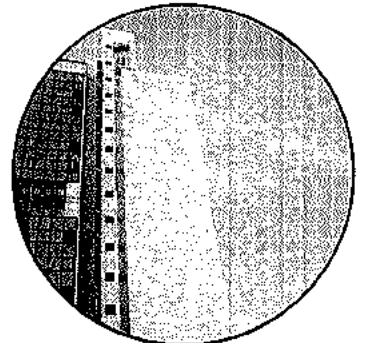
이견창호

●이견산업주식회사 ●이견자원개발주식회사 ●EAGON FOREST PRODUCT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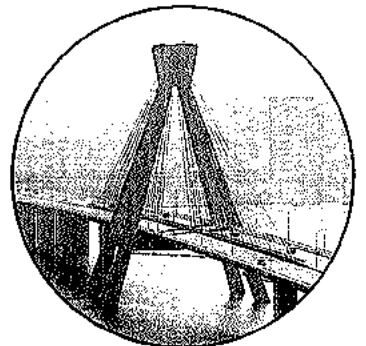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문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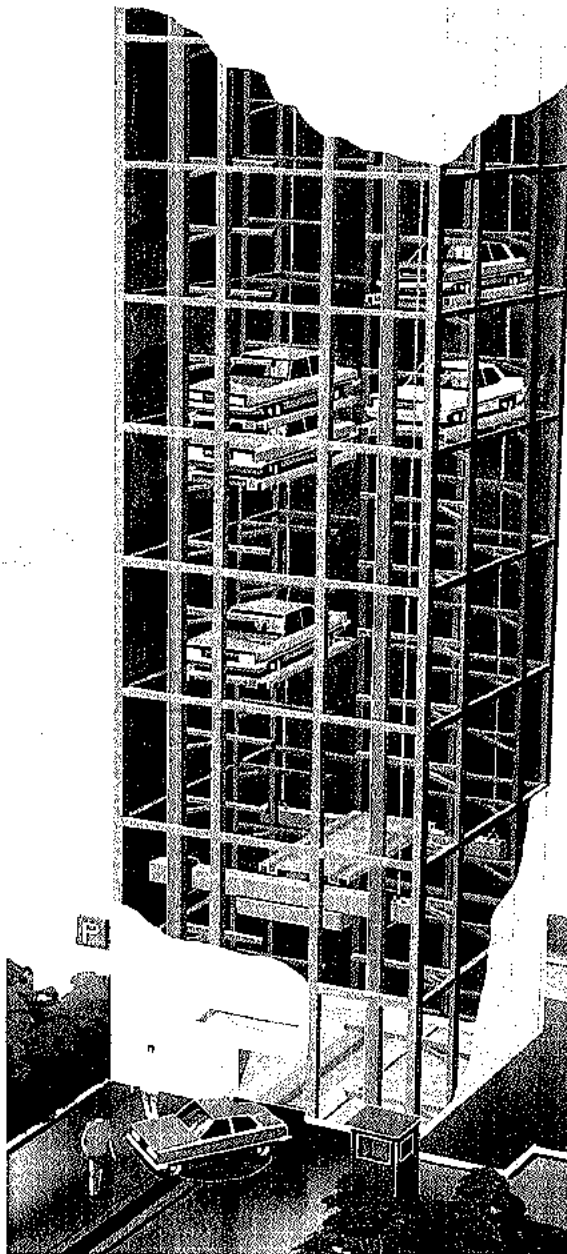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문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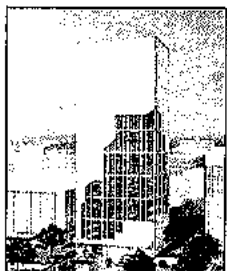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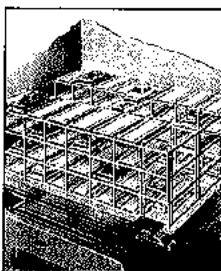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YOP-A 연립형



YOP-M형



유원건설

상단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옴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 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INSU
PANEL
SYSTEM

1급불연 단열파넬 탄생!

INS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소재가 1급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였으므로 기존단열파넬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화재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 방화실험장면)



주식회사 연합인슈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02)745-0687, 아전 : (0336)32-4635~6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555-6891, FAX : 553-1651
부산사무소 : (051)462-9554 · 대구사무소 : (053)53-4543
광주사무소 : (062)524-9779 · 창원사무소 : (0551)85-5944



좋은 설계를
위하여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청사진 복사기 pd 11801
암모니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Convenience Engineering
Copier with Automatic Original Print Separator

AMMONIA가 필요없는,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MECHANISM의 결정체입니다.

COPINICA PD 118은 종전의 AMMONIA를 사용하던
복사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특한 System인 1R, 2B, P
현상방식과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건식 청사진복사기
입니다. (복사폭 680mm)

지금까지 청사진 복사기의 최대 난점이었던 AMMONIA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시간이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스위치
한 동작으로서 작동되는 COPINICA PD 118은 어느 업종,
어느 장소에서나 효율적인 작업을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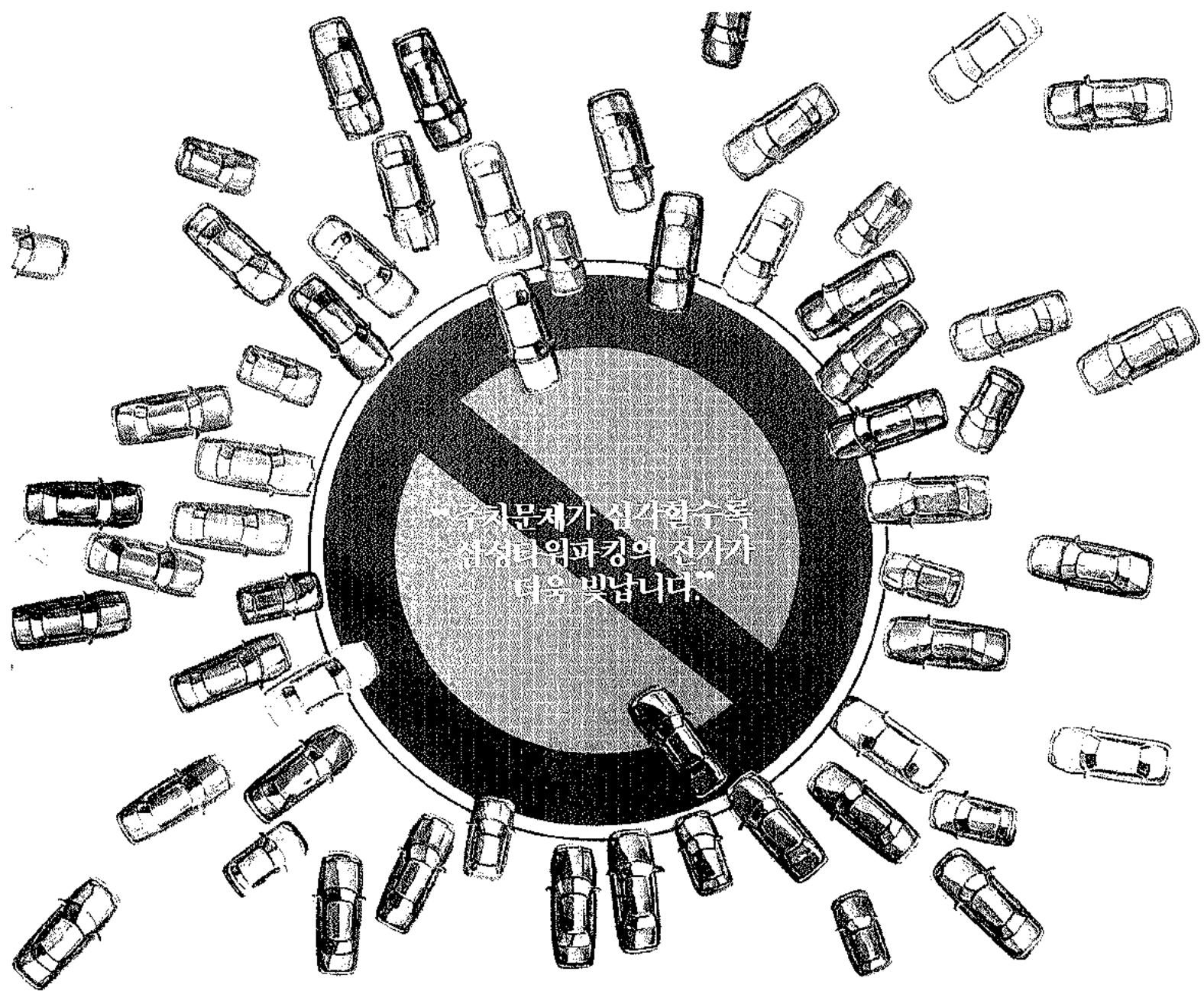
Items

- Diazoprinter
- Wide-width Plain Paper Copier • Copy Paper
- PD Copier • Film Sepia • Tracing Paper
- Sensitive Paper (blue, black line, PD, etc.)
- ALL REPROGRAPHICS EQUIPMENTS



(株) 龜 映

The Pros in Reprographics in Korea.



삼성타워파킹

국내 처음으로 초고속형,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일찌기 15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 주차난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가종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턱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 엘리베이터방식
- 다층순환방식 ● 2,3단 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본 사 : (02)728-6431~3 FAX: (02)728-6214, 756-9358
 창원공장 : (055)160-6382~3 FAX: (055)160-6767
 부산지점 : (051)807-6814 FAX: (051)862-5375
 대구지점 : (053)254-3004~5 FAX: (053)23-9244
 광주지점 : (062)224-2174 FAX: (062)224-2173
 대전지점 : (042)253-2252~3 FAX: (042)253-3988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 —

수직순환방식 :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상자(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엘리베이터방식 :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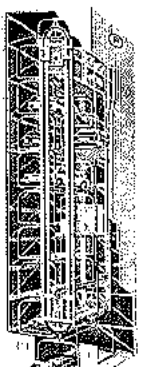
1. 초고속형 : 입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턱테이블내장형 :

Cage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2대를 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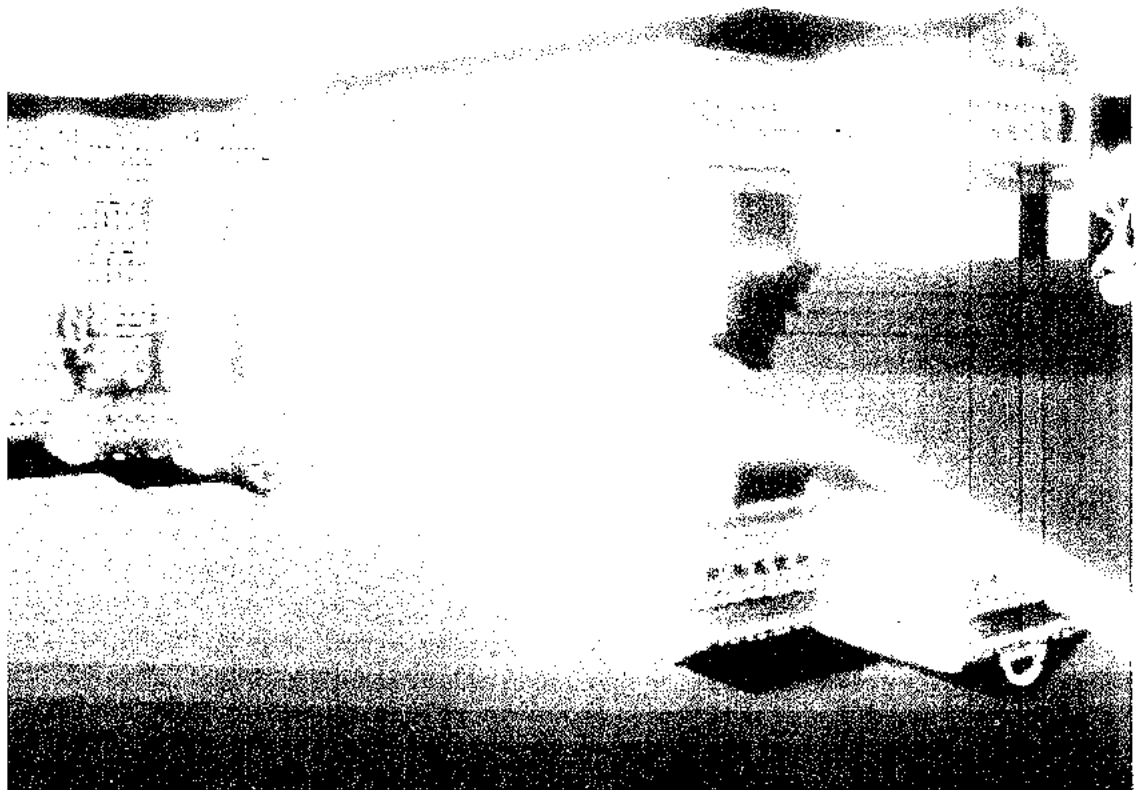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완벽지원, 완벽CAD 썬알파-플러스

썬파워386과
ARRIS의 만남.



썬알파-플러스 TURNKEY-SYSTEM의 특징

●HARDWARE FEATURE

풍부한 기술력을 보장하는 사통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과
엄선하여 권장하는 각종 주변기기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초고속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며, 완벽한 A/S를
통하여 User를 최대한으로 지원합니다.

●CAD SYSTEM FEATURE

- 최고의 건축전용 CAD인 ARRIS를 채택, 2D/3D그래픽등 모든 CAD작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범 DRAFT전용의 2D-시스템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3D 및 그래픽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유물인 건축물 창작에 노력하시는 건축사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 완벽한 CAD의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효율성, 다양한 기술 개발등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지원분야

썬알파-플러스는 MS-DOS로 지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패케지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범 DRAFT전용 S/W

Auto CAD, VERSA CAD, MICRO CAD,
Micro Station

D/A (Design Analysis)

구조, 기계, 전기등의 각종 계산용 S/W + 기획설계

W/P (Word Processor)

각종 시방서, 보고서등 문서작성용 S/W

ARRIS의 특징

- 건축 디자이너를 위한 건축 전문 CAD S/W PACKAGE
- 과거 MAIN FRAME급 CAD의 성능을 PC에서 실현
- 건축 SCHEMATIC DESIGN 단계에서 실시 설계까지 일체식 SEQUENCE로 지원
- XENIX O/S사용으로 기존 PC CAD의 DOS한계 극복
- 화면 MENU방식으로 손쉬운 조작
- ISOMETRIC, 조감도, 내외부, 투시도등 완벽한 3-D기능과 시간별 광원지원으로 완벽한 음영 CHECK 가능 보유(일조권)
- 건축자료의 DATA BASE화로 인력에 의한 기술 누수 방지
- 2D, 3D도면에 입·단면기호, 방위표시, 가구, 자동차, 나무 등 SYMBOL지원
- 1,600만 칼라 제공 및 신속한 칼라변화
- 컴퓨터에 의한 대고객 프리젠테이션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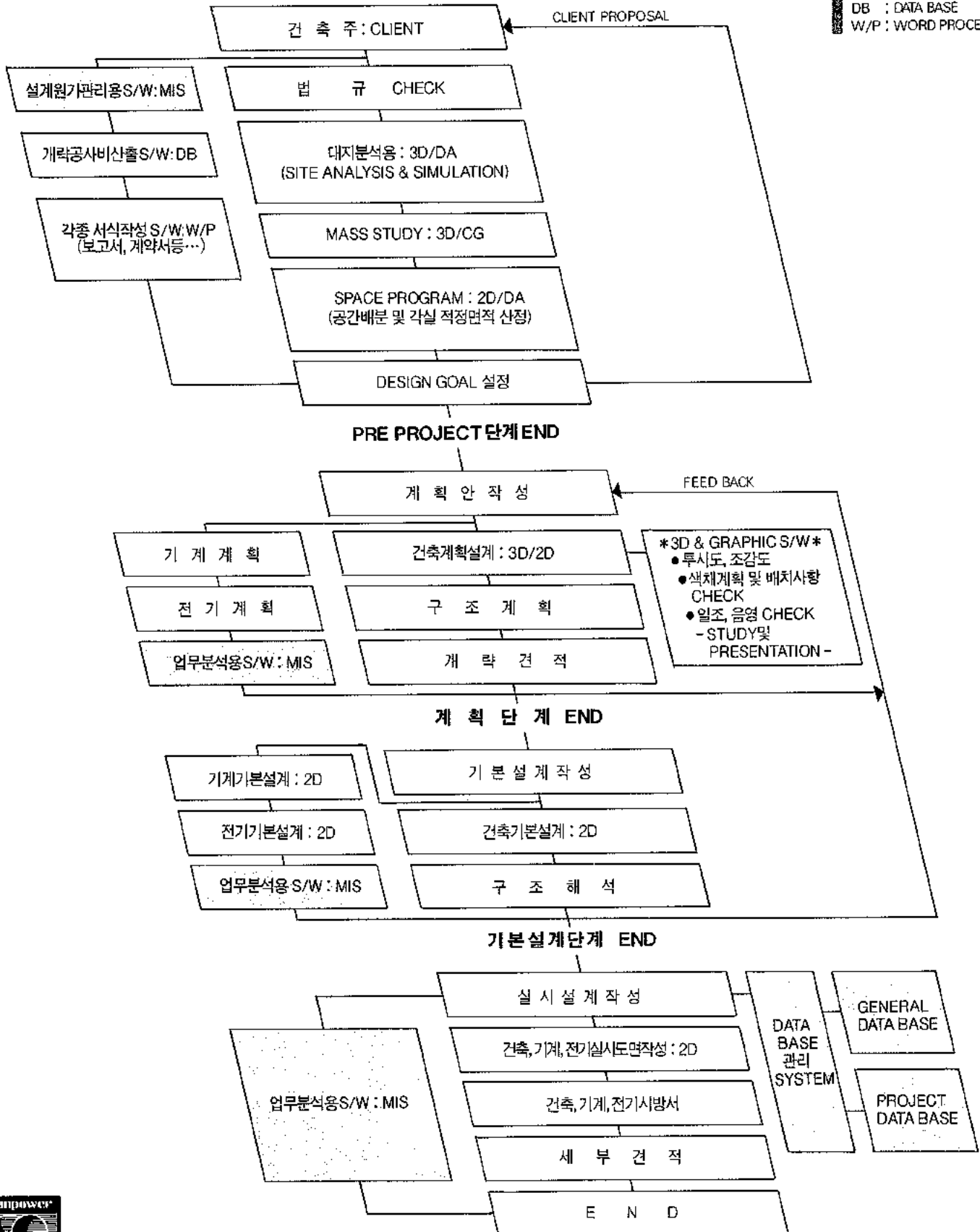


- 국내실정에 알맞는 Detail Library 및 건축자료 표준화를 위한 기법제공 예정
-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의 완벽한 교육지원

건축설계 전산화 SYSTEM MODEL

이 MODEL은 건축설계 전산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제시이며,
썬 알파-플러스는 이중 CAD부분을 지원합니다.

CAD : 2D :
3D/CG :
DA, DB :
W/P :
경영정보 :
2D : 2차원(평·임·단면도등)
3D : 3차원(투시도등)
CG : COMPUTER GRAPHIC
DA : DESIGN ANALYSIS
DB : DATA BASE
W/P : WORD PROCESSOR



서통 시사업부 5140-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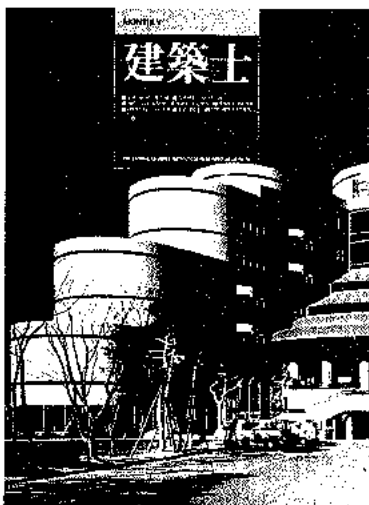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썬파워컴퓨터 전시장 Tel. (02) 5140-386 (代) Fax. (02) 545-0296

차례/1990년 9월호 통권 제257호

會員作品	천주교 수색교회/閔承烈	12
	쌍둥이네 빌딩/呂運澤	15
	명성 웨딩프라자/金厚錫+吳慶恩	18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李珪杓+김진기	20
	델타빌딩/崔東奎	22
	마샬 웨딩프라자/金希洙+金性東	24
나의 스케치	J작업실/金洛中	26
論壇	종합건설업면허제 도입에 대한 제언/姜泰錫	28
알아두어야 할 것	건축인-쟁이정신의 재음미/盧亨來	31
	建築法 遺憾/崔勝元	32
誌上마련	건축설계경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좌담회	33
	건축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	80
기획특별	都市計劃側面에서 본 上溪新市街地開發/呂鴻九	42
	新市街地 建築을 點檢하며/李璿求	48
新 說	亭子建築의 實例와 현대적인 응용요소/張順鏞	56
	建築士의 單獨住宅 設計傾向/金鍾仁+嚴仁燮	62
	중소규모 설계사무소와 CAD/李泰榮	68
建築紀行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2)/裴元太	72
작 보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	88
	1990년 7월분 도서신고현황	94
新入會員		93
協會消息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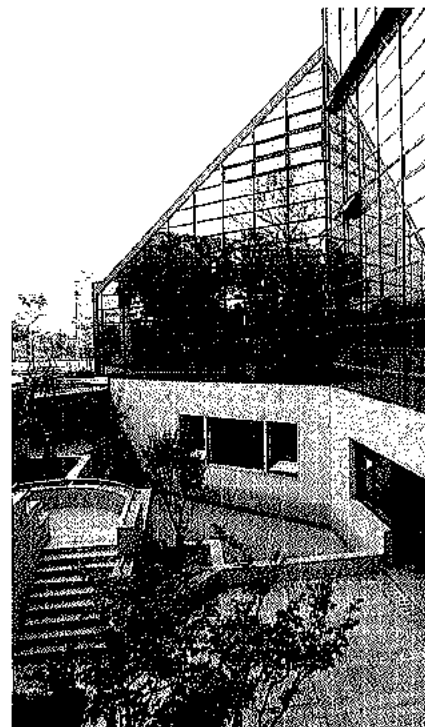
發行人: 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委員: 董政根, 朴舒弘, 吳澤吉, 金基哲,
 趙聖烈, 崔正一, 鄭正治, 朴研心,
 崔命品, 金周喆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년 3월 23일
 U.D.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珪/洗文精版社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Member: Dong, Jeong-Keun/ Park, Seo-Hong/ Oh, Teak-kil
 / Kim, Kee-Chul/ Cho, Sung-Yul/ Choi, Jeong-Il/
 Jeong, Jung-Chi/ Park, Yeon-Sim/ Choi, Myung-
 Chul/ Kim, Joo-Cheo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dcho-dong, Seod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Printer: Jeon, Yun-Kyu (Kwang Moon Printing Co.)



표지: 명성 웨딩프라자
 (설계: 金厚錫+吳慶恩)

WORKS	Sooseak Catholic Church/Min, Seung-Ryeol	12
	Ssangdongine Building/Yeo, Woon-Taek	15
	Myungsung Wedding Plaza/Kim, Hoo-Suk & Oh, Kyung-Eun	18
	KEPCO Chonnam District/Lee, Kak-Pyo & Kim, Jin-Kee	20
	Delta Building/Choi, Dong-Kyu	22
	Marshall Wedding Plaza/Kim, Hee-Soo & Kim, Sung-Dong	24
MY SKETCH	JWorkshop/Kim, Nark-Joong	26
FOCUS	Objection of the Composite Construction Industry Licence System /Kang, Tae-Seok	28
ESSAY	Architect-Close Examination of Artisan Spirit/Roh, Hyung-Rae	31
	Regretableness of the Building Law/Choi, Seung-Won	32
TABLE TALK	The Situation of Competition and It's Improvement Strategies	33
SYMPOSIUM	Direction of Building Law Amendment	80
REPORT	A Study on Development of Sanggye District in the View of Urban Planning/Yeo, Hong-Koo	42
	On 25 Story Apartment Block and Community Facilities in Sanggye Joonggye Housing Development/Lee, Sun-Koo	48
	Example of Arbour Architecture and It's Contemporary Application /Chang, Soon-Yong	56
	Design Trends of Detached Houses by Architects /Kim, Zong-In & Eom, In-Sup	62
	Architect Offices CAD System/Lee, Tae-Young	68
ARCHITECTURE TRAVEL	Tours of Mesopotamia Architecture/Bae, Won-Tai	72
MATERIALS		88
NEWLY ADMITTED MEMBER		93
KIRA NEWS		96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건축사회동1603-55, 581-5715~8.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화동169-25, 333-6411.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3기61, 634-2143. 강동분소 / 강동구상대동317-4, 484-6840.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종로분소 / 종로구장전동201-1, 738-5416. 마포분소 / 마포구 성산동275-1, 333-5251.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중구분소 / 중구로2가49-11, 279-1415.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은평분소 / 은평구북면동79-32, 352-6720.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241-6, 511-8515.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중랑분소 / 중랑구목1동171-12, 973-4921. 성북분소 / 성북구상선동5가110, 923-4401.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71(부산대파트4)(051) 246-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1-8, (053) 72-5141~2.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0146, 5100(한국종합빌딩204호).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북구동충동694-10, (062) 521-0025 (FAX) 521-0026.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시중구대충동437-1, (042) 254-2441.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24-5, (031) 47-6129~30. 직할분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8, (0331) 42-6490, 7072.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0343) 2-2698, 2-0012.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74-6, (032) 63-3144. 성남분소 / 성남시신원동5512, (0342) 2-5445.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정부동182, (0351) 2-1083. 송탄분소 / 송탄시신원동21, (0333) 4-6153. 고양분소 / 고양군관당읍고리38블락16롯데, (0344) 63-8902.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409-2, (0346) 63-8112. 이천분소 / 이천시이천읍중리216-8, (0336) 12-3396. 평택분소 / 평택시철산동464-7, 682-2875. 안산분소 / 안산시고간동531-5, 82-2820. 김해분소 / 김해시문정동39-5, (051) 54-2442. 원주분소 / 원주시일산동206, (0371) 42-3257.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6-14 (0391) 2-2262. 속초분소 / 속초시동명동466-33, (0392) 33-5081.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 12-3106.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월1리960-12, (0372) 43-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가116-168, (0431) 56-2752, 53-7342. 충주분소 / 충주시적전동673-1, (0441) 12-3082. 제천분소 / 제천시외평동8-8, (0443) 2-6253.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 32-9997.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충동473-1, (042) 256-4088.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160-1, 4, (0417) 2-4551.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리239-1, (0451) 32-2853.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 2-2217.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 34-336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북빌딩508), (0652) 87-6007. 이리분소 / 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 52-3304.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17가10-31, (0654) 12-4060.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106-2, (0671) 1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귀포시정동783-23(추신회관)(062) 364-7567, 33-9944.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1동, (0631) 43-3348. 순천분소 / 순천시장전동51-11(0661) 13-2457. 여수분소 / 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 164-7023.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인동17285번지, (053) 425-4904. 포항분소 / 포항시죽동43-22, (0562) 144-6029.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42-2(0561) 13-3638.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964-264, (0546) 52-6351. 안동분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 2-5703. 김천분소 / 김천시평화동280-1, (0547) 2-2541. 영주분소 / 영주시호천2동295-2, (0572) 2-4566. 철원분소 / 철원시중앙동280-3, (0581) 12-2706. 상주분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 12-4306.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3-47, (0551) 46-4530~1.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 74-8836. 진주분소 / 진주시사봉동7-20, (0591) 12-6403. 창원분소 / 창원시서호동163-18, (0557) 43-3577, 2-7420.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21B-10L, (0594) 12-6114. 밀양분소 / 밀양시상문동184-108, (0627) 53-2110.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 12-7090.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랑리522-4, (0523) 184-3050. 거제분소 / 거제군선현읍고현리139-2, (0558) 635-3432. 삼천포분소 / 삼천포시동광동91-6(0593) 33-3591. 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도1동1289-6, (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동299-6, (061) 32-7777.

천주교 수색교회

Sooseak Catholic Church

대지위치/서울시 은평구 종산동 221-1

지역·지구/주거지역·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1,436㎡

건축면적/677㎡

연면적/2,994㎡

건폐율/47%

용적률/122%

주차대수/육외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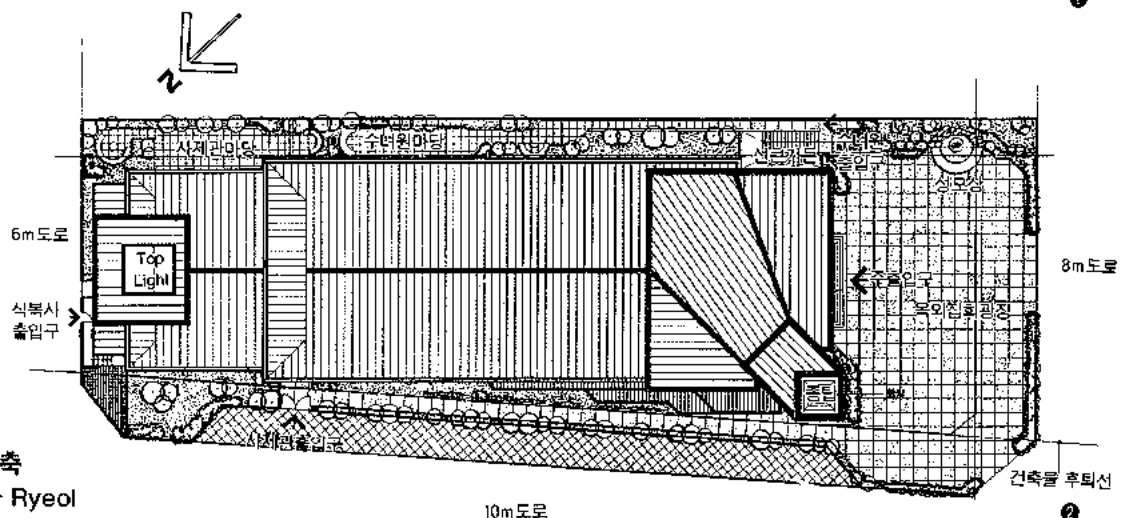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재료/외장—적벽돌 차장쌓기

지붕—아스팔트 싱글쌓기 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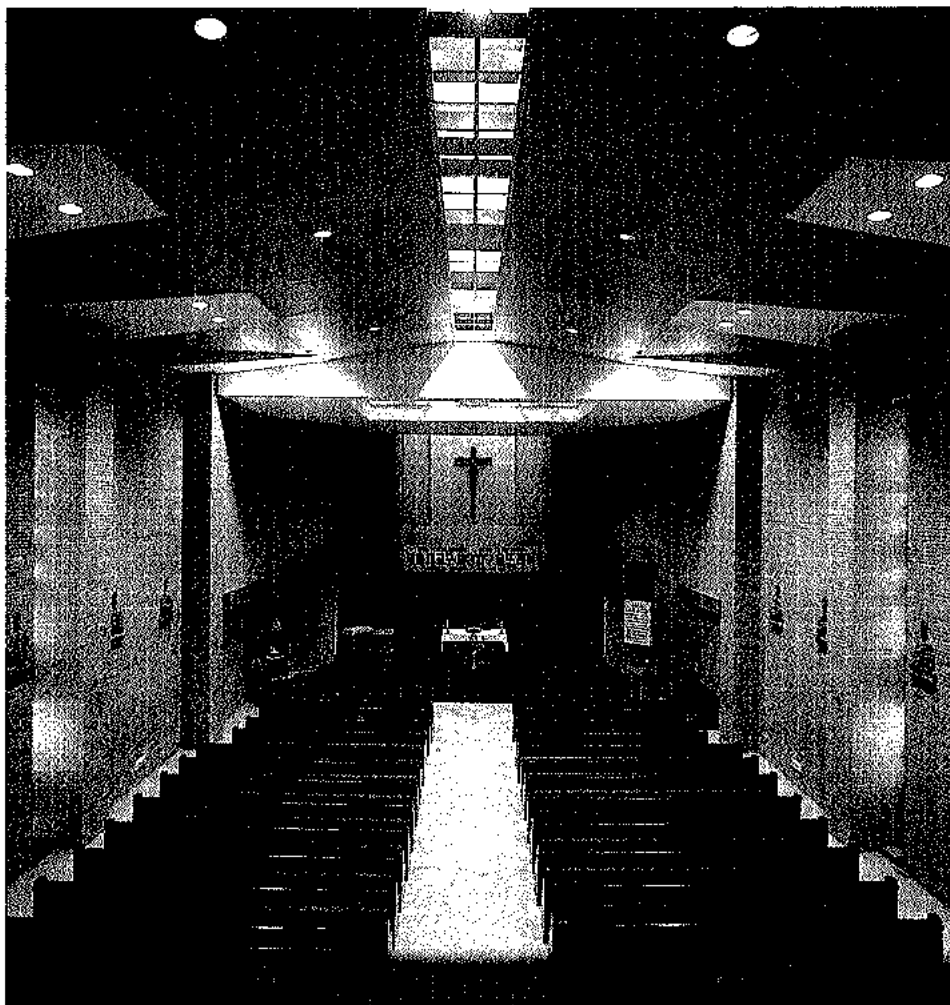
창호—THK 12㎜ 복층유리

+자연발색알미늄 샷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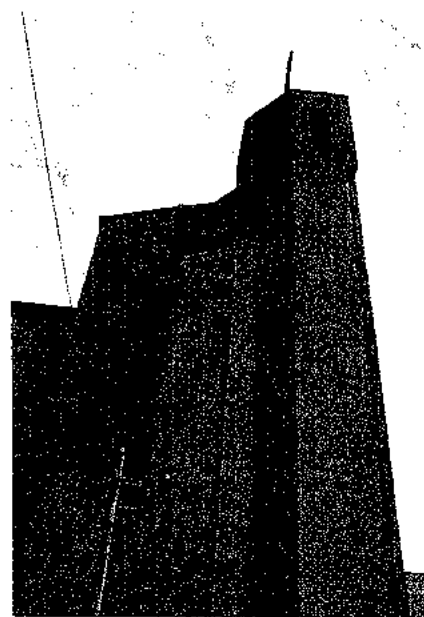


閔承烈/종합건축사사무소 빗건축

Designed by Min, Seung - Ryeol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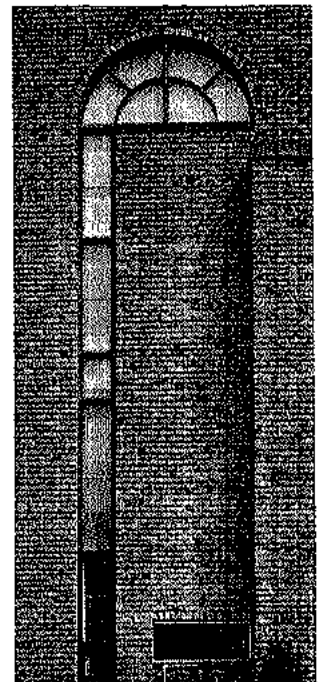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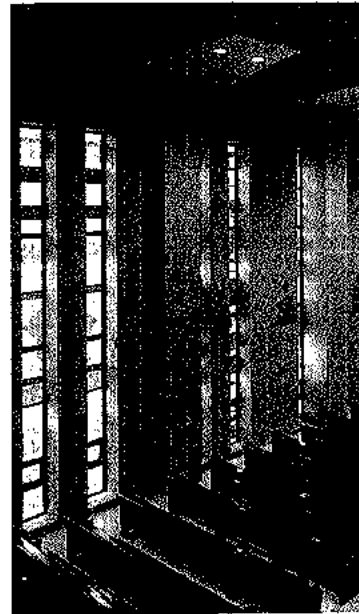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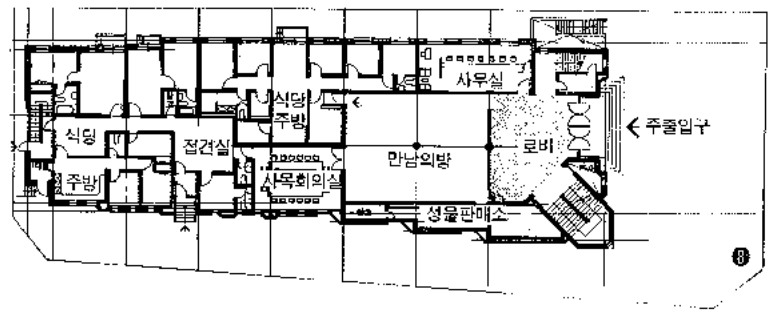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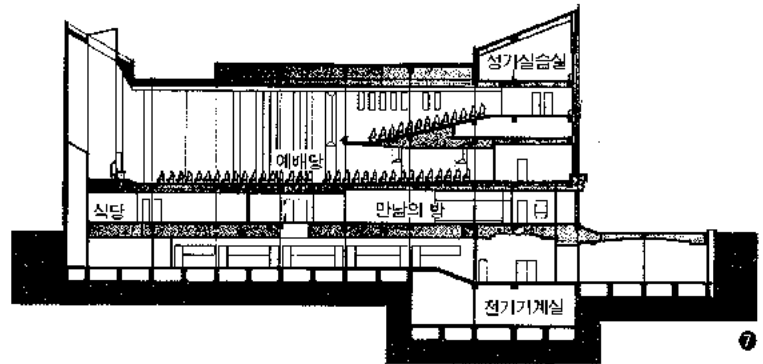
■ 설계소묘

협소한 장방형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교회 고유의 건축적 Image를 창출하기 위한 Mass를 구성 및 주변으로 부터 인지되는 시각적 측면을 고려한 정면성을 창출하여 진입시 강한 흡입력을 유도하고 대지내의 환경이 외부와 단절되지 않도록 교우 및 지역사회를 위해 제공될 수 있게끔 계획하였다.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는 각 기능별 Zone의 동선체계를 수직·수평간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였다. 내부공간에 있어 성전고유의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는 장방형 평면이 갖는 요소를 적극도입 구사하였다. 성전에 들어서면 하느님을 위해 두손이 자연적으로 모아지고 머리가 숙여지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공간감이 가슴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갖기를 기대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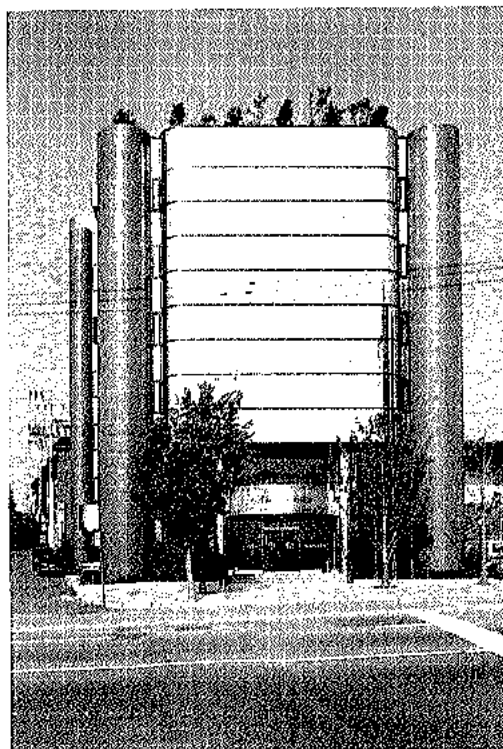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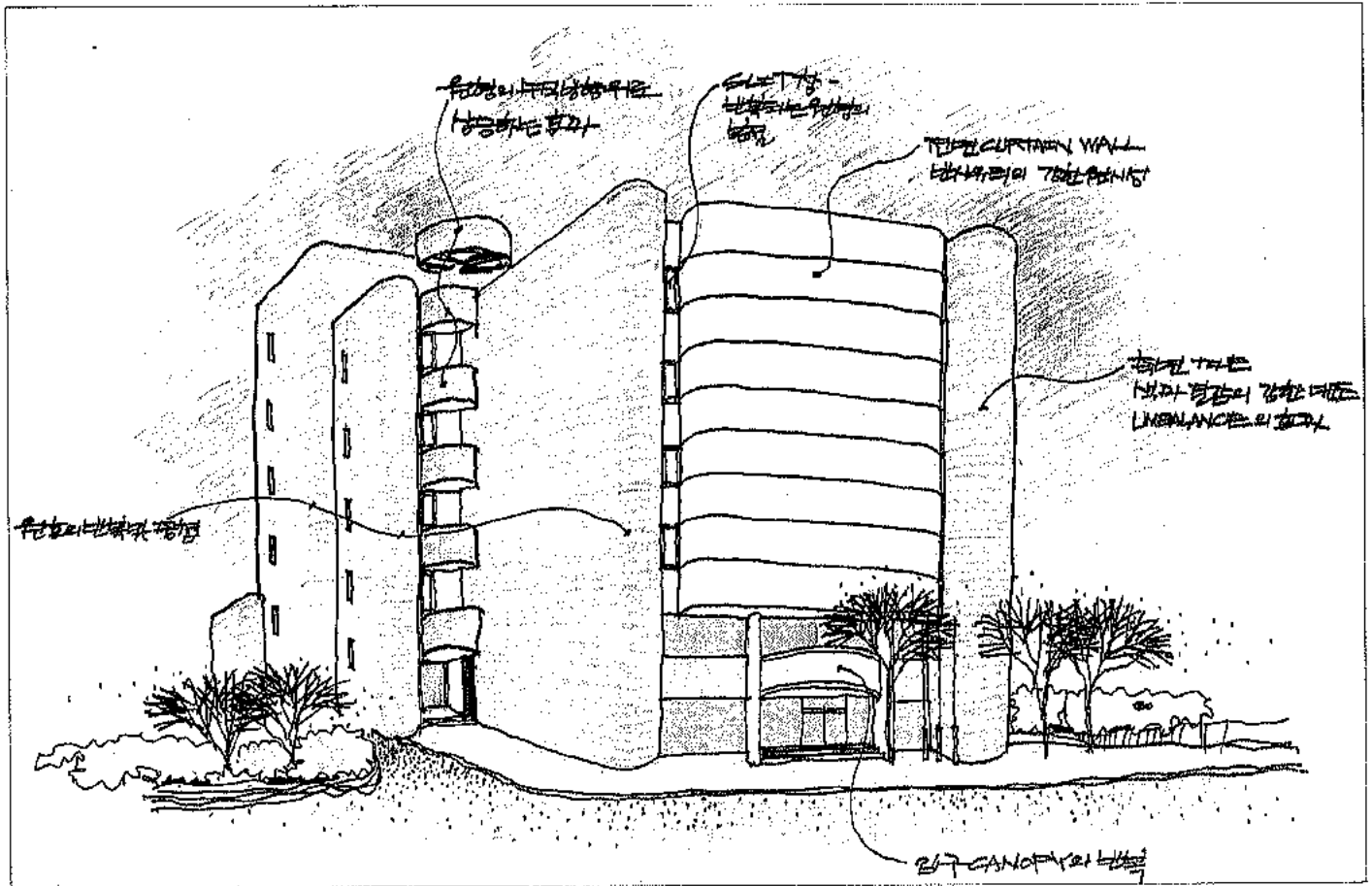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예배당 전경
- ④ 종탑외벽상세
- ⑤ 배면 사제관 출입구측 전경

- ① 교회 전면
- ② 주단면도
- ③ 1층평면도
- ④ 내부창호상세
- ⑤ 외부창호상세



쌍둥이네 빌딩

Ssangdongine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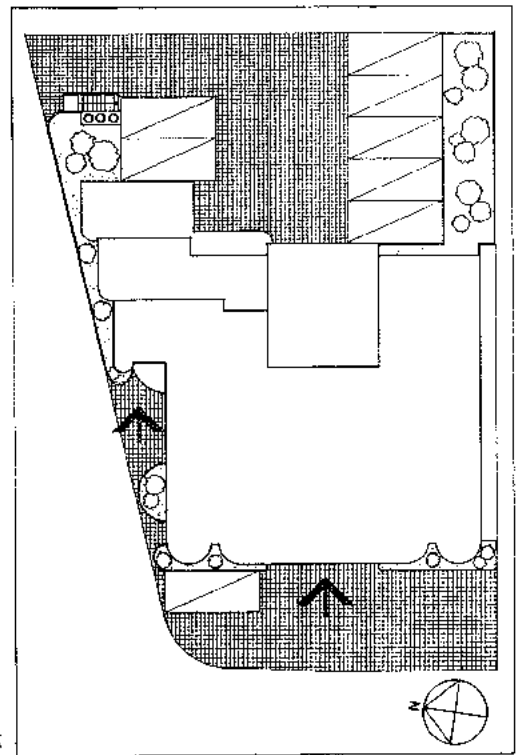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4
 대지면적/779.1㎡
 건축면적/380.92㎡
 연 면 적/3,504㎡
 지역 · 지구/노선상업지역 · 미관지구
 건 폐 율/48.89%
 용 적 륜/265.41%
 규 모/지하 3층, 지상 6층
 구 조/R.C 구조
 외부마감/외장타일, 컬러반사유리
 인테리어/이티방 엔터프라이즈(이준희)

呂運澤

일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eo, Woon - Ta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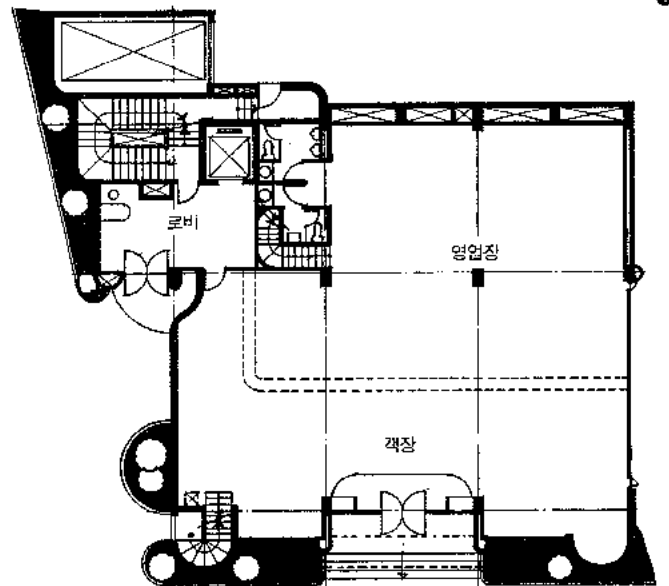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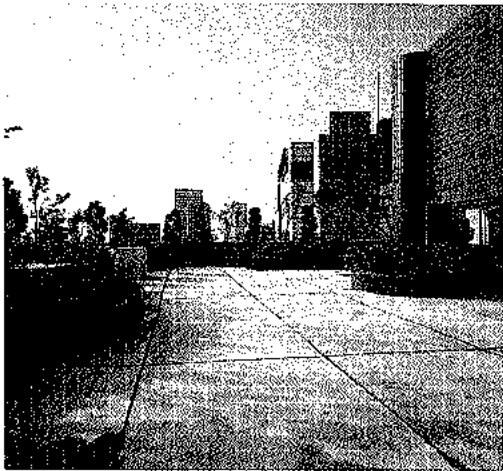
4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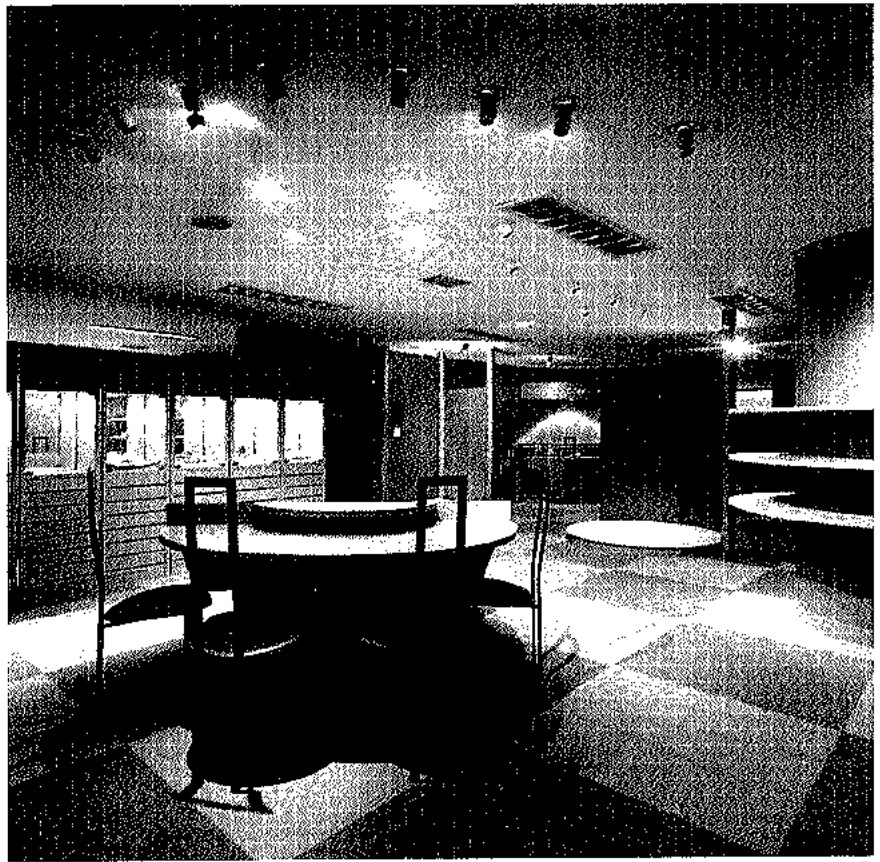
우리 고유의 질그릇 뚝배기와 크리스탈컵이 한 상위에서 과연 어울릴 것인가? 두툽한 뚝배기의 겹질 속에서 터질듯 밀려나오는 투명한 속살을 건축적으로 표현되도록 시도하여 보았다. 사다리꼴 대지의 특수성을 살려 축벽의 돌출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였으며 전면 양측 원통과 중앙 Curtain Wall 이 이루는 대형문형은 현관 스텔레스 기둥과 캐노피가 이루는 소형문형과 모자관계를 보여준다. 주변 가로변에 Glass 의 차가운 투명성과 한국적 질그릇의 평이함과 낮익음의 표정을 지니고 서있는 이 건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를 채택하여 새로운 Form 을 창출하여 곳곳에서 익숙한 친근감을 느껴볼 수 있다. 강렬한 Curtain Wall 의 표피는 주위 다갈색의 Tile 과 강한 대조를 이루어 이 건물의 독특한 표정을 끌어내려 하였고 Skin 친근감과 강한 표정의 원시성으로 하여금 이 건물이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 지역 논현동 일대에 또다른 Vocabulary 를 가지고 접근하려는 건축인에게 낮익은 모습의 미소를 잔잔히 머금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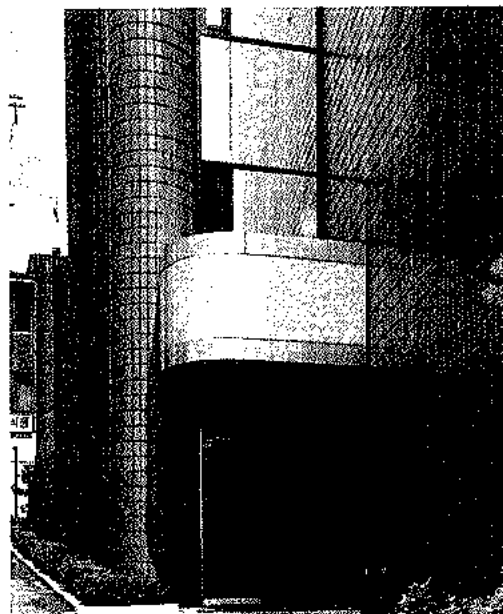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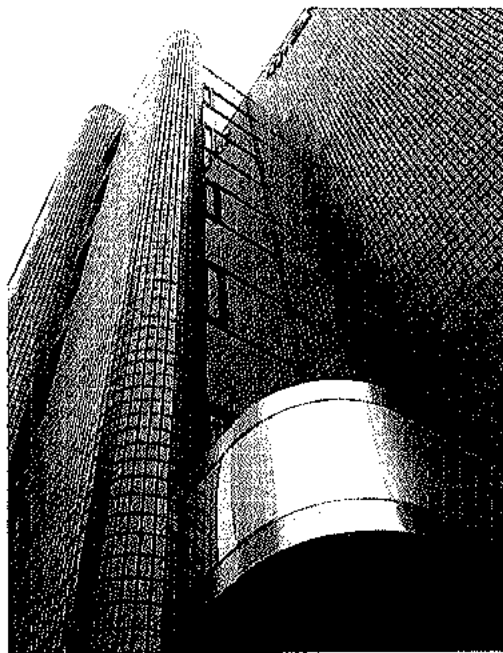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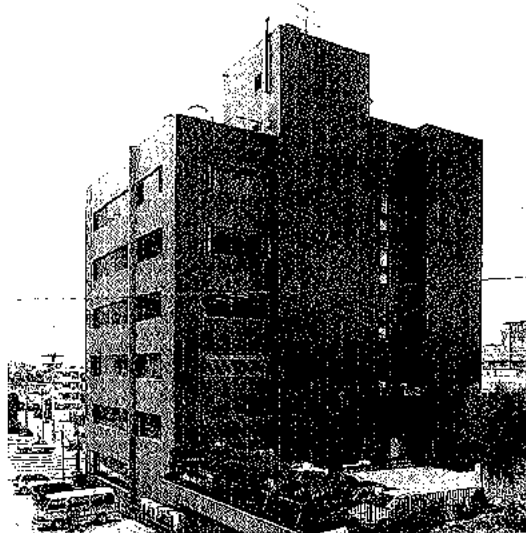
①



⑨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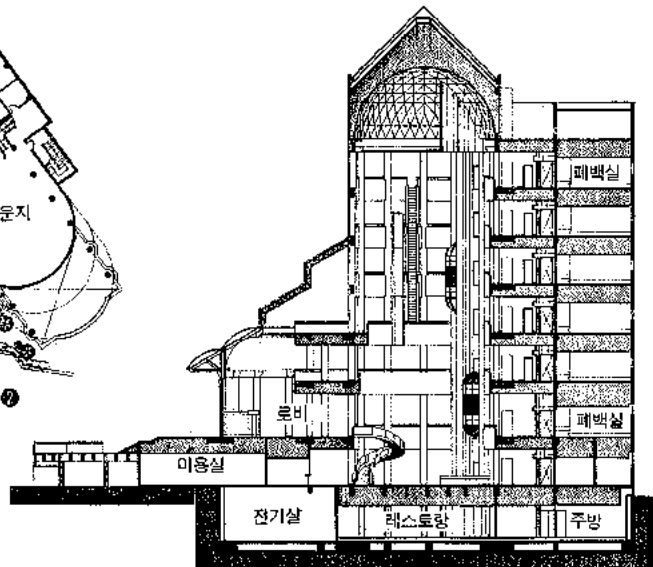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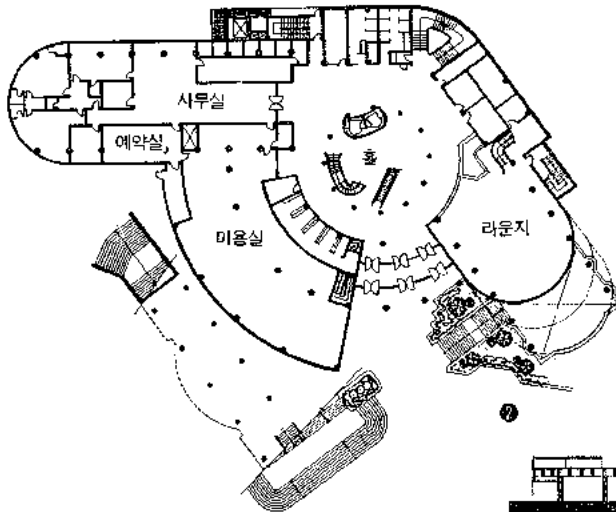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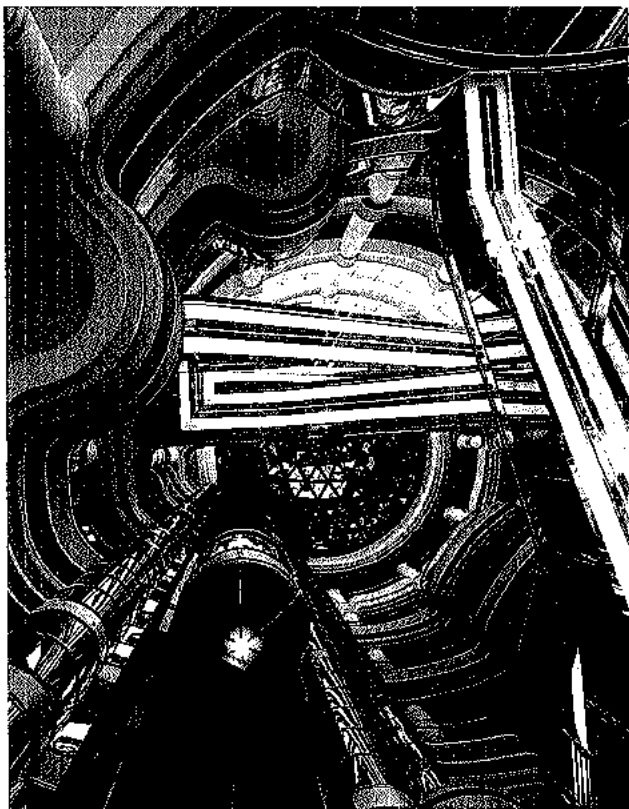
- ① 초기인투시도
- ② 전면파사드
- ③ 배치도
- ④ 전경
- ⑤ 1층평면도
- ⑥ 옥상정원조경
- ⑦ 주출입구 상부 외벽상세
- ⑧ 주출입구 상세
- ⑨ 6층 제품 전시장 전경
- ⑩ 배면전경

명성 웨딩프라자

Myungsung Wedding Plaza



金厚錫+吳慶恩/종합건축사사무소 피아건축
Designed by Kim, Hoo - Suk & Oh, Kyung - Eun



설계소요

경건하기보다 신성하기까지 하여야 할 결혼식을 떠밀리다시피 해치우는 우리 결혼식장의 풍속도를 상기하며 다소나마 편하고 드라마틱하며 평생 생활의 활력으로 기억시킬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 일대는 준공업지역이었으나 공간이전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고, 과도기적 도시공간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본 대지는 그중 일반상업지역 약 7,400평으로 장래 대구 북쪽 부도심핵의 역할을 분담할 것을 기대하며 개발계획을 세웠다. 기존 명성예식장은 대구시의 C.B.C 내(동인동)에 위치하여 휴일 도심교통체증을 유발하던 시설로 이의 이전은 오래전부터 건축주 및 대구시 교통 관계자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따라서 교통영향을 전제로 한 대지선정은 용이하지 않았고, 예식장용도 허용지역(상업지역)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해가며 본 대지를 선정한 것은 88년 봄이었다. 대지활용 목표는 사업계획상 예식장 및 호텔로 단계별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계획하였다.

모든 상업건물계획의 울타리가 되는 건축주의 사업계획(자금과 취향)을 내게 큰 구속력을 갖지는 않았다. 공간개념을 이해하고, 공공면적 할애를 아끼지 않는 건축주와 우리네의 유일한 행사공간으로 기억되는 마당에 설치된 차일을 생각하며 중앙아트리움을 결정하고선 서로 만족을 나누었다.

건물의 외관은 넓은 정원을 품에 안고 남성을 상징하는 우뚝 솟은 돌을 중심으로 양측의 예식홀이 여성을 상징하고 있다. 외벽은 육중한 매스를 알미를 복합패널의 매끈한 백옥색 표면으로 순결화시켰고 청홍의 띠를 넣어 음의 양, 땅과 하늘의 의미를 지닌 태극의 청실 홍실을 표현하였다. 건물내부로 들어서면 잔치분위기를 회복하는 중심공간으로 중앙홀을 7층까지 오픈차리하여 하객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로 연결하고 신랑 신부보습을 한 2대의 엘리베이터로 동적인 요소를 부여하였다.

- ① 남측전경
- ② 1층평면도
- ③ 주단면도

- ④ 아트리움 내부천정
- ⑤ 3층로비 내부전경
- ⑥ 2층 하객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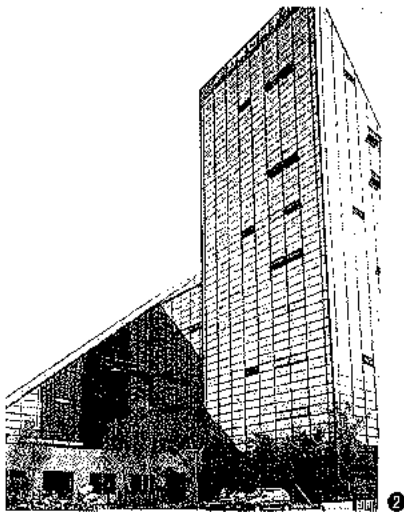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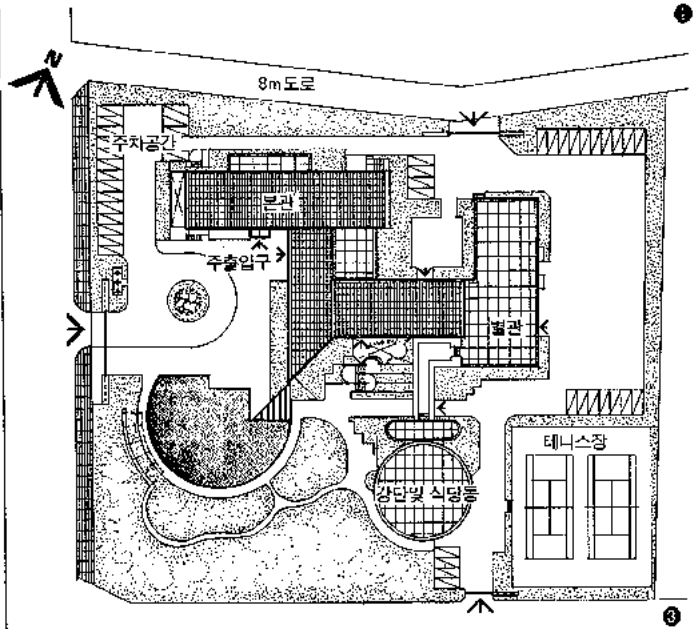
⑥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

KEPCO Chonnam District



李琺杓/엄이중합건축+김진기 (계획설계)
Designed by Lee, Kak - Pyo & Kim, Jin - Kee



대지위치/광주시 북구 오치동 65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15,572.4㎡

건축면적/2,777.54㎡

연 면 적/3,635.23㎡

건 폐 율/17.83%

용 적 율/57.91%

규 모/지하 1층, 지상 7층

구 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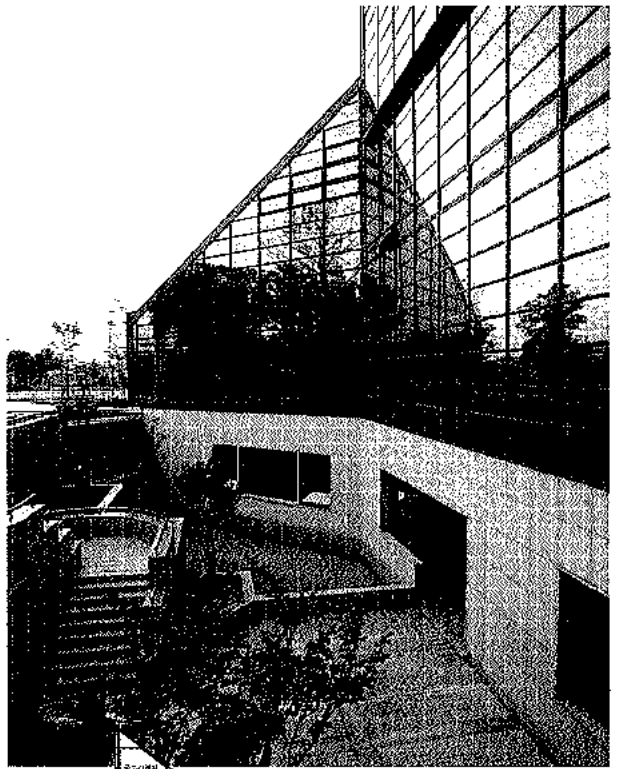
외부마감/화강석 판재, 19mm 반사특층유리

- ① 전경
- ② 남서측에서 본 입면
- ③ 배치도
- ④ 1층평면도
- ⑤ 선문가든
- ⑥ 횡단면도
- ⑦ 민원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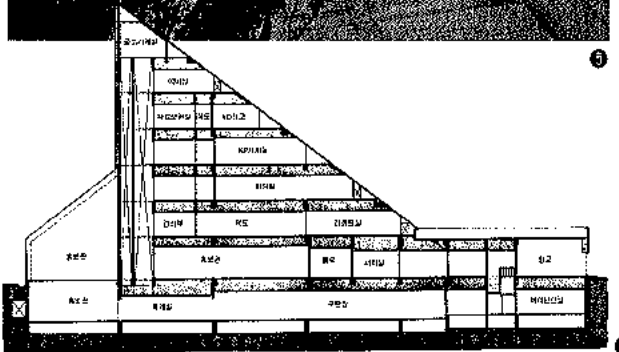
설계소묘

전남대학 후문 쪽에서 진입하면 고속도로 밑으로 굴다리를 지나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두개의 삼각형 유리타워가 예기치 않은 경관을 제공하게 된다. 이 삼각형 매스는 건물을 높고 크게 보이도록 해달라는 사용자측의 소박한 주문에서 비롯되었다. 통상 4개층 정도의 장방형 평면이면 지사사옥의 기능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으나, 같은 볼륨을 대각선으로 잘라 세워 놓음으로써 십여층 정도의 높이를 얻어낼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접근할 때 변화하는 입면으로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의도는 외벽과 지붕에 해당하는 경사면에 사용된 반사유리가 그 효과를 배가할 것이라는 기대의 결과이다.

반사유리는 더이상 새로운 재료가 아님을 안다. 오히려 도로상의 운전장애라든가 반사광으로 주위건물을 뜨겁게 한다든가 하는 설득력 있는 이점으로 그 사용이 억제되어 있던 터에, 하마터면 건물이 온통 화강석으로 뒤덮힐 뻔한 일도 있었으나 세 유리면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세 시선의 상호반사와 하늘색에 따라 변하는 입면의 미학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지붕 경사면을 마감하는 우려도 누수의 우려와 지나치게 뜨거운 실내를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그렇다고 많은 부분에 천장을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실내 안쪽으로 스튜디오처럼 높은 창을 제공해 특이한 오피스 실내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이 주제가 삼각형의 매스를 합리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였으나, 본 설계기간 동안 자리를 비움으로 인하여 의도전달이 충분치 못해 이 공간이 평이하게 처리되어 지붕과 각층의 바닥이 만나는 부분이 내부에서 데드스페이스로 되어버린 점이 못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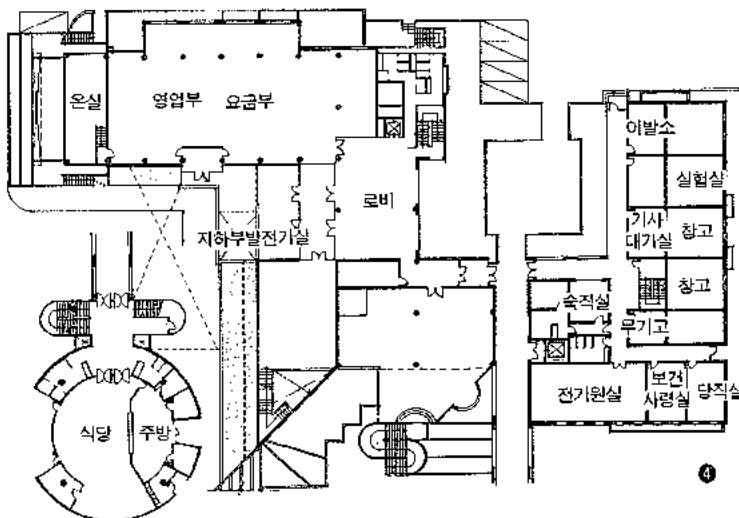
①



⑥



⑦



④

델타빌딩

Delta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81

대지면적/1,651㎡

건축면적/660㎡

연면적/6,375.04㎡

건폐율/3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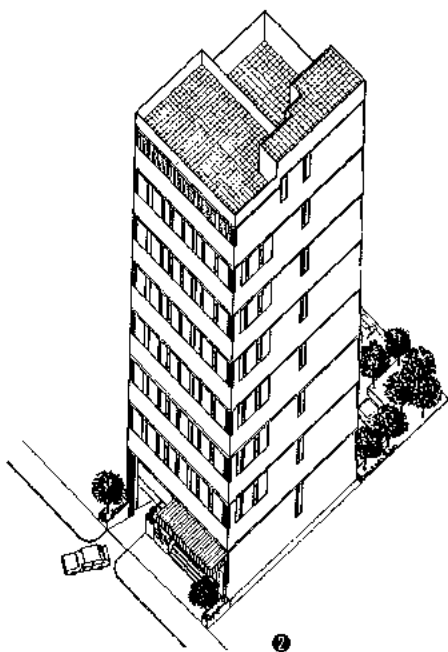
용적률/256.06%

지역·지구/주거·노선상업지역·

주차장정비 2종미관지구

규모/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철근콘크리트멘조



- ① 전경
- ② 엑스노메트릭
- ③ 전면 외벽 상세
- ④ 배치 및 1층평면도
- ⑤ 내부 사무실 전경
- ⑥ 1층 로비 및 엘리베이터실
- ⑦ 주단면도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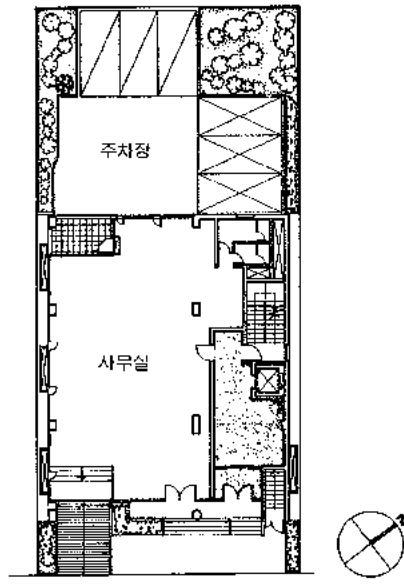
본 건물의 대지는 계동사 사옥과 조흥은행 전산센터라는 2개의 큰 건물이 진입가로의 초입을 대문처럼 막아선 가로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 4~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건물로 구성된 도로변인데, 이 사옥은 한정된 대지에 요구기능을 최대한도로 수렴하다보니 직사각형 건물이 되었다.

이러한 오피스 건물에 벽돌과 알루미늄 창호를 사용하여 벽돌의 전통성과 알루미늄이 갖는 현대적 속성을 조합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두가지의 재료를 대비시켜 외부를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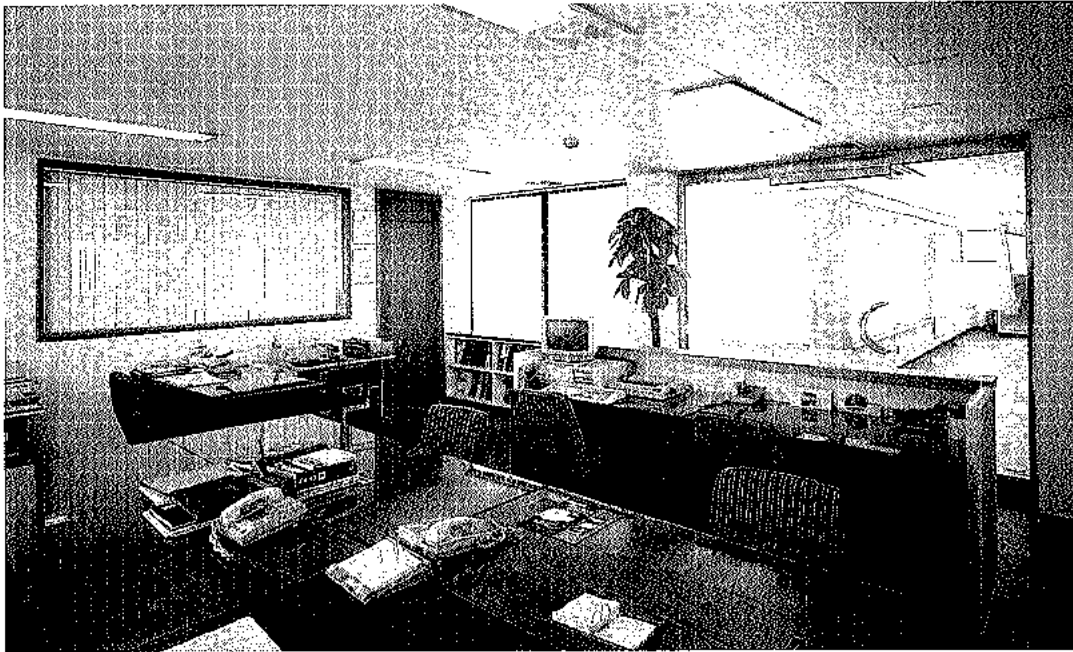
崔東奎/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
Desined by Choi, Dong - Kyu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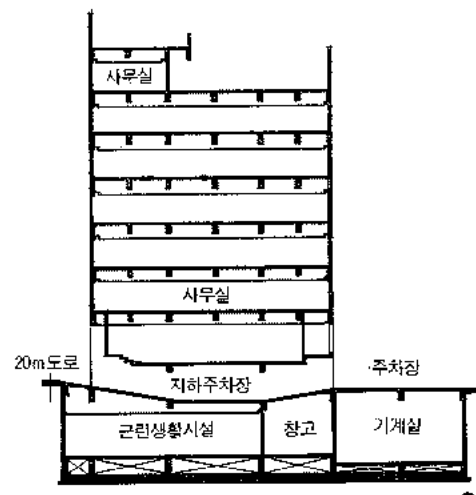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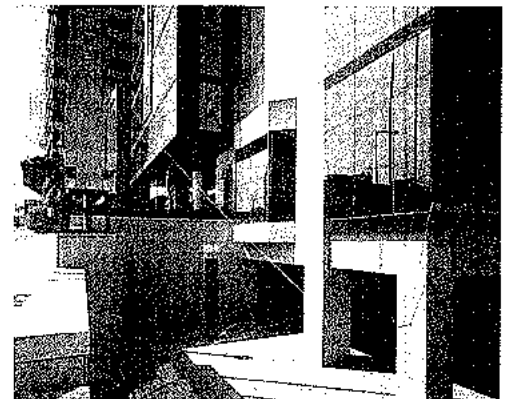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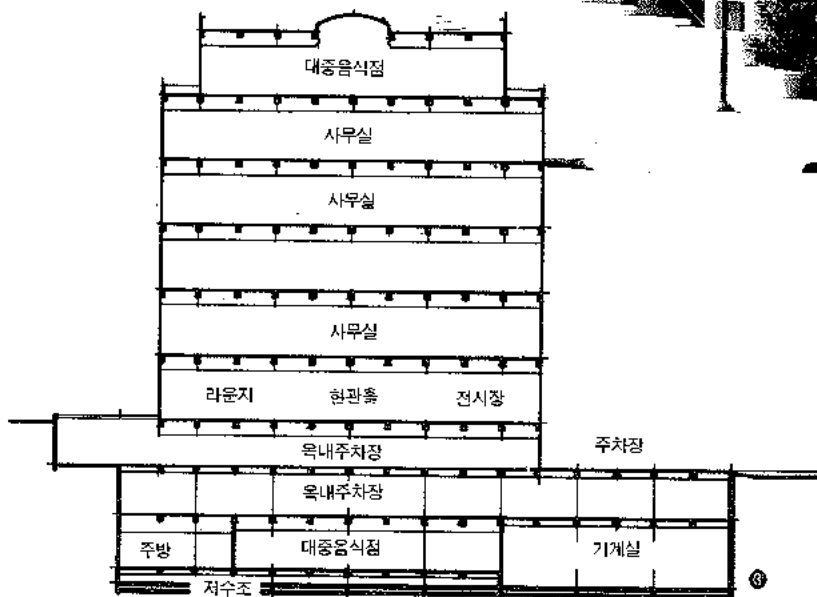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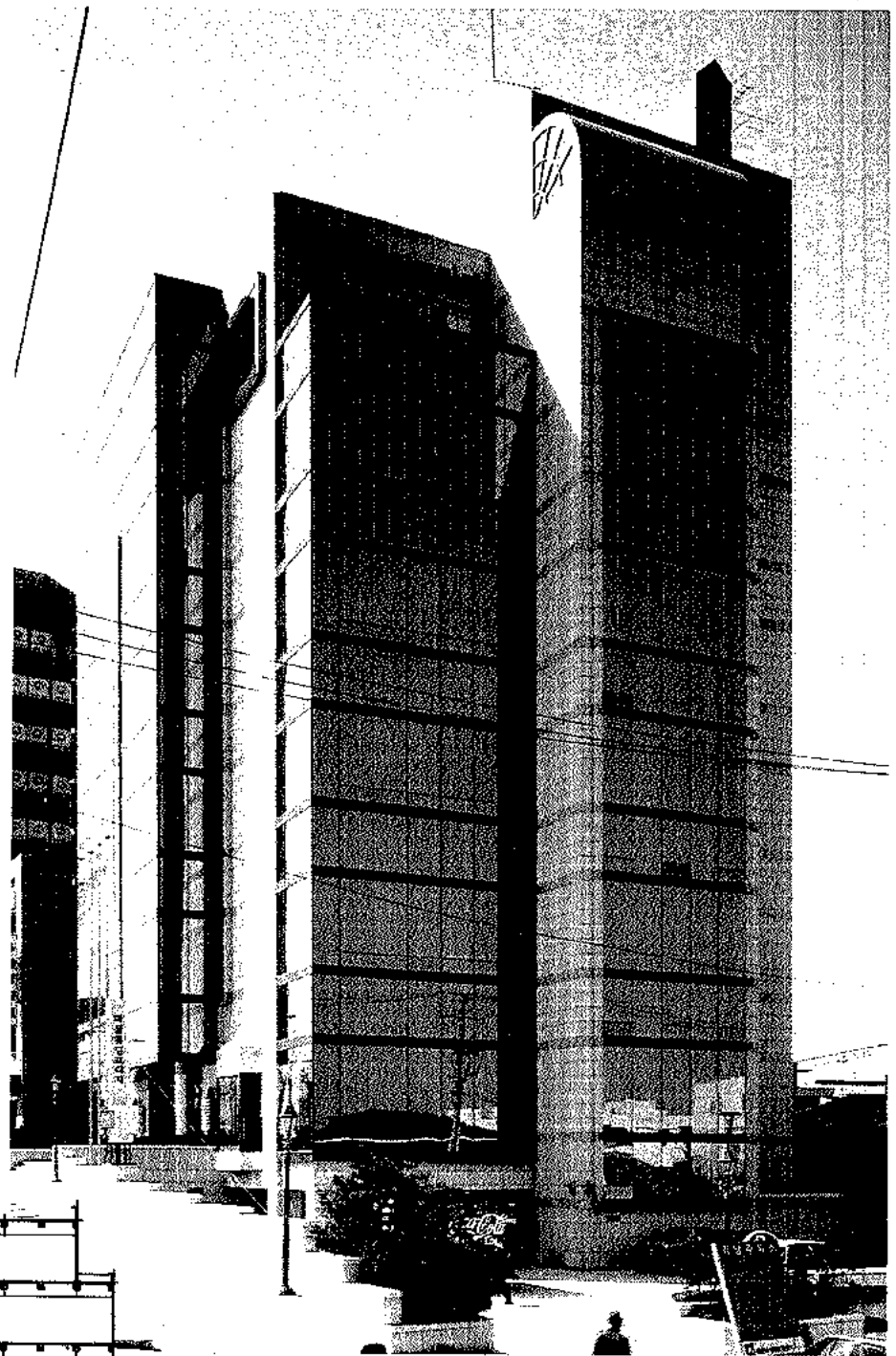
7

마샬 웨딩프라자

Marshall
Wedding Plaza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2
지역·지구/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627.20㎡
건축면적/310.36㎡
연면적/2,905.60㎡
건폐율/49.48%
용적률/229.9%
규모/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金希洙+金性東/(주)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 - Soo
& Kim, Sung - 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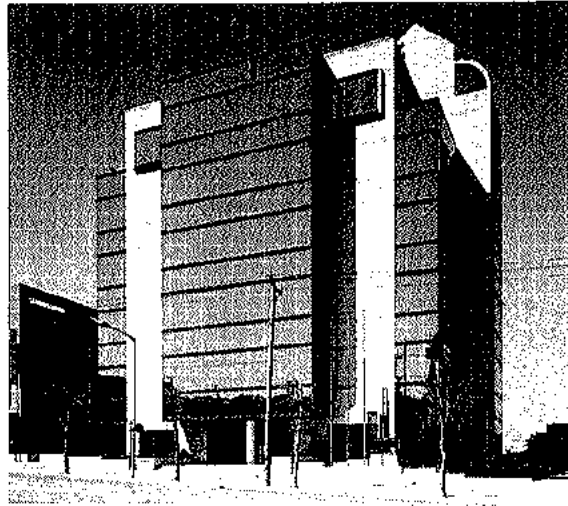


■ 설계소요

환경과 인간,
도시와 건축,
사회와 건축가의 역할을 생각하며 본 프로젝트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3년 만에 완공을 보게 된 건물이다.

이제는 예식문화화 하나의 산업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예식장들과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풀어나간 프로젝트였다. 초기 스터디의 과정에서부터 이 건물은 건물 자체의 기능적인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획되었다. 따라서 내부공간의 경우 결혼식장의 기능이 아닌 타용도로의 리노베이션이 가능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외관의 형태를 결정짓는 주요 조건은 예식문화 혹은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현대감각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있었다. 특히 컬러유리의 처리에 있어 중후함과 강한 느낌의 색을 선정하여 녹색피와 돌며를 연계시켰으며 수평띠가 주는 편안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후면에는 주택주거지역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유리블록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후면에는 주택주거지역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유리블록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평면에서는 1인당 공유면적을 확대하고 하객 동선의 편의의 쾌적성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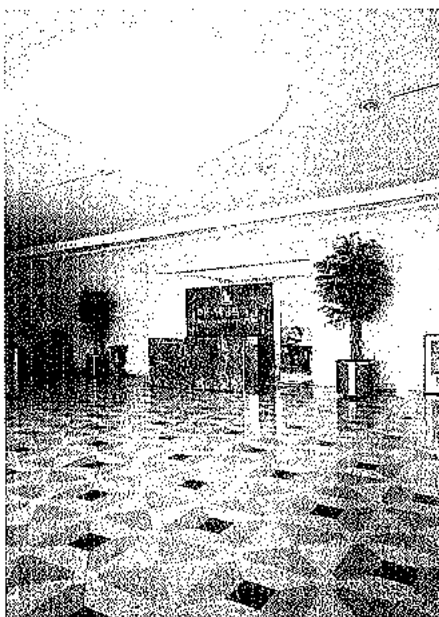
한편 지역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소유주차 시설의 확충과 교통의 계획도 주내용 중에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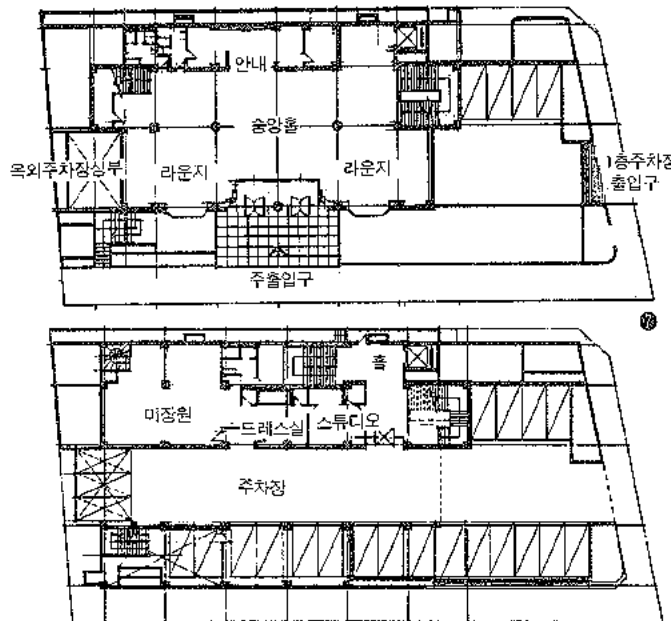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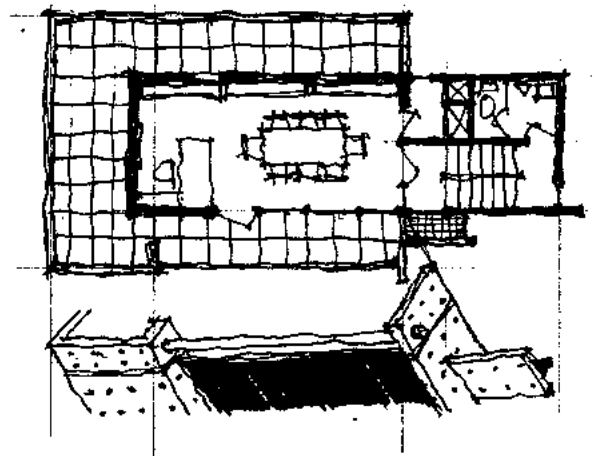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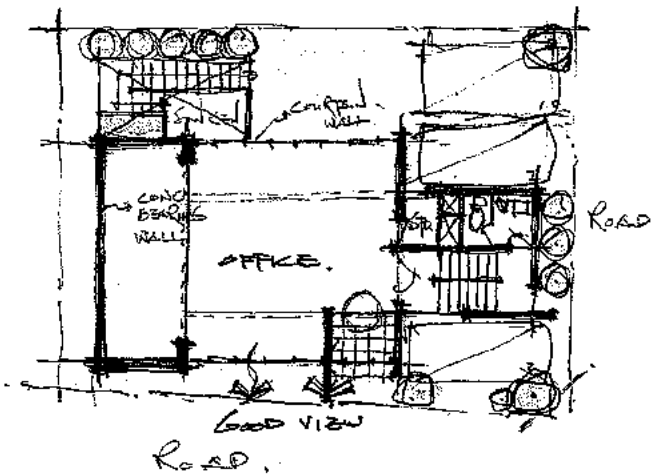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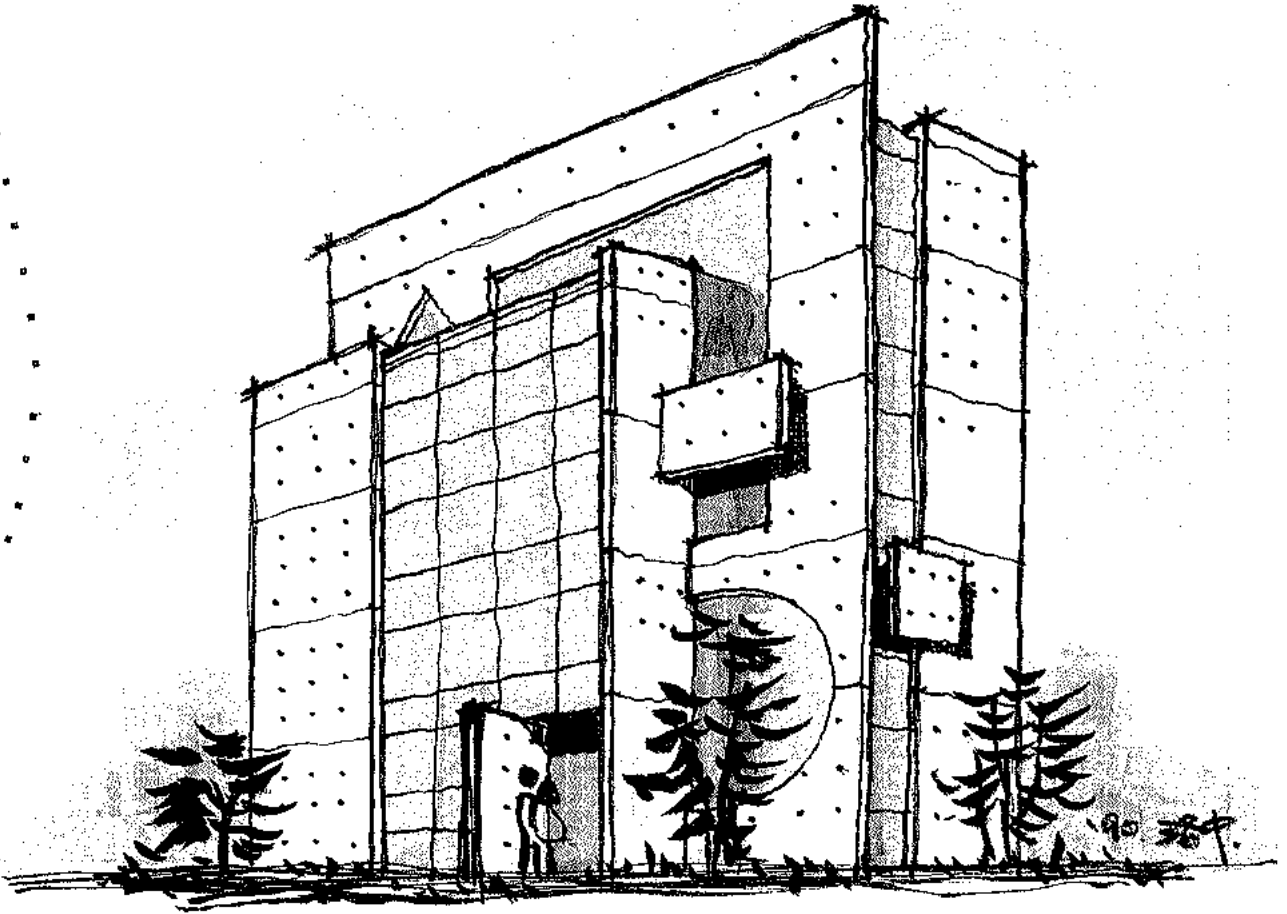


6



- ① 1층 주차장 출입구쪽에서 본 전경
- ② 1층 주차장 출입구상세
- ③ 주단면도
- ④ 전면파사드
- ⑤ 예식장 내부전경
- ⑥ 2층로비
- ⑦ 2층평면도
- ⑧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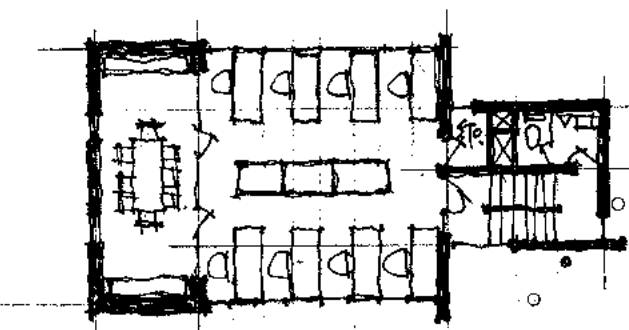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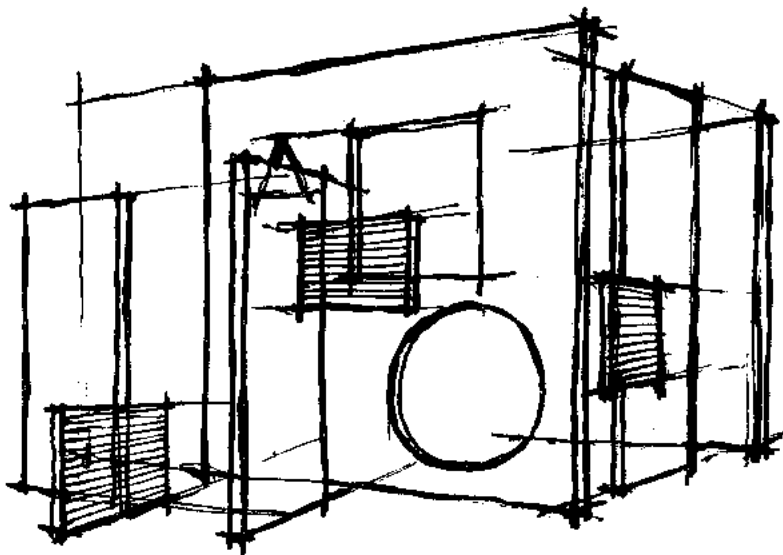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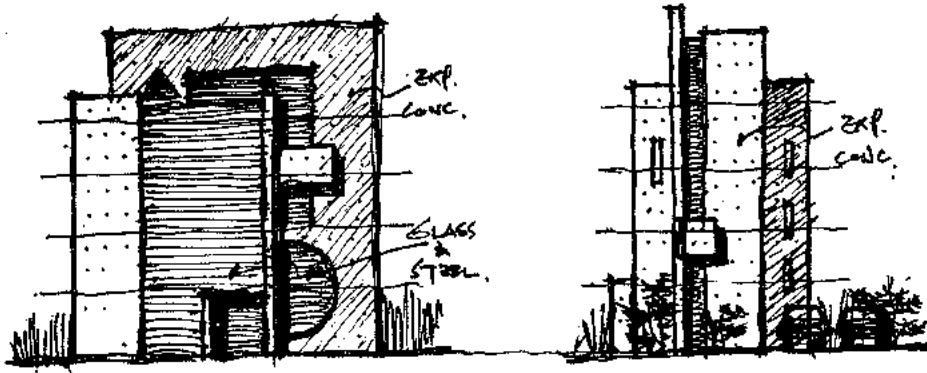
나의 스케치



J'작업실

J'Workshop

金洛中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
Designed by Kim, Nark-Joong



“콘크리트, 철, 유리 그리고 기본 도형들”

이 건물의 부지는 남쪽으로 작은 내(川)와 숲이 펼쳐있고 전망이 특
터진—도심에서는 그나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군더기 없는 건물, 그 구성이 보다 투명한 건물, 재료 사용의 순수함
—흙, 돌, 콘크리트, 철, 유리, 순수한 조형의 구성미—원, 삼각형, 사
각형, 판(板), 궤(塊), 화장기 없는 건강한 피부의 미인,

이러한 것들이 이 건물의 형태 및 재료를 구상할때 생각해 온 것들
이었다. 그리고, 남향 빛을 담백 먹은 실내에 앉아 남쪽으로 특터진 전
망을 한가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것이 내부공간을 구성할 때 생각해
본 것이었다.

綜合建設業 免許制 導入에 對한 提言

姜泰錫

(95) 2111 綜合建設業 免許制 導入에 對한 提言

건설부는 지난 1989년 12월 13일 건설위원회에서 2천년대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제도의 정비책의 일환으로 건설업면허체계 개편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개편방향중 종합건설업면허제를 신설 도입하여 업종 및 업무 범위에 건축설계, 감리, 시공은 물론 토목, 조정, 전기, 통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건설공사 전반인 전문기술용역 분야를 이 신설제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당시 우리 협회에서는 宋基德회장 이하 다수의 회원이 공청회에 대거 참석하여 당시의 졸속한 입안법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실정법을 무시한 同제 도입안의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 항의하였다. 또한 우리 건축사들의 고유업무인 설계, 감리분야가 종합건설업면허제도에 포함될수 없다는 전국 3천5백여 회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관계요로에 건의하였었다.

이에 당국은 우리 건축사들의 주장과 당위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동 제도를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유보키로 결정하였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한이 임박해지고 시장개방의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정부는 그 협상방안으로서 同제도의 도입방안을 다시 거론하여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골자는 선진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서서비스산업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려는 것으로, 우리로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어떻게하면 개방을 최소화하고 국내업체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럼 과연 정부에서 협상방안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종합건설업면허제란 어떤 내용인지 건설부에서 발표한 1989. 12월 공청회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정부의 “건설업 면허체계 개편 방안”

○종합건설업면허제의 의의

토목·건축·전기공사등 건설업의 수평적 기능과 설계·시공·감리등 건설업의 수직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건설업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면허나 등록을 각 부처에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이 큼
- 건설수요의 고도화·복잡화에 따라 건설공사 수행의 종합화·시스템화의 필요성 증대에 부응
- 시공 중심에서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의 육성 방향으로 건설업 발전을 선도
-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시 엔지니어링분야의 경쟁력 제고
- 건설업체간의 역할분담으로 종합건설업은 시공보다는 설계나 공사관리 등의 소프트분야에 주력토록 하고 건설업체의 전문화·계열화를 유도

○도입방안

- 영업범위 :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등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업,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 면허기준 : 자본금—200억원(공제조합출자 : 1,000좌), 기술능력—기술자 100인(기술사 10인 포함), 건설업 경력(일반건설업)—10년 이상, 경영관리자—경영자(임원)중 5인은 건설업 경영관리경험이 10년 이상
- 기타 조치 : 일괄하도급을 허용되 하도급관리 의무 부여, 도급하한선을 상향조정, 기술개발에 대한 의무부여

○현행 면허체제의 문제점

- 건설공사의 종합적 설계·시공·감리기능의 제약
- 용역업과 시공업의 분리로 건설수요패턴이 교부가가치화, 엔지니어링화는 장기발전추세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면허별 業域분류 기준의 합리성을 결여
- 특수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별도의 業域으로 인정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의 경우, 건축물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업종이 있음.
- 건설공사 관련행정이 다원화되어 있음
- 건설공사에 관한 행정이 각 부처에 다원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건설업에 대한 종합적 정책수립이 곤란
- 동일시공에 대한 산발적인 규제로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곤란

◆ 종합건설업면허제 입안의 반대이유 및 문제점

1) 반대이유

첫째, 정부가 '86.9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하여 '90년대말까지 건설 서어비스분야의 국제간 교역 자유화 및 개방에 대응하고 건설수주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구실로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감리업무를 종합건설면허업체에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는 엄연한 실정법과 배치되며, 국내·외 건설시장을 특정 재벌기업에 독점시키려는 정경유착의 근시안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용역의 육성정책을 스스로 역행하는 제도이고, 재정 금융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에 위축시키려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는 건축사간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인간을 위한 공간을 창작하는 조형예술의 분야로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을 근간으로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조성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후세에 傳承할 영속적인 건축문화를 개개의 작품으로 표현하는 종합적 기술지도 및 자문의 역할인 것이다. 반면 건설업은 자본과 인력, 장비를

이용하는 단순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수단의 행위에 불과하고, 특히 시공기술은 발전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의 용도로서 소멸되는 것이다.

셋째로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는 시공기술 및 관리와 상대적으로 우위 내지는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견제 되어야 하는 바, 설계, 감리자가 종합건설업체에 예속 또는 피고용인의 위치에서는 전문성 있는 작품활동은 물론 창작의욕이 기업경영 차원에서 배제되는 우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건축물의 질적저하는 물론 건축문화의 퇴조를 조장시키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넷째, 과거 정부예산의 절감, 工期의 단축, 합리적인 관리 등을 이유로 특정 건축물을 대형 건설업체에 일괄 발주 (Turnkey Base System) 하여 정당한 경쟁절차 없이 독점시키므로 나타난 각종 부조리 및 시공부실은 소기의 기대효과 보다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초래했던 사례를 귀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설계와 감리업무는 반드시 시공업무와 분리되어야만 그 기능이 건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 예측되는 문제점

첫째, 종합건설업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용역분야별로 다원화 되어있는 현 체제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원화하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오늘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추세가 고도로 전문화, 세분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관련 전문기술용역분야를 재벌기업에 합병 내지는 종속케 함으로써, 기업의 독점을 유발시키고 상호 견제기능의 상실은 물론 산업사회 저변의 기초가 동요케 되어 전반적인 기술 퇴보와 함께 중소 건설업체의 시장이 잠식 당하는 혼란을 초래케 될 것이다.

둘째, 종합건설면허제 도입으로 모든 건설공사의 기획, 조사, 설계, 감리업무 등 전 분야를 일괄수주로 수행케 함은 현행 설계, 감리제도를 死文化 하려는 의도로서, 건축물의 시공관리, 유지관리등을 검사, 판단하는 종합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셋째, 재벌기업에 종합건설업면허를 독점 제한할 경우 국내 건축사들의 업무 영역이 축소 내지는 잠식 당하게 되고, 해외 진출의 문호가 차단되어, 국제수준의 기술축적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 또한 기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체가 재벌기업들의 영업경쟁으로 사회적인 질서가 파괴되며, 건축계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시켜 업무능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영세화가 가속화될 것은 예견되는 주지의 사실이다.

◆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되고, 1965년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는 25여년 동안 우리 건축사들은 오직 자생적인 각고의 노력으로 국가 건설의 근대화 사업에 조형창작예술인으로서 건축문화 창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의 건축문화와 현대화된 건축기술을 세계만방에 소개함으로써, 선진조국의 국위선양에 일조하였던 것이 우리 건축사들의 역할이었다고 강조한다면 지나친 자찬이라고 평할 수 있을까?

1990년 6월 현재 우리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는 3천5백여 회원이고, 단독건축사사무소 1천7백, 종합건축사사무소 5백여개사이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가 66개사로 괄목할만한 전문기술 용역단체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과거 25년여 동안 우리 협회의 각 회원사무소에서 정부정책의 지원이나 보조없는 열악한 조건을 무릅쓰고, 수많은 전문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수련, 육성시킴으로써 제2의 산학교육기관의 역할을 대행하여 왔고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국내 건설업계는 물론 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해외건설수출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건설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건축사들은 4반세기에 걸쳐 체험한 경험과 창의력을 첨단과학과 고도의 기술에 접목시켜 국내건설산업은 물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에 충분히 대처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있다고 자신한다.

◆ 對 정부 건의사항

우구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개방시점에 편승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감리업무를 종합건설년허업체에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는 엄연한 실정법과 배치되며, 설계, 감리와 시공의 특수성을 몰이해한 처사로서 동제도의 입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시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실현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1) 현행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전폭

개정하고, 건축사사무소가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특수법인화 제도입안

2) 국내 및 해외건설 건축사사무소에는 기술용역 육성 차원에서 금융, 세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3) 건축설계와 감리업무는 현행 제도 범위내에서 각기 고유의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설업체간의 상호 동반자(Partner Ship) 제도 의무화

4) 현행 국내 건축사의 설계, 감리 보수요율을 국제 수준으로 대폭 인상 현실화하고, 외국 건축사에게 지불하는 설계 용역비의 창구 일원화

5) 설계용역의 국외 발주시 외국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계획설계에 국한하고, 국내 건축사로 하여금 실시설계, 감리 및 행정사무업을 위임할 수 있는 협조설계 체제의 제도화

◆ 국제 개방화에 따른 협회의 대책방안에 대한 제언

우리 협회와 건축사들은 1960년대초 건축문화의 불모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대건축을 사회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많은 功과 過의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국제 개방화 시점에 즈음하여 대내적으로는 보다 빛나는 건축문화의 정착과 국가 건설산업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협회에 제언한다.

1) 본 협회에 해외기술 정보교류 센터의 설립운영

2) 건축 실무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협회 부설 또는 위탁교육기관을 정하여 건축 보조사들의 수시 또는 정기 교육강좌 개설

3)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는 건축사 제도의 개선

등이 검토·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우리 건축문화의 死活이 걸려있다고 보고 업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건축사들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의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自省하며 건축계가 주도하는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계기로 판민이 합심하여 건설산업의 제반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땀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건축인—쟁이정신의 재음미

노형래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정

by Ro, Heoung-Rae

짜증나면 복너위도 아침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에 그 끝을 보이고 있다.

업무 협의, Schedule 작성, 설계 업무, 출장, 미진한 부분의 보완, 납품, 수주, 월말 자금 계획 등 하루일과가 바쁘기만하다.

정치혼란, 질서의식의 결여, 도덕성의 위기, 경제불안, 근로윤리의 부재, 사무실 운영, 복잡하게 얽힌 현실, 모순 투성이의 상황에 깊이 결부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탈하려고 한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 잠시 돌이켜 볼 필요를 느낀다.

건축을 한다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실 인식에의 Enlightenment, Seeker적 입장에 있어야 함을 안다. 그러나 급변하는 물질문화 속에 대단히 융통적이며, 건축주의 빈약한 건축적 의지를 이유로 실험정신을 망각하고 보편적 사회 통념속으로 안주하려 하지는 않는가?

금년 여름방학을 기해 나의 사무실에는 2명의 실습생이 열심히 실무 공부에 여념이 없다. 프로젝트를 대하는 진지함과 성실함, 섬세함을 느낀다. 학교에서 습득한 여러 이론적 근거에 따른 디자인 원리, 창조 정신의 철학적바탕, 건축가의 자세, 지위, 역할, 사명 등에 관한 의혹을 던졌을 때 십수년전 교문을 나와 사회조직의 일원이 되면서의 창에 불이 꺼지지 않는 소수의 조직이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으로 건축을 시작하라는 선배의 조언이 생각난다.

현대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양상들을 건축과 사회적 요구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상황 설명들로 쉽게 설득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나 자신 진심으로 지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 가치를 부여하는 까닭이리라.

우리의 지각 대상으로서의 건물 그 자체는 우리의 지각에 의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일정한 하나의 물리적 사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지각하게되는 인생체함과 역사, 철학의 인식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각도가 다를 밖에 없음을 안다.

훌륭한 건축물에는 몇가지 조건 즉 사회적 상황, 좋은 건축주, 건축기간, 건축비, 실용성, 견고성, 기쁨(창조)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의식, 무의식이든 일개인으로서는 자신의 건축적 자질을 격정하는 마음속에 창조의 노력—기존 습성의 회유, 자아의 확산, 자율성, 자신의 독립심, 견문을 넓히고 고도의 지적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 자체(recharge)—은 부단히 이루어져야 하며 신선하다거나 적어도 통계상 극히 드문 감응, 내지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나 행동의 참신성, 독창성은 창조에 있어서의 필요한 일국면이기는 하나 하나의 감응이 창조과정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합성, 다시말하면 현실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도의 기술을 갖춘 많은 건축가들도 오늘날의 건축 디자인에서 그러한 감응을 줄만한 건물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당혹해 할 것이다.

사실 많은 건축가들이 오늘날 전연 상반된 관점에서 디자인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회 과학 분야를 인간의 욕구에 대한 보편적 기술만으로 여겨 이 욕구가 야기시키는 건축적인 문제의 표준화된 해결책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건축가의 교육에는 능숙한 소묘 솜씨, 기하학의 훈련, 역사의 통달, 자기 철학의 확립, 음악의 이해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을 갖추고 법학자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전문학적 천재 이론에 익숙해야 한다는 건축가의 본성을 이야기한 글귀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적합하며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관찰력과 사고력, 창조력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숙고할 수 있는 태도, 완성예의 추진력을 포함하여야 하지 않을까?

존재의 미약함.

게으름.

무한한 생동력.

캐나다 주점에서의 람바다 춤과 일행들.

포스트모던에서 하이테크로.

Bad Client와의 만남.

선배들의 교너를 생각하며 재음미 해본다.

“建築法遺憾”

崔勝元

夾加圖圖 건축사사무소

by Choi, Seung-Won

작년 연말 어느 송년회에서 만난 친구에게 개업해서 작품생활을 해보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내 “건축허가 내기 힘들어서 개업할 수 있겠느냐”는 답에 잠시 멍해 있었던 기억이 난다. 필자가 작년 S 도시의 중심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지못해 고생한 기억이 악몽처럼 남아 있는 차에 친구의 이야기는 참 현실적이었다.

不許 이유는 “건축에 母性的인 날개를 부착한 건축설계는 준공후에 날개 밑에 무허가 건축을 할 우려가 있기에 무조건 허가를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란다. 이로인해 반년동안 일한 것이 결국 헛수고가 되고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대단하였다. 소동과 고모라 같은 지역에 순수성의 건축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다양한 언어를 필요로 하는 건축디자인이 최종단계에서 관권에 의해 걸려있는 한 건축문화의 창달은 있을 수 없고 이웃과 이웃나라로부터 저속스럽다는 표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0년전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어느 선배가 껌속말로 건축사는 비비는 직업이라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로 나는 기분이 상하여 그 선배를 찾아 뵈는 적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나에게 조언을 해준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여름 해외건축시찰 도중 막간에 동료들과 한담이 있었는데, 어느 건축주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여러회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흥정을 해 상담료도 건지지 못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한다. 그 원인은 남을 시켜서라도 잘 비비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공화국이 4공, 5공, 6공으로 바뀔 때마다 건축허가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발전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아쉽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칼이 무서워지는 것은 폐기시켜야 할 각종 건축법의 독소조항이 실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중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발전에 따른 비현실적인 독소조항 건축법을 과감히 폐기시켜야 한다.

초여름 동료회우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을때 내가 그의 사무실에 진화를 걸어 “업무상 어려운 일이 있었느냐”고 한 것이 나의 1차 질문이었다. 결국 과로로 인한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회원들이 업무관계로 입건되어도 무슨 잘못이 있겠지 하면서 우물우물 넘겨 보내는 것이 건축사란 직업이다, 건축사들은 눈치만 보고 자기일이나 한 건 더하려는 利己的인 행동이 심한 전문직이라고 생각된다.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고 약해지는 것이 건축사 협회라 생각된다. 폐기되어야할 건축법이 여러가지 있으나, 그 중 최근 강력한 민원의 하나로 지하층 გადა설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건축에서 지하층의 설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지하층은 대피의 역할도 못하는 것인데 기형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것이 100만 가구가 건설된다면 그중 지층의 4분의1에 해당 되는 25만가구가 지하층에 주거한다고 예측된다. 금년에도 결로나 누수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대피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제 실험을 해보고 불량주택 건설을 독려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질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려면 국민들의 의식주가 질적으로 향상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저층주택에서 일조권 규정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 조치가 필요하다면 남쪽으로 적용시켜 마당, 정원, 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러번 건의가 있었는데 실험도 안해보고 방치하고 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고쳐나가야만 건축이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폐기되고 정리되어야 할 법들이 존재 하는한 각종 건축이 모래 위에 누각이 될 것이다.

수출자유지역이나 개방지역 같은 도시를 건설하고 있듯이 건축개방도시를 신도시에 지정하여 대지는 임대조건으로, 현행건축법의 저촉을 받지않는 개방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곳이 새로운 인류문명의 발생지가 될지 누가 예측하겠는가, 물론 이 도시건설에도 비비는 일이 생길 수 있는 현행건축법의 독소조항은 없애야 한다.

“현상설계경기운영 대폭 개선돼야 한다!”



건축설계경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좌담회

本協會는 설계경기운영위원회(위원장 : 韓鍾彦)는 지난 7월 10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현행 우리나라 건축 현상설계경기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운영 방안 및 설계경기 운영에 있어서 협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설계경기운영위원회가 화계의 안영배교수, 김성국교수와 손두호회원 등을 초치해 개최한 이날 좌담회는 “건축설계경기와 협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아래, 발주자가 일방 통행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설계경기의 문제점들 도출하는 한편 건전한 설계경기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한국설계경기규준을 국내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연구노력키로 하였다.

本誌에서는 본 좌담회의 토론내용 전문을 게재하여 회원여러분의 발전적 의견의 개진을 기대한다.

主 題 : 건축설계경기와 협회의 역할

- 1) 건축설계경기의 현황과 문제점
- 2) 건축설계경기의 바람직한 방향
- 3) 건축설계경기에 대한 협회의 역할

◆ 사회

한종언/본협회 설계경기운영위원장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 토론자

강기세/종합건축사사무소(주)범건축
김성국/홍익대학교 건축과 교수
박찬무/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손두호/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모람
안영배/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 교수
이각표/업이종합건축사사무소
한규봉/(주)천일종합건축사사무소
황일인/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가나다順)

날씨도 무덥고 바쁘신 중에서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행 건축설계경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건축설계경기와 협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좌장 한 중 언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함보다 설계자 선정을 위한懸賞競技가 허다해

사회 : 날씨도 무덥고 바쁘신 중에서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행 건축설계경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건축설계경기와 협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건축설계경기의 풍토를 확립할 수 있는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평소 느끼고 계셨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건축설계경기가 많이 시행되고 있어 응모의 기회가 많아진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래 설계경기의 목적과는 달리 좋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좋은 설계작품을 선정하기 보다는 발주처에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사례가 그것입니다.

일찌기 건축계 3단체가 공동으로 한국 건축설계경기 규준을 제정했었는데 협회에서 예산을 들여 정부기관, 각 단체 그리고 회원들에게 이 규준을 인쇄배포 했지만 그 시행이 제대로 안되는 현실이므로 이 규준은 유명무실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한규봉 : 먼저 건축설계경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건축설계경기가 좋은 작품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근래에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설계자 선정을 목적으로 설계경기를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훌륭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설계경기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설계용역의 수의계약에 대한 정치권의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즉 설계자를 선정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이러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떤 주최측에서는 겨우 몇 동의 아파트를 설계경기에 부친다든지 자체 사업계획 예정에만 맞추어 현상설계기간을 짧게하여 외부로부터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응모작품의 심사에는 전문성이 있어야하는데 발주처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자체내 위원을 다수 참여케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 설계경기에 대한 작품의 심사는 안영배 교수님이 가장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교수님의 심사경험중에 이러한 점이 문제있더라 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요.

안영배 : 최근에 시행되는 건축설계경기의 풍토는 10년전과는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설계경기도 많지 않았지만 홍보도 비교적 잘 되고 해서 그런지 응모자 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너무나 적습니다. 일반공모인테도 어떤 때는 작품수가 4~5점 밖에 안되고 심지어 2~3점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한된 작품중에서 작품을 선정하게 되니까 좋은 작품을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큰 프로젝트인 경우 너무 많은 작품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응모작품수가 적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또 반면에 응모수가 너무 많으면 건축사들의 인력 손실이 너무 많아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은 우리 건축계로서는 반갑지 않은 일이며 큰 손실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일찌기 건축계 3단체가 공동으로 한국 건축설계경기 규준을 제정했었는데 협회에서 예산을 들여 정부기관, 각 단체 그리고 회원들에게 이 규준을 인쇄배포 했더라도 그 시행이 제대로 안되는 현실이므로 이 규준은 유명무실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규준을 법제화하는등 방법으로 강력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하겠으나 3단체중 건축사협회가 통제력도 있고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면 협회 회원이 응모하는 모든 현상공모시는 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회원에게 대단히 불리한 설계경기는 협회가 나서서 심사위원 구성이나 설계기간 그리고 보상계획 등의 내용을 발주처와 조정할 수 있게 하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협회는 회원을 자제하도록 하는 힘이 다른 단체보다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능력이 가장 강하다고

됩니다.

김성국 : 그동안 발주처에 따라 설계경기에 대한 사항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모르고 현상공모를 시행했던 사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응모작품의 심사위원 공개를 대부분 하지 않았고 당선작 발표직전에 하거나 이에 하려고 생각지도 않는등 어찌보면 발주자의 일반통행식이 많았는데 저는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개할 함으로써 응모자에 있어서는 응모여부를 판단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한번 작품을 공모하는데에 적지않은 비용이 들음으로 응모자측에서 보면 무리가 아닐 것 입니다.

박찬무 : 최근 공모하는 설계경기를 검토해 보면 발주자측에 개최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실시설계의 작가를 선정하기 위한인지 설계경기의 근본 목적인 작품의 창작성 고려라는 신진건축가에게 응모 기회를 부여하여 참신한 공모안을 얻기 위한 취지에서 전반적인 작품의 창작수준을 함양시키기 위한다든지 등 "공모의 성격명시"를 동산시켜서 운용 되었던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계경기가 현상설계경기인 경우 상금은 본설계비 총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설계비에 추가하여 UIA 나 협회에 공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현상을 보아올 때 상금은 본 설계권을 주는 정도로써 개발주체의 전횡의 대부분이어서 사실 국제적인 수준의 현상설계는 몇 없었다는게 우리의 현상설계의 실태라 봅니다.

공탁은 대개 읍지로 재개발 프로젝트가 2천만원 정도였고 분당 시범단지과 같은 대단위 복합전물단지인 경우는 단일 건축보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가 제도적으로 공탁권유, 참가(수준이하인 경우)만류 등 방법을 결정하여 3단체에서 단합하여 사회적으로 건축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인정받는 길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노력이 없이는 무의식적인 현상 남발 행태의 개선이 불가능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설계·심사 및 시행과정에서 전반적인 연결고리는 결정적으로 위인설관식인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특히 시당국이 불공정하게 대개발그룹의 비호·정경유착의 사례로서 그 실적근거로 지금도 중심상업구의 과도한 책정, 교통체제의 불합리성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발밀도·용도상 상충 등 난항중에 있는 사실이 이와 같은 원인-결과와 악순환입니다.

실은 제 논문이 "설계 및 시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이었으며 이는 곧 건전한 비평의 역할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건축계의 비평부재가 바로 문제의 핵이라

발주처가 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예산사용시기에 묶여서 작품계획기간이 한달도 안 되는 것이 있는 등 너무 짧게 공고되고 있고 응모자측도 대규도 프로젝트에만 한꺼번에 대거 응모하는 자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기하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예산중에서 계획설계비와 기본설계비로만으로 설계경기를 함으로써 실시설계를 하는 당선작 이외에 입상자는 제작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금을 받게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상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또한 비평·평가 내용이 설계과정에 환류되는 일련의 과정이 결여되고 설계자도 일회용 당선여부에 관심이 지속적인 평가과정이나 장치가 없었던 점, 비평이 강한 작가는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80년대의 건축·도시 개발양상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됩니다.

또한 비평·평가 내용이 설계과정에 환류되는 일련의 과정이 결여되고 설계자도 일회용 당선여부에 관심이 지속적인 평가과정이나 장치가 없었던 점, 비평이 강한 작가는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80년대의 건축·도시 개발양상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사회 : 설계경기의 응모작품이 적어지는 이유는 건축사사무소 자체 수주 업무가 많거나, 공모조건에 문제가 있거나, 설계비는 역무 댓가가 심히 적다던지, 또는 설계경기 건이 너무 많아 남발되는 인상이 있고, 발주자의 일반통행식 운용에 회의를 느꼈거나 하는등이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박 찬 무

발주처가 예산사용시기에 묶여서 작품계획기간이 한달도 안 되는 것이 있는 등 너무 짧게 공고되고 있고 응모자측도 대규도 프로젝트에만 한꺼번에 대거 응모하는 자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기하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예산중에서 계획설계비와 기본설계비로만으로 설계경기를 함으로써 실시설계를 하는 당선작 이외에 입상자는 제작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금을 받게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상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이각표 : 동감입니다. 발주처가 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예산사용시기에 묶여서 작품계획기간이 한달도 안 되는 것이 있는 등 너무 짧게 공고되고 있고 응모자측도 대규도 프로젝트에만 한꺼번에 대거 응모하는 자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기하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예산중에서 계획설계비와 기본설계비로만으로 설계경기를 함으로써 실시설계를 하는 당선작 이외에 입상자는 제작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금을 받게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상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주최자는 공모발주전에 설계공모의
기본자료 준비에 발주를 기해야 합니다.
공모건의 발주 건의한 1~2 일 앞뒤에
드는데다가 모형을까지 요구하면 또
추가경비가 들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자제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각 표

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작이나 우수작등 입상작의 범위를 넓혀서 당선은 안되었다 할 지라도 주최자측에서 보면 다 발주자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우수한 案을 모집하게 되었으므로 주최자는 설계경기 자체를 일종의 투자로 생각해서 입상자에게 설계안 제작실비 정도는 지급해주는 여유가 있어야 당선되지 않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큰 프로젝트의 설계경기인 경우에는 심사단계를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1차에 통과되지 못하였다라도 작품제작에 드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최자는 공모발주전에 설계공모의 기본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어떤 공모건의 경비만 1~2만원 가량 드는 데다가 모형까지 요구하면 또 추가경비가 들으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자제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응모자측에서는 당선이 안된 경우 막대한 비용도 비용이러니와 열심을 다해 작품을 계획하고 밤잠을 안자며

설계경기 공모시 모형 기증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모하는 것은 결국 자금
문제로, 공사에 들어간 비용도
심사위원과 그 심사위원의 만능이 아니라
영지 때문일지, 당선(선배) 공개(배) (1
대만 예산을 500만원 정도 받고
선배(선배) 당선(선배) 당선(선배) (1

준비했는데 하는 아쉬움에 직원의 사기저하문제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막심한 형편입니다.

손두호 : 설계경기 공고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비해서 충분한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설계경기 공고시 알릴 것을 알리지 않는 경

우가 많습니다.

응모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에 관련된 사항 즉 심사위원과 그 절차는 전혀 밝히지 않는 예가 대부분이며, 당선작이나 우수작에 대한 보상 즉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황일인 : 지금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남산 국회의사당 계획이 본격적인 설계경기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부산민중역사, 공군본부, 정부종합청사,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이 초창기의 큰 설계경기였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큰 설계경기는 건축계에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 같은 활력소의 역할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능력있는 신진 건축가가 데뷔할 수 있고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 설계경기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이광노 선생님, 김수근 선생님 같은 분이 60년대 당시 30대 소장 건축가로 설계경기를 통해 명성을 굳힌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80년대에 시행된 공모건을 돌아보면 초반에는 국립현대미술관등 대형 문화시설들이 있었고 예술의 전당, 한국무역센터, 88올림픽선수촌 등이 국제현상으로 시행된 것이 특기할만 합니다.

후반에 들어오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서 신도시 혹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아파트 단지들과 지방 공공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근년에 그 건수가 점점 늘어 작년에는 30여건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점, 기회가 많아진 것이므로 지원자로서는 선별해서 응모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상설계가 많다보니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고 건축계 전체로 볼 때 에너지 낭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설계경기 목적이 분명치 못하여 앞서 지적되었듯이 설계경기를 책임을 면하는 방편정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선정된 작품이 설계단계에서 콘셉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보게 되는데 발주처의 간섭에 의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왜 그 작품이 선정되었는지 어리둥절해 질 경우도 있습니다.

강기세 : 저는 우리나라 현상설계의 문제점들을 여러 분들의 의견과 같이하면서도 좀더 각도를 바꾸어 보면 응모자나 심사위원이나 결국 건축계의 일원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주자의 일방개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동감입니다. 그래서 발주자측의 처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계가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응모자도 자존심을 살려서 제대로 시행된 설계공모가 아니라면 이에 응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품심사위원회와 심사과정은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공개를 요구하면 심사의 공정성과 심사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역할도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지명설계경기를 응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응모전에 저희가 발주자측에 들러리를 서는 식의 공모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혀서 발주자측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기간도 20여일 밖에는 안되었습니다라는 청사진으로 제출하라 해서 작품을 출품했는데 심사결과에 대한 작품공개도 하지 않다가 잠지사에서 공개를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요구를 받아들여 2시간동안만 공개한다해서 가보니 당선작만 사진판 판넬로 제작되었더군요. 제 상식으로 보는 기간이 20일간이라면 청사진으로 제출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했을 텐데 언제 지렁이 사진판으로 제작 제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심사위원도 공모때의 조건을 감안한 심사기준으로 심사했을텐데 하는 쓴웃음을 삼켰던 적이 있습니다.

안영배 :작년에 시행되었던 대구박물관 설계경기시엔 참 좋은 심사과정을 밟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 하진 않았지만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한 후 운영위원회 좌담회에서 심사위원도 공개했고, 심사위원수도 그리 많지 않은 5명이 있었으며, 모두 건축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발주처에서는 심사에 참여는 했지만 결정권을 갖지 않았으며 심사결과를 깨끗이 받아들였던 가장 이상적인 설계경기였다고 봅니다. 도면사이즈 검토, 도면넘버링 체크 등은 사전에 기술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공모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미리 선별하는등 준비도 잘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사기준 규정을 정하고 정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응모자의 자세인 동시에 심사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박찬무 :목동 아파트 설계경기일때도 당초 공모조건(모형제출 불가)을 어기고 칼라사진을 제출했던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발주자측의 요청으로 통과했으며 만일 요청사항을 듣지 아니하고 당초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을 고집한 경우 우리네 유교문화권에서는 다음 건의 심사위원 배정시 제외시켜 버리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規定은 公正해야

사회 :작품마감 시간의 엄수에도 문제 있습니다.



황 일 인

요계모기 축적해 분장지 못하여 설계경기를 허탈을 받아는 방편경으로 응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전경원 작준비 설계단계에서 문제점이 완전히 알려지는 경우를 공통되게 되는데 발주자의 간섭에 의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또 그 작품이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토요일 오후 1시까지가 마감인데 저녁 5시경에 가져온다든지 월요일 오전에 가져와도 받아준다든지 해서 그러한 점을 항의하면 발주자측의辯이 출품자가 심혈을 기울여 애써서 제작해 왔는데 그것을 안받아 주어야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주자측에서 마감시간을 엄수한 다른 출품자를 고려하기보다는 한 작품이라도 더 발자하는 의사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국 :외국의 경우에는 유기명 지명설계경기든지 무기명 설계경기든지 대부분 출품때의 칼라를 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투시도가 아닌 각종 도표 다이어그램에 있어서만 칼라를 쓰게 한다든지의 규정 준수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심사하는 사안에 따라 약간 다를수 도 있지만 획일적인 규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참모자도 자존심을 살려서 제대로 시행된 설계공모가 아니라면 이에 응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품심사위원회와 심사과정은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공개를 요구하면 심사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역할도 될 것입니다.

한규봉 :그러한 문제점들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지침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규정을 엄수하여야하는 측면에서 규정에 위배되면 좀 가혹하다 하더라도 탈락시켜야 설계경기 질서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지침위반사항을 구제하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응모자측이 이를 이해하려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역이용하려는 응모자가 많아진다는 점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각표 :응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작품을 심사

현상 설계공모의 사전준비사항,
현상공모상금의 문제, 준비위원회
의 선정, 심사위원의 선정, 작품심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시키고 질을
향상시켜서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김 성 국

위원에게 돋보이게 하려고 열성적으로 하게 마련이고 또 제작과정에 깊이 파묻히다 보면 그러한 행위가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경기란 자체가 틀에 의해 존재되는 것이니 만큼 틀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세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국 : 이러한 문제점들의 공정성 확보의 문제를 건축사협회가 개입하지 아니하면 다른 어느 단체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빨리 규정을 보완하고 현상공모의 발주예상자와 일반인들이 현상설계 공모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현상설계 공모사항에 대하여 잘 모르는 점은 건축사협회에 문의하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현상 설계공모의 사전준비사항, 현상공모상금의 문제, 준비위원회의 선정, 심사위원의 선정, 작품심사결과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시키고 질을 향상시켜서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선택한 이유가 분명하면 낙선한 것이 불합격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현상설계의 토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UIC 현상 규정에서도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회 : 건축 3단체에서 한국건축설계경기 규준을 제정했는데 대부분 본 협회 회원이 출품하게 되어 한국건축가협회나 대한건축학회에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가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에 관련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본 협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넘겨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건축설계경기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였지만 설계 경기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심사규정, 심사위원의 전문성, 심사의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審査委員의 數가 많으면 創作活動에 阻害될수도

안영배 : 심사위원은 공개되어야 하고 인원수도 적은 것이 좋습니다.

심사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심사결과에 대한 각 위원들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오히려 정실이나 파벌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경우 응모자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막을 길이 없지만 이것은 양자간의 양심의 문제이며 심사위원수가 적을 경우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수가 많으면 기능적으로 무난한 작품이 선정되기가 쉬운 반면 개성있고 창의적인 작품이 당선된 확률이 적습니다.

설계경기 원래의 취지는 창의적이고 독특한 작품을 선정하는 일이며 기능적으로 불합리한 면은 발주처와 협의해 가는 사이에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점에서 심사위원의 수는 적을수록 좋으며 미리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국 : 저도 동감입니다.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경우 출품자와 심사위원간의 접촉을 전혀 배제시킬 수는 없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당선작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몇 작품을 놓고 다수의 의견을 물어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작품으로 한다고 해도 과연 그러한 방법이 좋은 것인지를 재고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방법인 것 같아 좋을지 모르지만 작품성이 있는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설계경기의 당선작 결정 방법으로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무난한 작품에 지지를 한다해서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무난한 것이 뽑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과정까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審査委員의 専門性이 考慮되어야

사회 :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하여는 어떻겠습니까?

한규봉 : 저는 심사과정과 결과를 완전공개하는 경우에만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심사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경우라도 발주처에서 주관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연이나 지연에 치

우릴 우려가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도 전에 심사위원을 위촉해 본적이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프로젝트에 전문이 아니라고 사양하는 예는 한번도 못들어 보았습니다. 심사요청을 받았을때 심사과정이나 조건등을 이것저것 물어보고 승낙여부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찬우: 심사위원을 공개하게 하고 심사의 진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건축사협회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외측에 있어서도 모든 프로젝트를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사에 응하는 태도는 심사위원 스스로가 비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황일인: 심사위원의 공개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안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의 공개로 인한 여러가지 부정적인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은 이미 대구 박물관 설계경기과정을 통하여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설계경기란 응모자와 심사위원 두 그룹의 작가에 의해 설계안이 제작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양한 대안의 가능성과 예술적 개성을 속성으로 갖고 있는 건축설계의 특질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아이디어의 「우열」이란 의미보다 「선택」이란 의미가 더욱 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설계경기의 경우 그 선택의 절대적 권한이 심사위원에게 있기 때문에 응모자로써는 이에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으면 포기하든지 혹은 이런것 한번 보라는 식으로 도전하든지 말이지요. 현상설계가 즐거운 찬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분명하게 정당하게 치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선택한 이유가 분명하면 낙선한 것이 불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현상설계의 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UIA 현상 규정에서도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을 공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설계경기의 목적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려는 것인지 능력있는 건축가를 선정하는데 있는지를 개 최자는 분명히 해서 만약 건축가 선정이 목적이라면 좀 더 간단한 방법을 택해야겠고 작품 선정에 그 목적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두호: 황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설혹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한 사람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손 두 호

설계경기의 목적이 특정한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인지 건축적인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한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 다. 만약 작품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도 공개가 되면 책임질 수 있는 결과를 낼 것 입니다. 그리고 설계경기의 목적이 특정한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인지 건축적인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한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 다. 만약 작품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세: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 즉 미술관, 박물관 시청사 등의 프로젝트는 지명설 계경기인 경우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심사위원도 연령별로 고루 분포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높은 심사위원의 경우 세대간의 시각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젊은 건축가가 제출한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영 배

설계경기 형태의 취지는 정의적이고 특정한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에 기능적으로 결구해된 것은 발주처와 발탁해 가는 사이에 어느정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면서도 심사위원의 수는 적을수록 좋고 이 때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배: 그 문제는 발주처에서 고려할 사항이겠으나 그렇다고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연령별 고려보다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더 문제 일 것으로 봅니다.

사회: 어떠한 심사전은 구조나 설비측면이 지나치게

응모자는 발언기회를 갖고 진해
정보를 얻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므로 협회에서 설계경기를
등록하게 된다면 사전에 경고를 알릴 수
있어 참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고
발주자측에도 경종을 울려주며 내실있는
심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강기세

강조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배 : 심사위원의 구성은 역시 건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축전문가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
니다. 구조나 설비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사과정
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아무리 수가 적더라
도 건축전문가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한규봉 : 저는 그 문제를 더 신중히 보아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출품작의 작품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점수에 큰 차
가 없을 것이지만 설비나 구조분야는 점수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설비·조경 분야의 배점 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건축계획보다 설비나 구조등의 측면이
오히려 당락의 향방을 좌우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에 임하기전 또는 심사진행중
구조나 설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사에 참고하는 정
도로 했으면 합니다.

개정하는 방향은 발주자측에는 건전한 방향으로의 설계경기를
시행하게 하는 권고적 내용으로, 출품자측에는 선의의 경쟁
결과에 대한 승복의 자세를 갖게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좀 강제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전과 같이
규정만 있고 지켜지지 않는 전철을 밟게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 : 어떠한 설계경기전의 심사결과에 대한 후문을
들어보면 심사평의 표현방법에 있어 건축분야의 심사위
원은 점잖은 표현을 하고 말수를 줄인 반면 구조전문가
가 상당히 높은 톤의 강경발언으로 심사결과를 좌우하
는 주도권을 행사해서 건축계획쪽보다 구조측면이 강조
되었다는 사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경과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건축설계경기

에 관련한 바람직한 협회의 역할에 대해 모색해 봅시
다.

設計競技의 秩序를 바로 잡으려면 우선 協會에 登錄
制度가 先行되어야

강기세 : 최근들어 설계경기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
지만 제대로 설계경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응모자도
단합된 면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응모자는 발언기회도
없고 공고되는 설계경기에 임하는 것이 두려워식이 되
는 것인지 전혀 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
하므로 협회에서 설계경기를 등록하게 한다면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참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고 발
주자측에도 경종을 울려주며 내실있는 심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안영배 : 아무래도 응모자의 대부분은 건축사협회 회
원이기 때문에 가협회나 학회와 협의해서 사협회 주도
하에 통계기능을 갖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강제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정착되
면 발주자측의 불공정한 설계경기를 건전한 방향으로
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규봉 : 물론입니다.

앞으로 설계경기 시행은 점차로 증가되지 감소하자는
않을 것이므로 설계경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은 UIA 규
정을 참고하여 72년에 제정되었고 '84년 일부 개정되었
다하나 제정당시와 거의 같은 내용이므로 차제에 현실
에 맞게 보완·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3단체 공
동으로 조직된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지
만 앞으로는 자금력이 있는 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예산
을 들여서 개정하고, 또한 실제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경기가 시행되도록 설계경기를 자주 시행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10부든지 20부
든지 충분한 부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개정하는 방향은 발주자측에는 건전한 방향으로의 설계
경기를 시행하게 하는 권고적 내용으로, 출품자측에는
선의의 경쟁 결과에 대한 승복의 자세를 갖게하는 내용
으로 되어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좀 강제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전과
같이 규정만 있고 지켜지지 않는 전철을 밟게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강기세 : 같은 의견입니다.

일개 개인이 공모하는 것은 그대로 둔다하더라도 정부
나 정부투자 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으로서 지명을 받으

면 자기만 알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다른 이에게도 알려져 정보를 교환하고 모여서 회의라도 하면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영배 : 협회에서 일일이 정보수집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협회의 현실과 직원현황을 고려하여 정부기관등 발주처에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할 때 모두 정보를 캔다는 것은 발주처에서의 배타적 자세로 어려우므로 공고내용이나 공문 또는 전화통보로 지명을 받았을 때 상호정보 교환해서 설계경기에 입했으면 좋겠고 설계경기의 등록제 문제는 제생각에 당장 강제적인 규정으로 시행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발주자 측에 권유하여 단계적으로 정착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상작의 명칭은 가작을 빼고 최우수작, 우수작, 준우수작 등으로 개칭해서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각표 : 응모자들 개개인이 대처한다는 것은 실현성이 어려우므로 회원을 판장하는 협회가 중심이 되어 설계경기를 등록하게 하거나 공고 내용을 신고받아서 공고내용에 있어 개최목적과 방향이 모호하거나 상금의 명시가 없다거나 심사위원 구성등 심사에 관한 사항이 불분명하다거나 한 것을 건토힌서 협회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합니다. 또 응모예정자가 모여서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손두호 : 제 생각으로 협회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작업은 설계경기에 대한 모니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내용이 협회기준에 부합되면 회지 또는 전화로 적극 홍보하여 참가를 유도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당한 이유를 홍보하여 참여를 자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계경기가 있었는데 진행결과가 어떻게 되었다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또 협회에서 부당했던 설계경기공모 사례를 회지에 게재하여 당해 발주자측과 앞으로 발주자를 각성시키고 등록이나 신고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할 수 없다면 일간 신문에다 기사를 실거나 광고하면 더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사회 : 등록제는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 같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담직원이 최소한 2~3명은 있어야 할텐데 현상설계에 별로 입하지 아니하는 다른 다수의 회원으로 부터 반발도 예상되므로 점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단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규 봉

설계경기에 출품했던 작품을 도집으로 발간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1년동안 시행된 작품 모두를 발간할 수는 없겠지만 입상작이나 일정기준으로 선정된 작품들과 심사결과와 분석 내용을 게재하여 책으로 발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규봉 : 설계경기에 출품했던 작품을 도집으로 발간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1년동안 시행된 작품 모두를 발간할 수는 없겠지만 입상작이나 일정기준으로 선정된 작품들과 심사결과와 분석 내용을 게재하여 책으로 발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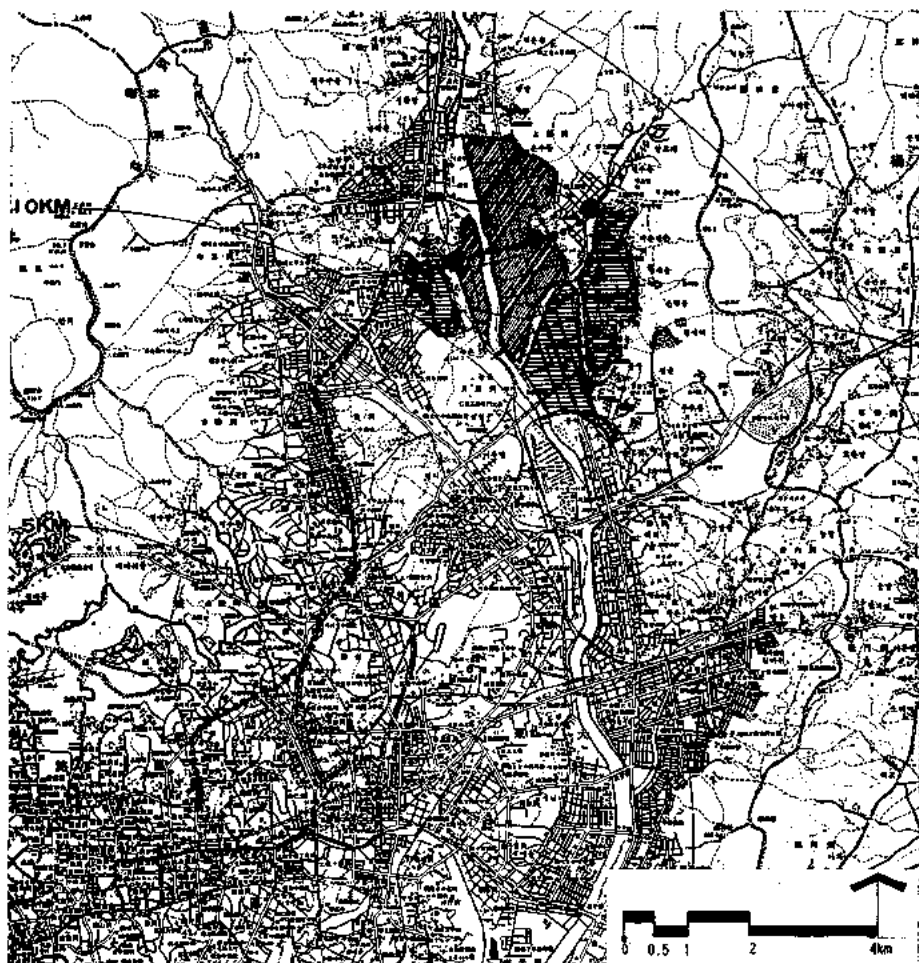
이와 같은 작품집을 발간한다거나 어느 발주처에서의 설계경기 심사가 끝난 다음에 건축사협회가 작품들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전시한다면 회원이나 소속직원에게는 정보의 제공과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이고 발주처에게는 건전한 설계경기를 시행하고 심사도 공정히 하도록 하는 무언의 권유를 하는 결과가 되어서 건전한 설계경기 풍토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문제, 설계경기공모 운용을 회지에 게재 또는 보고장, 문자에 의한 사항이 오늘 좌담회에서 이야기하였다는 데에 깊은 의미를 갖게 하는데 앞으로도 장시간 설계경기문제가 정착되도록 규정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대두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책임감이 앞섭니다.

사회 : 열띤 좌담을 벌이는 동안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해 주시고 정말 좋은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좌담회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이 폭넓게 협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문제, 설계경기공모 내용을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는 문제에 대한 사항이 오늘 좌담회에서 숙의되었다는 데에 깊은 의미를 갖게 하는데 앞으로도 건전한 설계경기문화가 정착되도록 규정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대두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책임감이 앞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좌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계 신시가지 위치도

都市計劃 側面에서 본

上溪新市街地 開發

A Study on Development of Sanggye District in the View of Urban Planning

呂鴻九/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by Yeo, Hong - Koo

1. 머리말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住宅建設 200萬戶 建立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시행의 일환으로 분당, 일산 등과 같은 신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대규모 宅地開發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주택, 각종생활편의시설, 도로,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 다양한 시설이 立地하는 신시가지로서 주택건설이란 의미를 넘어서 都市開發事業이다.

신시가지의 개발은 기존 시가지내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선별적으로 분산시키므로써 기존 시가지가 갖고 있는 過集中 문제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택용지의 공급으로 도시 주택난의 완화와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이룩 할 수 있으며, 그 위치가 도시의 외곽지인 경우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균형적인 都市空間의 형성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신시가지 개발이란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시의 구조와 기능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변 시가지 또는 자연환경등과의 연계성을 갖는 개방적인 개발이라고 생각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上溪新市街地의 계획내용을 살펴보았다.

2. 新市街地開發의 背景 및 計劃內容

上溪新市街地는 이론적으로 서울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외곽부에 위치하고 있다. 상계지구의 규모는 단지면적 약 100만평에 4만戶 정도의 공동주택이 건설되어 과천(약 1만 4천호), 개포(약 1만 6천호), 철산(약 1만 5천호)지구와 비교해 볼 때 건설호수가 약 2.5배 많은 대규모 주택단지이다. 이와같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짧은 기간동안 건설되므로 인해 地域空間構造는 필연적으로 급격한 변화(토지이용, 교통, 중심기능 등)를 수반하게 되며, 새로운 공간구조로 재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될 것이다. 上溪地區의 개발은 서울시 주택공급에 그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즉 서울시의 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주택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예로서 1986년에

서울시 주택선매 청약 가입자는 약 25만이었음) 이를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의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上溪地區는 서울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외곽도시에서 서울로 진입시 가장먼저 거치는 관문으로서 인근도시(에 의정부)를 포함한 地域中心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자족적인 중심을 형성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형이 평탄하고, 당시 대부분 마개발 상태(마들평야)로 남아있어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높았다. 또한 개발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하여 소규모단지 건설방식에서 대단위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방식으로 정책기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반여건이 부합되어 상계지구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되었다.

상계지구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1985년 4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건설부 고시 제151호) 동년 11월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득했으며, 그 1년 후인 1986년 3월 택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졌다. 1986년 이후 약 3년반이란 짧은 기간동안 개발과 입주가 마무리 되었다.(표 1 참조) 이렇게 단시일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초기에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이보다는 여러가지 都市問題가 파생되는 역기능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부정적인 생활환경의 조성과 교통혼잡등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계지구 개발에 대한 都市計劃의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계획당시의 기본방향과 계획목표, 계획접근방법, 물리적계획내용, 주택건설내용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계지구개발에서 설정한 基本方向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물리적 개발잠재력 및 각 장소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둘째, 주거환경에 대한 입주대상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셋째,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융화도모, 복지 및 상업시설의 적정한 공급으로 생활의 편의성 제고 및 지구특성에 맞는 사회, 문화공간의 확보, 넷째 서울 동부지역의 도시구조를 주변 도시상황과 균형이루게 개편이란 4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방향을 구체화 시키는 計劃의



상계1단계 개발지구 전경

〈표 1〉 年度別 住宅建設 및 入住現況

구 분	1987년	1988년	1989년	계
준공(戶)	5,246	29,494	5,484	40,224
입주(세대)	4,886	29,854	5,484	40,224

(자료 : 대한주택공사, 상계신시가지 개발사Ⅱ, 1989, P. 83)

目標로는 첫째, 광역적 시각에서 주변지역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즉 광역체계 및 上位計劃上的 계획지구 역할을 고려하면서 이 地域이 가지는 개발잠재력을 활용하려 했다. 둘째 생태적 측면에서의 기회요소를 적극 활용코자 하였다. 각 장소의 생태적·물리적특성에 따른 잠재력을 파악하고 활용하면서 사회적 문화를 수용하는 근린사회를 計劃, 셋째, 자족적인 生活圈이 형성되도록 충분한 중심시설을 설치하는데 역점을 둔다. 일상생활시설을 단지내 설치함으로써 도시의존적인 생활패턴을 지양하고 地域生活圈을 조성하여 근린의식을 제고시키고 사회·문화적인 자족환경조성, 넷째, 중심지의 都市性(Urbanity)과 주거지의 住居性을 보장하기 위해 都市的 기회요소를 증진시키고 주거지의 안전성·편익성·근린성 및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데 주력, 다섯째, 자연환경의 적극 활용으로 쾌적한 住居環境을 조성하기 위해 인접하천(중랑천)을 공원화하고 인접 자연녹지와 상계지구내 綠地體系와의 연결을 구체화 하면서 인근 산악들의 조경효과(원경)를 극대화시키는 등 5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計劃의 接近方法으로는 街路網, 토지이용, 街區分割 등 전체 대상지구에 대한 평면적 공간구조와 그 구조 속에 담기는 건축물 및 단지계획등을 동시에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物理的 計劃內容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주택지계획, 상업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도로계획, 학교시설계획, 사회복지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상하수도계획, 공동구시설계획, 주차장시설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계 획 내 용														
토지이용 계획	• 토지이용의 기본구상은 상계지구를 서울북동중심지로 개발 • 서울 도시공간구조의 부도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시가지로 개발 • 인접한 불암산 및 수락산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원·녹지체계 설정 • 장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망계획 수립 및 기존 간선 가로망의 정비 <table><tr><td>구 분</td><td>주택용지</td><td>상업용지</td><td>학교용지</td><td>공원용지</td><td>도로용지</td><td>기타공공시설용지</td></tr><tr><td>구성비(%)</td><td>49.63</td><td>10.66</td><td>8.34</td><td>7.43</td><td>19.42</td><td>4.52</td></tr></table>	구 분	주택용지	상업용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도로용지	기타공공시설용지	구성비(%)	49.63	10.66	8.34	7.43	19.42	4.52
구 분	주택용지	상업용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도로용지	기타공공시설용지									
구성비(%)	49.63	10.66	8.34	7.43	19.42	4.52									
주택지 계획	• 步行圈을 중심으로 9개의 근린 생활권 구성 • 토지의 고도 이용을 위하여 중층에서 초고층까지 다양한 주택 형태 도입 • 단지계획의 융통성을 줄수 있도록 가구를 수퍼블럭화														
상업시설 계획	• 부도심(미아, 수유)과의 연결은 고려하되 상계지구의 중심상권형성을 위해 대규모 상업·업무시설을 창동과 노원역 인근에 배치 • 상가의 기능적 편의성과 도시화 촉진을 도모키위해 동일로변 일부에 복합 상가계획 • 상업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행정중심기능 및 주변지역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구청, 등기소등 공용의 청사 유치 •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의 효율적유도를 위해 도시설계 시행														
공원·녹지 계획	• 인근 수락산, 불암산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녹지체계 형성 • 지구내 1개소의 대규모 운동공원을 설치하고 주민과 어린이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을 평등배치 • 주변 중심부와 공원·녹지등의 연결을 위하여 보행전용도로 설치 • 중랑천과 당현천의 고수부지를 이용한 녹지공간과 연계성을 갖도록 川邊에 근린공원 설치 • 지구 서측의 경원선과 중랑천 서측및 동측 川邊도로의 소음차단 또는 완화를 위하여 완충녹지대 설치 • 어린이의 휴식공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을 균등 배치														
도로계획	• 동일로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교통의 우회를 위하여 중랑천 동측 제방도로를 확장(폭 20m→폭25m)하여 대체도로로 활용 •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2개소의 교통광장을 설치하고 지하철승환을 위해 2개소의 환승시설설치 • 지구내 국지도로는 지형과 단지내 주요시설을 고려하여 도로 선형 조정 •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기존의 간선도로는 폭원확장 • 지구내 주민을 위해 시내버스 정류장부지 확보 • 지구와 인접한 노원역, 창동역, 녹천역 등과 대중교통 수단과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도로계획 수립														
학교시설 계획	• 주변 학교와의 유치거리와 학군을 고려하여 근린지구별로 국민학교 설치 • 국민학교 11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5개소 배치														
사회복지 시설계획	• 지구 남측 진입부에 계획된 근린공원과 인접하여 사회복지 시설단지 조성 • 기존의 성모자애원 및 연구, 문화 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유치														
공급처리 시설 계획	•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시설은 지구하단 가스공급시설 부지 인근에 유치하여 주택지로부터 충분히 격리시킴 • 소각로를 갖춘 무공해 시설로 계획														
상하수도 시설 계획	• 상수도...암사수원지에서 상수공급관로를 설치하고 월계동고지에 배수지인설 • 하수도...오배수 분리식으로 하며, 오수는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중랑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														
공동구시설 계획	• 간선도로의 이중중축 방지와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해 중심산업 업무지구의 인접도로 지하에 공동구 설치														
주차장 시설 계획	• 중심상업지구 개발에 따른 주차수요 충족과 노원역의 환승시설로서 노원역에 인접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자료: 상계개발계획보고서및 상계신시가지개발사 I에서 내용 발췌 요약)

住宅建設의 基本方向으로는 첫째, 수용능력에 맞추어 주택공급 극대화, 둘째, 지역사회의 균형을 도모하고 立地特性에 맞추어 다양한 주택유형의 건설로 설정하였다. 주택건설의 규모를 총별로 구분하면 저층이 7.4%에 불과하며, 고층 및 초고층이 92.6%로서 상계주택단지는 고층아파트군으로 조성되어 있다.(표2 참조)

3. 新市街地開發의 計劃的 考察

신시가지의 개발은 시민을 위한 새로운 定住環境을 창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추구하는 바는 定住體系內에서 모든 요소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요소간의 균형이란 주거밀도와 규모, 생활편의시설, 가로망,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등이 적정규모로 적소에 배치됨으로써 각 기능 상호간에 필요한 연계를 갖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시가지는 도시의 일부로서 존재하므로 도시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질 수 있어야 좋은 定住環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신시가지개발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상계신시가지의 개발은 주택공급과 서울 東北地域의 새로운 정주공간 형성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며, 20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주거단지임을 고려할 때 주택단지로서의 한계는 벗어나 도시규모에 부합될 수 있는 都市性(Urbanity)의 구현이 필요한 지역이다. 조성된 신시가지가 갖고 있는 환경형성의 특징으로는 먼저 설계지구 개념을 도입하여 각 지구별 특성있는 건축형태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단지 조성시 집분산도로변으로 주민편의시설등을 배치함으로써 街路가 단지 團地의 경계부가 아닌 근린활동의 場이 될 수 있도록 단지구조를 개방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신시가지의 중심기능을 불력식편아나라 東一路邊으로 선형상가를 배치하여 가로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지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都市性을 살리려고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허가 할 수

〈표2〉 戶別, 段階別 住宅建設 規模

구 분	저 층	고 층	초고층	계
1단계(戶)	1,392	10,346	190	11,928
2단계(戶)	1,430	22,212	•	23,642
3단계(戶)	160	4,494	•	4,654
계(戶)	2,982	37,052	190	40,224
구성비(%)	7.4	92.1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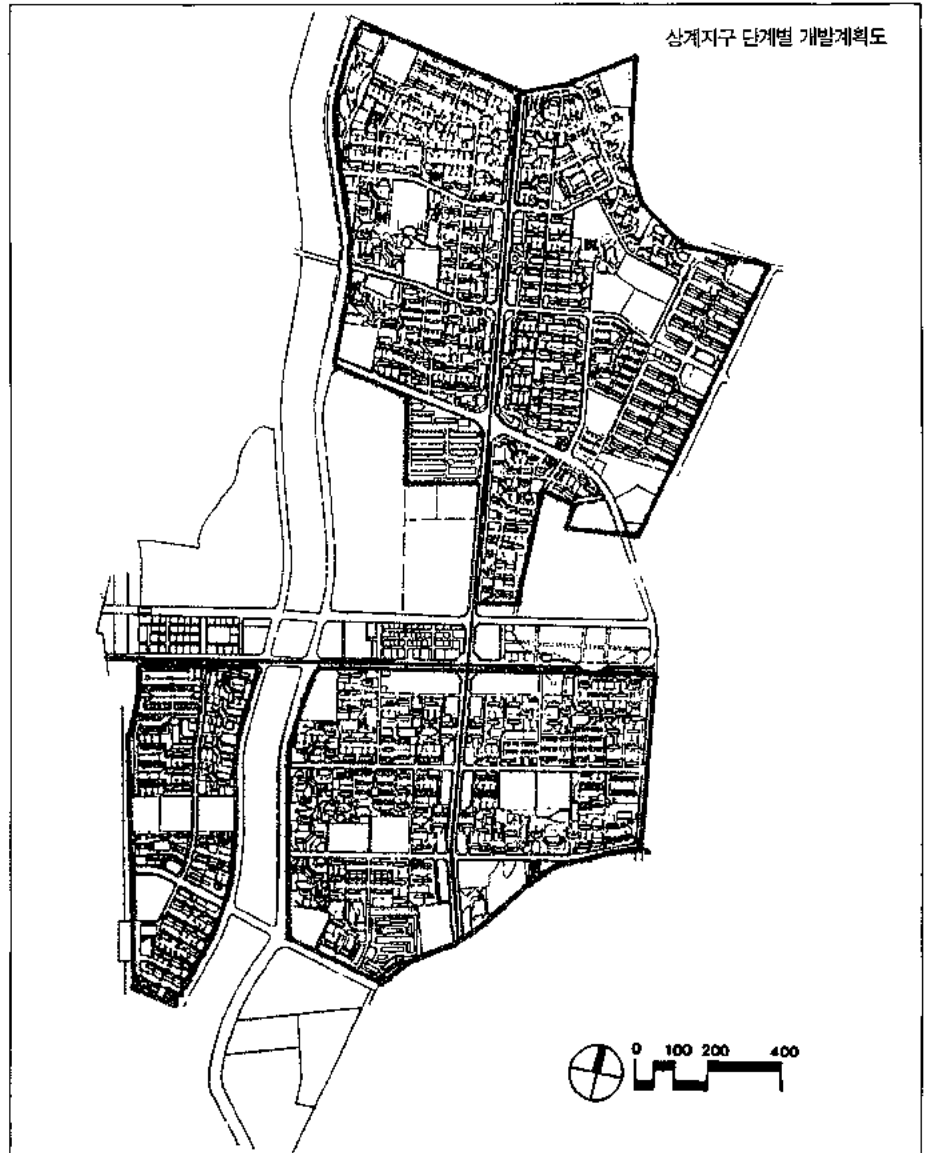
(자료 : 대한주택공사 상계신시가지 개발사Ⅱ, 1989. P.83)

있다. 그러나 대단위 신시가지를 짧은 기간동안에 건설함으로써 장래 여건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타지역개발과의 연계성, 당초 計劃目標로 設定한 주변지역의 中心地로서의 역할 가능성, 입주 시기에 맞추어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생활편익시설, 간선도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교통난, 주택규모가 소형위주로 개발되어 단지의 단조로움과 주거의 안정성 문제등 여러가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

상계신시가지 개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開發期間

인공적으로 만든 定住環境이란 도시와 마찬가지로 성장해가고 끊임없이 변모를 거듭하기 때문에 예초에 이상적으로 만든 생각이나 구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게 된다. 상계신시가지와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의 건설은 주변환경과 여건의 변화, 변모를 거듭하는 수요자들의 요구, 사회·경제적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러나 상계지구의 경우 1985년 4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여 동안 개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3년반이란 짧은 기간동안 건설을 완료하므로 인해 주변가로의 교통문제, 주거편익시설의 미비, 엄청난 건설인력과 자재가 일시에 집중되므로 인한 수급불균형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발 후 분양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타지역(목동, 올림픽아파트 등)과 비슷한 시기에 주택분양이 되므로 인해 미분양사태(1987년 구후)가 발생하여, 주택공급이란 개발의 효과도 반감되었다고 생각된다.



나. 計劃 연계성

신시가지의 개발에 적용된 법규는 특별법인 주택건설촉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이었다. 이 특별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지구의 지정 기능을 일부가지고 있다. 예로써 자연녹지지역을 사전에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주거, 상업지역으로 그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上溪地區는 당초 서울시의 도시계획에는 개발구상이 없던 도시내 신시가지 건설로서, 이렇게 급격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서울시 전반적인 都市計劃이 이에 대응치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관련계획간의 연계성 미비로 지역간

가로망형성, 공원녹지체계, 신시가지시설부족 등 여러가지 면에서 지역체계와 계획체계간의 상충이 파생되었다. 또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면에서 전체도시구조상 서로의 조정이 되어야 하나 상계개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 예로서 상·하수도공급문제와 노원전철역 주변의 단독주택지가 계획지구에서 제외되므로 인해 아파트단지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공간구조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가로망의 일부구간 개설이 지연되므로 인해 주변 연결 가로에 교통량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 機能

상계중심지의 기능은 서울 북동지역의 中心核으로 개발하려고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배후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낮고, 직장 및 상품구매의 도심 의존적 성향이 강해 中心商圈의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현재 상계상업지역의 개발이 매우 저조한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현대식 유통시설과 종합병원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이 미개설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동전철역 주변에 농수산물 유통기지를 건설하기로 당초 계획하고 그 주변으로 상업지역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농수산물 유통 기지의 계획이 백지화되고 그대신 농협·수협·축협공판장 중심의 대규모 재래식 소매시장을 인근 하계동에 약 8천평 규모로 개발하려고 설계를 변경하였다.

개발의 중심핵시설중의 하나인 유통기지 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 상계중심지개발은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상계중심지가 주변지역 중심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라. 生活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및 적정규모 설정은 지구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역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주요요소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편의시설 배치계획에는 거주자의 성격, 규모 및 시설의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상계신시가지의 경우 당초 계획인구를



상계지구 남북을 관통하며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東一路

중심으로 관리집회시설, 판매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배치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開發主體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까지 해야하는 시설의 경우는 초기에 조성되었으나, 계획된 부지에 건설하는 주체가 시설별로 다를 경우에는 각기 사정에 따라 개발시기가 입주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예를들면 자녀교육시설인 국민학교의 경우 과밀학급(당현국교의 경우 1학급당 평균 90명), 중·고등학생의 경우 원거리 통학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계획시 추정된 인구보다 실지거주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 초기계획인구에 따라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적정하게 하였더라도 개발이 완료된 후 입주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 시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상계 1단계(중심상업지역남측)개발시 계획인구가 약 4만 7천인 이었으나 1년경과 후 1988년에 5만 9천 4백 2인(노원구통계연보 1989년)으로서 약 1.3배 늘어났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편의시설의 서비스수준은 질적으로 저하된다.

마. 交通

상계신시가지 개발후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가 교통문제라고 생각된다. 현재 상계지구의 경우 단지외곽과의 연결 가로망이 미개설되어, 단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東一路의 경우 35m로 확폭되었으나 단일간선도로여서 교통량이 크게 편중되고 있다. 또한 상계지구에서 도심으로 통하는 도로는 동일로를 따라 면목동쪽으로 가는 도로와 도봉로를 거쳐 미아로, 돈암로로 가는 3개의 도로망뿐이어서 출퇴근시 교통혼잡이 심해 이들 도로를 통해 도심까지 가려면 1시간이상 소요되며, 월계로, 동일로, 도봉로 등 주변주요간선도로의 교차로 대부분은 교통서비스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상계동 미도파백화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1989년 참조)

당초 상계지구 계획시에는 주변가로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히 생각하여 중랑천변 도로개선훈 여러가지 교통대안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변지역과의 연계도로는 대부분 미개설상태로 남아있으며 상계교통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부지역 남북고속화도로(상계~용비교)의 건설도

1991년말에 가서야 완공될 예정이다.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경우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상계지구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지하철 4호선 노원역의 경우 1986년 승·강차인원이 457,070인이었으나 상계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는 1987년에는 650,457인, 1988년에는 1,376,589인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 전동차 1량당 지정인원이 156명인데 출퇴근시 약 5배가량 많은 利用人口가 몰려 심한 혼잡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혼잡으로 인해 무리해서라도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세대가 늘어 교통난의 악순환은 거듭되고 있다.

4.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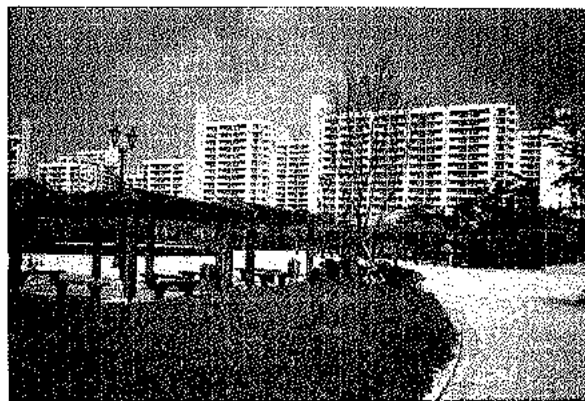
上溪新市街地の開發은 단순한 주택단지건설이란 차원을 넘어 인구 20만을 수용하는 都市開發事業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상계개발은 서울시 주택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대규모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 고용확대 등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가 큰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인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에서 인구 20만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시가지가 짧은 기간에 건설됨으로 인해 교통, 교육,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신시가지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신시가지의 環境, 構造, 密度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미래에 대한 여유있고 충분한 예견과 장기적인 조망이 필요하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의 여건에 계획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단시간에 하기 보다는 상환변화에 따라 계획의 조정을 수반 할 수 있는 단계적인 개발이 바람직 할 것이다.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계층만을 대상으로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들기 쉬우므로 다양한 住宅規模의 立地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개발의 주체가 되어 계획과 설계과정에서부터 상호 협조와 역할 분담이 되도록 하는 共同體



상계지구는 생활편익시설이 태부족인 상태이다.



상계근린공원

〈표3〉 지하철 노원역 이용인구 변화

(단위 : 人)

구 분	승 차	강 차	계	비고(1986년대비)
1986년	255,150	201,920	457,070	100
1987년	404,535	245,922	650,457	142
1988년	714,277	662,312	1,376,589	301

(자료 : 철도청, 철도통계연보, 1987, 1988, 1989년)

開發方式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개발방식은 다양한 계층이 거주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인구규모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질적 수준도 차이가 나므로 계획인구규모와는 별도로 施設別 利用人口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입주와 동시에 利用되어야 하는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은 개별적으로 건설하는 것 보다는 開發主體가 일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시가지의 개발은 시가지 자체의 물리적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나 당해 도시의 구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다 더 중요하므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변 도시구조에 대한 조정과 도시계획이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法的·行政的 體系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라 파생되는 교통문제는 주변지역 뿐 아니라 전도시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차량의 증가 추세를 수용 할 수 있도록 가로폭원의 조정 및 접근등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단지별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노상주차로 인해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新市街地 開發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래 개발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며, 대규모 주택단지가 갖기 쉬운 획일적인 공간구성의 지양, 다양한 계층이 거주 할 수 있는 定住空間 형성, 광역 교통망체계 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적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신시가지의 개발은 시가지 자체의 물리적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나 당해 도시의 구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다 더 중요하므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변 도시구조에 대한 조정과 도시계획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법적·행정적 체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新市街地 建築을

點檢하며

상·중계지역의
주거부대시설 건축물을
중심으로

On 25. Story
Apartment Block and
Community Facilities
in Sanggye·Joonggye
Housing Development
in Northeastern Seoul



상·중계 단지를 찾아 “동1로”로 들어서다.

서울시 동·북부 개발축(도심-미아-수유-도봉-의정부)과 동부 개발축(도심-청량리-월계-하계-공릉) 사이에 위치한 면적 150만평의 “마들뽕야”에는 1985년 이래 현금까지 서울시의 서민 주택난 해소 및 새로운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목표아래 대단위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그간 본 대단위 단지로부터 도심을 향한 출퇴근 시간동안의 “교통전쟁”에 관하여서는 각종 언론매체에 익히 보도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新주거단지내에서의 주민의 삶을 결정짓는 주거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의 형편은 어떠한가?

단지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주거부대시설들은 대개, 주민전체의 만남의 광장으로 알려진 지역센터(예컨대 구·군민회관), 각종 학교,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각종 체육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청소년 여가이용시설, 노인센터, 근로 청소년 숙소, 주차시설 및 지역주민들이 먼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주거지역 근처에 위치한

산업시설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중계동의 경우 이들 주거부대시설중 학교의 경우, 아파트 입주후 서둘러 지은 학교때문에 야기된 3부제 1학급-90여명이라는 사실은 한때 각종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통하여 잘 알려진 바 있었으며, 원래 서울 도심부에서의 취업을 가정한 계획때문인지, 아니면 잘못 이해된 “잠자는 도시(소위 베드 타운)”개념에서 유래된 듯한 도시설계개념에 의한 주거만을 위한 단지계획으로 인한 산업시설의 부족에 관하여도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지금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앞에 보며, 기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의 현황을 맥 짚어 앞으로의 단지건설상의 참고가 되고자 하는 의도를 띤 이 글에서 필자는 아직 채 완성되지 아니한 주거단지의 현황에도 불구하고, 1)주요 아파트의 실례, 2)공공도서관, 3)학교 4)쇼핑센터, 5)의료·체육시설의 현장 탐방을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상·중계동 대규모 주거단지의 주거 및 “삶의 質”을 판단케하고자 한다.

서울 특별시립 중계도서관

1990년 5월 8일 개관한 대지 3,055㎡,

李瑞求
승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工學博士
by Lee, Sun - Koo

건평 3,287㎡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의 중계도서관은 열람좌석 1,110석에 장서 12,621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3만권을 목표로 하고있다.

5개의 열람실, 시청각실 및 주부교실을 포함하는 일반 열람실은 7시부터 21시까지 열고 있으며, 종합자료실, 간행물실, 어린이실 및 관외 대출실 등의 자료 열람실은 오후 6~7시까지 열고 있다.

본 도서관의 한경희관장에 따르면 서울시내 도서관중 18번째로 개관된 이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너무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보통 타지역의 경우 7,8개월이 걸려 관외대출회원이 천여명에 이르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달 반만에 1천명에 달하였으며, 2~3백명이 보통인 타도서관 주부교실이, 본 도서관의 경우 5백명을 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토·일요일이 없이(매월 2·4째 월요일만 휴무)연중무휴로 열고 있는 본 도서관의 주부 교실엔 22개 강좌(동양화, 서예, 꽃꽂이, 한문, 영어, 일본어 등)에 1,650인이 참여하고 있어 도서관 “열람과”가 “교무과”가 되었다고 한다.

주부교실이외에 전시실 및 시청각실의 운영 상황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서예, 미술, 사진, 시화, 꽃꽂이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시청각실은 각종 교양강좌, 음악감상 및 영화상영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금년 10월에 개최예정인 “가족 백일장”행사는 본 도서관 연중행사의 정점을 이룰 것이 예측된다.

본 도서관이 지역센터로서의 커다란 역할은 그간 이 도서관을 세번이나 다녀간 이 지역구 출신 김보 국회의원의 방문이 실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의 민주화가 기대되니만큼 도서관의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은 앞으로 전립될 신도시 건설에도 적극 권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인구 50만으로 추정되는(앞으로 예측인구 70~80만)인 상·중계 단지에 필요한 도서관의 수는 현 규모 도서관 크기의 도서관 20여개가 더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이 1.5km 이상을 걷지 않고도 인근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로는 이 지역도서관의 시범적내지 상징적 의미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며, 선진제국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그 숫자의 부족함의 심각성을 추측할 수 있다.



1단계 東2블럭 25층 고층아파트

매 층당 25평과 35평 두 유형 각 4세대씩 8세대로 총 190세대가 25층고의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다.

4단지내의 현시가 7천 5백만원에서 8천 5백만원을 호가하는 고층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 간의 단합이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

단지 관리인 오상현씨에 따르면 한 층내에 평수가 다른 아파트의 주민이 살 경우, 넓은 평수 아파트주민들과 좁은 평수 아파트주민들과의不和가 잦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좁은 평수의 아파트를 노인 부부나 신흥부부와 같은 2인 가족이 즐겨 이용케 되어 옆 세대의 4~5인 가족과 同層에 사이 좋게 지내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주거문화의 역사가 짧은



- ① 상중계지구의 축인 통일로
- ② 중계시립도서관 전경
- ③ 중계도서관 문화관
- ④ 도서관 입면도



6

사회계층간에 인간적 융화
도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간층내에 가능한
다양한 크기의 아파트가
설계·계획되어 평수의 배분의
균일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이상적인
국민이 우리의 평은 집합주거의 역사
를 소유를 과시코자 하는 현재의 풍조
덕분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색난스러운 겨울철
본 아파트의 고층 놀이·휴게공간을
관찰한 사람들에게
풍광하고 색채면 휴게공간의 경관은
고층아파트의 살벌함을
다욱 깊게한다.

우리나라에서 좀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에 평수의 경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대립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회계층간의 인간적 융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동일층내에 가능한 다양한 크기의 아파트가 설계·계획되어 평수의 획일화와 균일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이상적인 국민이 우리의 짧은 집합주거의 역사 및 소유를 과시코자하는 현재의 풍조덕분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 17, 18층에 마련된 “놀이터·휴게실”이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할 뿐더러 일년내에 잠깐채로 있을 또한 설계의도와 실제이용상의 괴리를 가장 절실히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휴게실을 원래 의도대로 사용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리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청소를 누가 할 것이냐?로부터 안전상의 관리까지 아직 주민간의 합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공동 유휴공간의 이용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공공정신의 바탕 위에 작용하는 집합주거 공동공간이, 그 정신이 결여된 우리나라 집합주거에서 작용하지 아니함은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이다. 물색난스러운 겨울철 본 아파트의 고층 놀이·휴게공간을 관찰한

사람들에게 횡랑한 폐쇄된 휴게공간의 경관은 고층아파트의 살벌함을 더욱 깊게 한다.

고층아파트에서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떠한가? 가장 큰 문제는 낡은 가구를 버리기가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정도가 나아짐에 따라 헌 가구를 가져가려는 사람 또한 적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선진제국의 경우처럼 1년에 수회씩 지정된 날에 가구를 住棟앞에 내놓게 하여 시장국의 청소부서 또는 가구업자로 하여금 집단수집케 하는 등의 조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일반 가정쓰레기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 아파트의 쓰레기 투척구의 아래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흩어지는 불결한 쓰레기 투척방식이 하루바빠 개선되어야 한다.

선진제국의 쓰레기 투척장의 맨 아래 지하층에는 투척장 기계장치와 아울러 일정용량의 쓰레기를 담은 이동

가능한—바퀴가 부착된—콘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쓰레기 처리시 콘테이너를 운반함으로써 위에서 던진 쓰레기가 아랫층 바닥에 떨어져 사방으로 분산되어 불결함과 악취가 아파트 아래층 주민들을 괴롭히는 현상을 없이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이외에도 고층아파트에 관한 논의는 소방시설, 범죄 및 심리적인 외로움 등의 사회문제에 관하여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데 이웃과의 접촉부족, 자연환경에 대한 무감각, 어린이들을 가진 세대의 경우, 소위 可視 내지 可聽거리가 멀어지므로 棟 밖에서 노는 아동들의 행방을 감지할 수 없게된다는 점등이다.

고층아파트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인구밀도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겨울철에 있어서의 최소한도의 일조시간을 감안한 이웃건물과의 넉넉한 거리와 휴식,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일정층고(대개의 경우 6층정도) 이상으로 건물의 층고가 높아지면, 주거밀도(보통 ha 당 인구수로 표시됨)는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물론 층고를 높일수록 세대수가 많아져 건축주측으로 보아 분양가구수를 많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앞서 지적한 주거환경상의 취약점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상수국민학교 와 당현국민학교

신도시내의 교육시설은 어떠한가?
 탁아소, 유치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市나 國가에서 직접관장하는 경우라기보다는 私立이나 종교단체에 의지하는 경우로서, 사회정의적 입장에서 부모의 수입정도에 따라 탁아소·유치원의 비용을 가감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탁아소·유치원의 기본시설 및 표준공간에 관한 규정제정 또한 시급하다고 하겠다.

부부 쌍방이 취업하는 서민층 주민들을 위한 生後 4개월부터 3세미만의 유아를 위한 시설, 유치원의 주축을 이루는 3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시설, 6세이상 15세미만의 기취학 아동 등을 부모의 歸家時까지 돌보며 숙제를 도와주는 등의 學校外 교육까지 전담할 수 있는 시설을 궁극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선진제국들의 유아교육시설상의 새로운 추세인 "유희 및 행동실"등의 도입은 어린이 시기에 벌써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능력을 길러 나중 원숙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행위"란 개념은 그림 그리기, 집짓기, 짜맞추기, 각종 학습 및 체험, 음악, 무용, 체조 등을 의미하는데, 어린이들은 이러한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행위를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사회적인 행위를 통하여 놀면서 배우는 것이 유아교육의 기본적인 국면이다. 이들 유희 및 행위실의 시설, 설비국면을 살펴 보면, 실제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놀이 부엌과 놀이 조리대가 기본시설로 설치되는데, 어린이의 신체치수에 걸맞게 제작된 부엌기구와 아동들로 하여금 부엌생활과 친근케하여 자립심과 남녀평등 사상을 공히 심어주고 있다.*

상계 7동 242번지 2호에 위치한 상수국민학교는 학생수 3,120인으로, 1988년 10월에 개교한 단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민학교이다.

본 학교의 특성은 新주거단지의 특성을 추측할 수 있듯이, 주변 지역의 복잡한 교통편과 잘 정비되지 아니한 환경에 비하여, 노인이 적은 핵가족 중심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부모의 학력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에 관한 학력격차가 심하고, 학교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들뜬 분위기이며, 요즘 아동들의 특성이 이곳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협동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반면 교직원들은 평균연령이 젊고(36.3세), 교육열의가 높으며, 신설교의 교풍과 전통을 세우기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열악한 구건물 국민학교에 비하여 가스난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 또한 깨끗한 교육 여건에 기여하는 바 크며, "상수방"으로 불리우는 교내 탁아원제도는 어린이를 가진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만들어진 교사를 위한 "건강실"은 선생님들을 위한 체력 단련실이며, "교사 개의실" 및 "제2교무실"의 설치에 종래의 한 개의 교실에 뻘뻘히 들어선 비좁고 답답한 국민학교 교무실의 폐쇄성을 다소나마 경감시킨 감을 주고 있다.

현재의 학생 인구구성은 피라미드 형상을 보이고 있다.

1학년이 12학급에 587인, 2학년이 12학급에 622인, 3학년이 11학급에 555인, 4학년이 10학급에 546인, 5학년이 9학급에 465인, 6학년이 7학급에 345인이다.

이같은 학급 구성상의 피라미드 형상은 개교시의 기존학교에서의 아동 인수와 점증하는 젊은 주민층 단지 구성인구를 감안하면 현재의 피라미드 형상에서

⑤ 동2블록 주공고층아파트 4단지 전경

⑥ 당현국민학교

⑦ 상수국민학교

이들 국민학교는 주민의 입주 후 시설들이 갖추어짐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⑤



⑦

- ③ 아파트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 ④ 인제대학부속 백병원
- ⑩ 상계근린공원
- ⑪ 근린공원 내의 노인정
- ⑫ 한신코아백화점 전경
- ⑬ 노원구민회관



장차正方形으로의 학생 인구구성이 기대된다.

현국의 학급당 인원 수는 61학급에 평균 51.2인이다. 1학년과 2학년은 아직도 2부제 수업을 시행중이며 남자 15인, 여자 45인 제 64인의 교사가 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 학교당 1,000인 이하의 학생들과 한 학급당 25~30인의 학생들을 1인 교사가 지도하는 선진국들의 교육형편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시설의 현황은 상·중계 지구뿐 아니라, 전국의 교육시설 형편이 통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의 교육시설 투자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당현국민학교의 경우

88년 4월 개교시 3부제 1학급 90인으로 언론에 떠들석하게 보도된 학교가 바로 이 학교이다.

현재 이 학교는 1, 3학년 각 9학급, 4, 5학년 각 8학급, 6학년 5학급 총 2,417명의 비교적 안정을 회복한 학교이다.

초기의 난로난방은 그간 가스히터로 도시가스화 연결되었으며, 급·배수 시설은 아직도 미흡한 편이다.

근처의 고층 아파트건물 덕분에 교내 TV 방송의 수신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현 48학급의 평균 학생수는 50인이다. 상수국민학교와 당현국민학교 두 학교를 통털어 볼 때, 양교 모두 서울시의 타 국민학교의 시설 수준에 도달한 것이 현상이며, 이들 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들은

오히려 개선된 새로운 학교 시설에 비교적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들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新거거단지를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이전에 교육시설을 완공하여서 다시는 상·중계동 단지에서와 같이 주민 입주후 아직 세워지지 아니한 학교 때문에 겪는 고난을 겪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쇼핑센터, 의료·체육시설 및 노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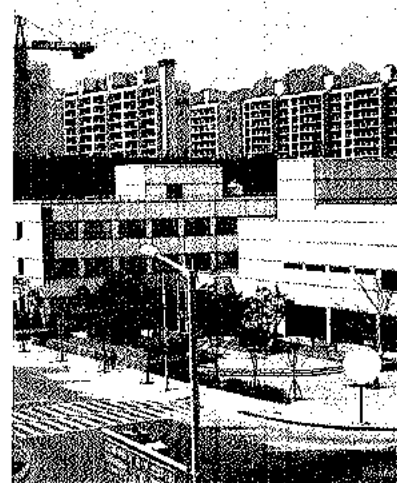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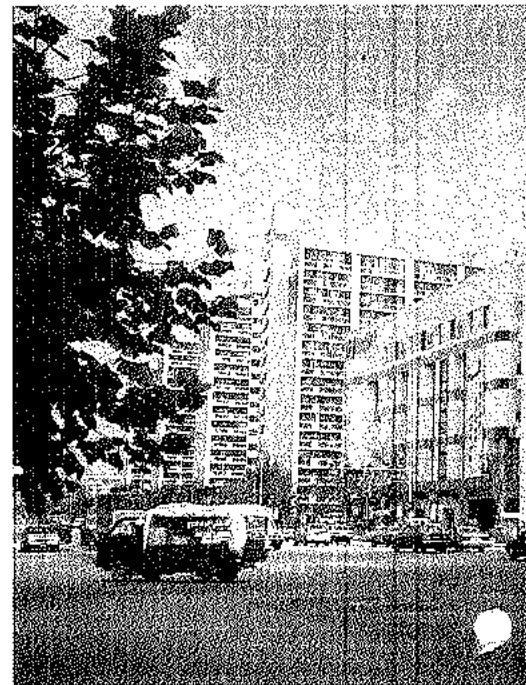
단지를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동일로 양편을 따라 街路像을 이루는 개별 상점들과 더불어 주공4단지 건너편에 위치한 “한신코아백화점”이 이 지역내의 가장 규모가 큰 백화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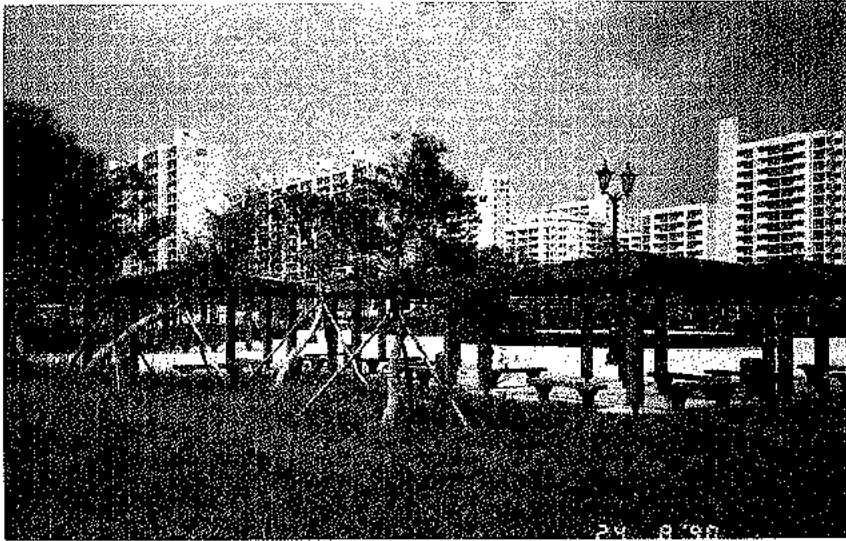
그 규모는 강남의 본점을 축소해 놓은 것으로서 지하의 식품부로부터 맨 위층의 음식점, 문화제실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고객층(중산층)을 대상으로 삼는 백화점이다.

이웃한 중랑병원인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은 개원한지 꼭 1년이 되는 450병상규모의 비교적 청결한 병원으로, 도심부의 대규모 대학부속병원들에 비하여 입원을 위한 대기시간은 비교적 근소하다고 한다.

단지내 드문드문 위치한 노인을 위한 시설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관리실”의 표준공간을 갖춘 이들 노인정에는 더운 여름 날씨를 피하여 온 남녀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거나, 소주를 마시고 있는 정경을 볼 수 있다.

근처의 어린이놀이터에서 손자의 그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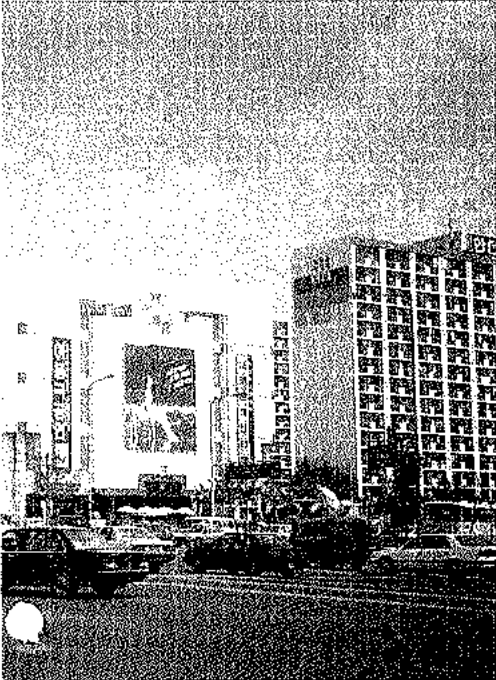




⑩



⑪



⑫



⑬

밀고 있는 어느 할머니는 “아파트생활이 답답하지 아니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만족스럽다”고 대답하였다가, “시골생활에 비하여 답답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초·중년의 부인들은 새벽 4시면 일어난다는 시부모의 “부지람”을 타하는 경우도 있어, 3세대가 비교적 좁은 아파트 안에서 보내야 하는 일상생활의 어려운 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90년 7월에 개장한 상계 근린공원 사회체육센터 수영장엔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다.

50만 단지를 위한 주먹구주식의 옥의 수영장 수만 계산하여도 적어도 10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표준이다. 온·냉수 샤워시설, 탈의실을 갖춘 현대적인 옥·내의 수영장의 건립은 신도시 주거단지 건설시 반드시 세워져야 할 단지주민의 정신건강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임을 잊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상·중계동 대단위 주거단지의 25층 아파트, 도서관, 두개의 국민학교, 쇼핑센터, 종합병원 등의 주거 부대시설들을 통하여 아직 건설이 끝나지 아니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의 편모를 볼 수 있었다.

이들 돌아본 시설들이 선진제국에서 관행으로 간주되는 기본시설들에 비하여 너무나도 먼 형편에 처하여 있음을 아래의 중요한 공공 주거 부대시설의 표준과 비교함으로써 더욱더 분명해 진다고 말할 수 있다.

갖추어야만 되는 주요 주거부대시설들

유치원

최소 대상인구 2천인,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의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은 2%, 그룹크기 아동 20인, 2~3 그룹실을 갖춘 소규모 유치원을 위한
대지면적: 1,500~2,000㎡, 주거로부터 5분내의 보행거리 또는 300m 이내에 위치할 것

탁아소(학령아를 위한 시설)

최소 대상인구 규모 5천인, 7분 또는 500m 보도거리

청소년 여가선용루

최소 대상인구 규모: 1만~1만8천인, 20분 또는 1,300m 보행거리.

노인클럽

최소 대상인구 규모: 2만5천인, 가장 가까운 공공교통시설 정류장까지의 보행거리 300m

양로원

대상인구 규모 9천인, 대지 크기 1ha, 정류장까지의 거리 300m

병원

최소 서비스 권역 5km거리,
정규 서비스 권역 20km거리,
최대 서비스 권역 75~100km거리,

시민회관

약 3천인부터 필요, 대지면적 4,000~6,000㎡, 15분내지 1,000m 보행거리

실내체육관

원칙적으로 국민학교마다 병설되어야 함, 2,000㎡ 대지면적에 10분 또는 700m 보행거리,

대형 체육관은 인구 2만5천인, 대지면적 3,000㎡, 15분 또는 1,000m 보행거리
실내수영장

3만인 단위, 6,000㎡ 대지면적, 공공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10분거리

경찰서

인구 6천인 단위, 대지면적 400㎡

소방서

인구 2천인 (자원 소방대의 경우), 인구 1십만인 단위(직업 소방대), 대지 8,000㎡

우체국

인구 1만인, 대지 3,000㎡, 거리 2km

공공도서관

인구 2만인, 대지 2,000㎡, 1.5km거리,

이상의 기본적인 주거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은 선진제국들에서 이미 그 효율적인 이용이 증명된 교과서적 수치로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장래의 주거단지 부대시설 계획시에 달성하여야 되는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수치들이다.

시민회관, 구민회관 또는 지역사회센터 등으로 불리우는 여가선용 屋에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일반성인을 위한 여가선용 및 평생교육을 위한 諸室을 갖추게 되며, 노인클럽등에선 노인들에게 도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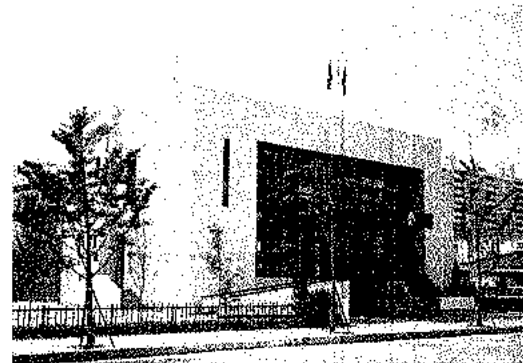
서예, 체육 등 적극적인 행위에 가담토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독자 여러분들은 80년 중반에 계획되어 90년 초까지에 거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現 50만인을 위한 서울 동·북부의 신 주거단지 상·중계동의 편모를 주거단지 및 그 부대시설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의 주거단지 형편을 앞서가고 있는 선진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 부족함의 심각함을 주거棟 간의 좁은 인동거리로 인한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의 결여에서 우선 발견할 수 있고, 이미 高層시대를 넘어 저층(보통 6층규모)으로 가능한 녹지와 어린이 놀이터인 中庭내지 중앙의 넓직한(100~200m거리)광장을 중심으로 대화와 만남을 위한, 자동차로부터 해방된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된 선진제국들의 집합 주거단지와와의 대조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산업화·공업화를 동반한 현대적 의미의 주거단지의 역사가 이제 약 20여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현재 형편이 공업화 과정이 터를 잡은 1920년대의 서구제국의 대도시 집합주거단지의 형편과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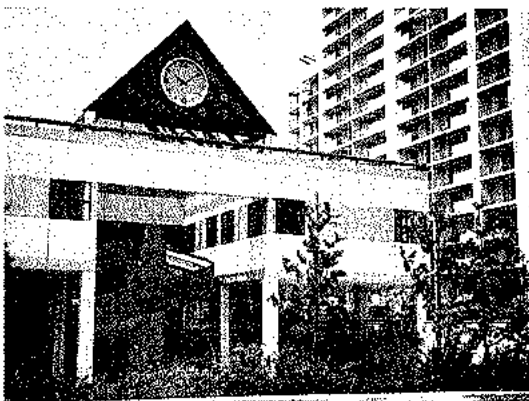
- ⑭ 지구내 동사무소 전경
- ⑮ 아직도 공사중인 당현중학교 전경
- ⑯ 단지내 근린 상가
유치원등 편의시설이 위치한다.
- ⑰ 아파트단지내 근린시설
상업, 업무 복합용도의 시설물이다.



⑭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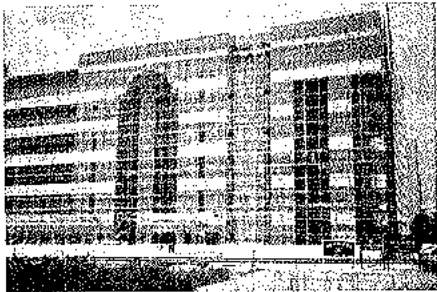


⑯



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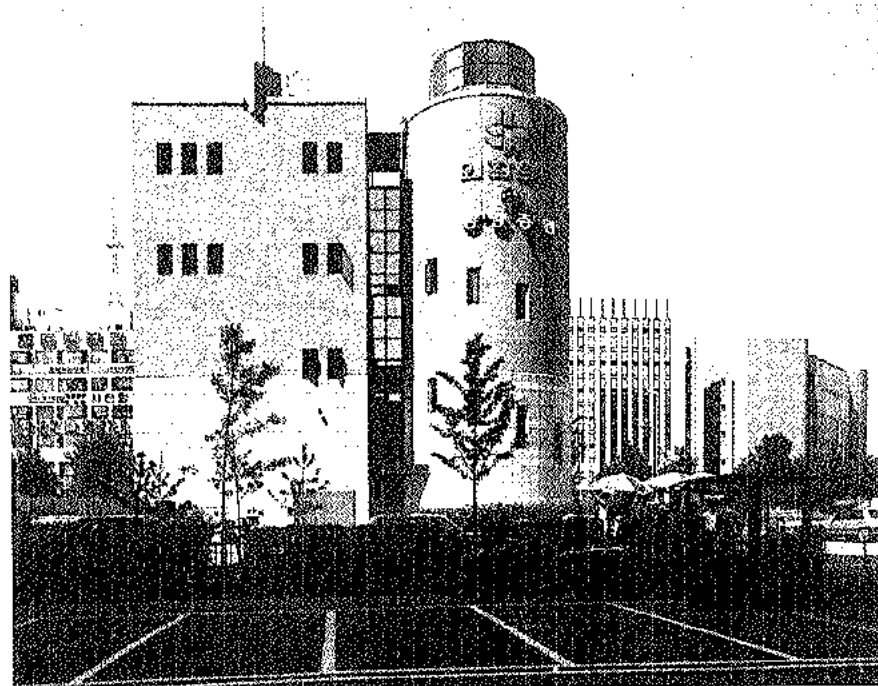
- ⑬ 마무리 공사중인 성 모자병원
- ⑭ 주거부대시설의 설치에 등한시 한채 건립되어지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 ⑮ 상계지구 상업지구 건축물군
- ⑯ 조흥은행 상계지점



⑬



⑭



⑮

건축 또는 도시의 형편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 문화전반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한다.

우리의 도시와 건축의 형편 또 주거단지의 형편이 공업화 과정을 뒤로한 1920년대의 유럽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자존심을 너무나 자극시키는 발언일까?

한 나라 한 사회의 역사는 어느 과정을 뛰어넘어 빨리 달릴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어제의 권위주의적 정부·정권을 거쳐 오늘의 민주사회로 향하고 있는 실례를 우리는 서양의 스페인과 오늘의 우리나라에서 체험하고 있다.

아무리 무능한 우리의 정치인들을 나누라고, 시야가 좁고 주장이 없는 동료건축인을 비난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차근 차근히 미래의 큰 목표를 세운 후 참음성을 가지고 한발씩 한발씩 내다보는 자세야말로 우리의 주거단지를 모범적으로 건설하는 첫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의 상·중계동 단지를 개관하면서 얻은 결론은, 집없는 서민에게 지분을 어느정도 마련해 주었다는 위안감과 함께 주거부대시설 중의 극소수 일부뿐이나마,

시범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하겠으며, 현재의 상·중계동의 주거단지형편이 결국 우리나라 도시설계·계획상의 지식 및 경험의 산물이라는 점과 더불어, 현재 세워지고 있거나 앞으로 세워질 도시건설에 있어서, 이윤추구만을 그 극대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象智를 모으며, “密室計劃” 대신 보다 많은 관계분야 사람들이 결정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명실공히 민주적인 계획과정을 거치므로써, 졸속한 장래의 “슬런” 계획대신 後代들이 그곳에서 즐겨살고 싶은 모범적 주거단지를 건설해야 될 것이라는 점이 필자의 소견이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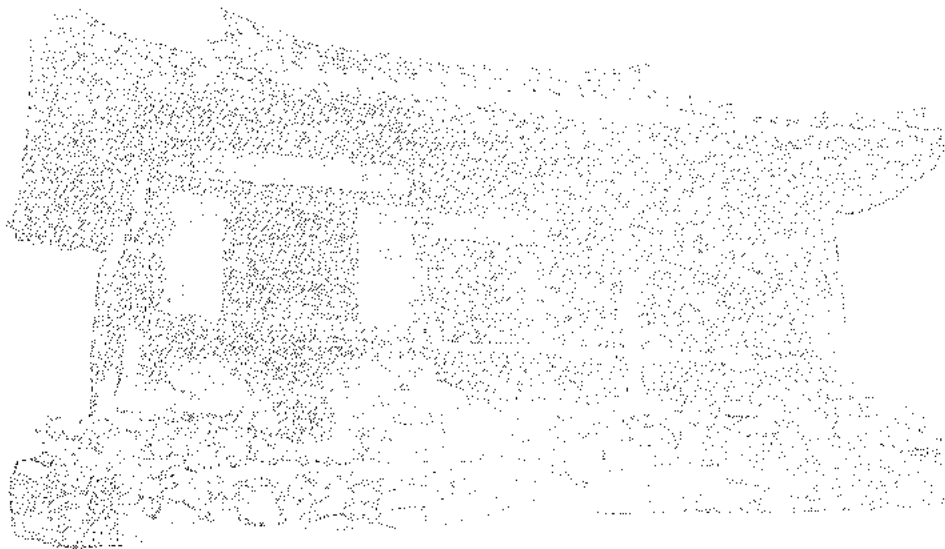
1. “상계·방학동「출퇴근 전쟁」갈수록 극심”, 조선일보 1989.8.30, P17
2. 고층 아파트의 주거환경문제에 관한 일련의 기획기사 “신도시 문제없나—일산·분당 중심으로 보면”, 한국일보 1990.5.16 P5 이후 참조
3. 이선구, “교육학적 유아교육 시설에 관한 건축설계·계획상의 연구”, 숭실대 대학원 논문집 제7집 별책 1989. pp.207-233 참조



⑯

亭子建築의 實例와 현대적인 응용요소

Example of Arbour Architecture and
It's Contemporary Application



7. 善山郡 枕澗亭

1. 연혁 및 배치

침간정은 원래는 安東郡 臨東面 朴谷洞의 산간마을에 위치하였었다. 안동군의 임하면 건설로 수물지구에 포함되었으므로 선산군 海平面 一善里로 三杓亭을 포함한 건물군을 이전한 것이다. 87년 11월에 이전공사를 착수하여 이듬해 유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전공사 후의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전지의 주변환경과 현재의 모습은 살펴보기 못하였지만, 원래의 부지환경을 재현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므로 이전하기 전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궁궐의 정자건축과는 다른 민간의 정자건물을 대상으로 특징을 검토하고 몇가지의 응용요소를 살펴본다. 다만 여기에서 수록한 사진은 1981년 2월에 촬영한 것이며, 보수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으로 창호도 탈락되거나 제거되는

등으로 그 당시에도 퇴락한 시기의 것임을 밝혀둔다.

이 건물은 주택의 正寢과 사랑채 및 행랑채가 일군을 형성하고, 그 외곽으로 남측에는 別堂이 독립해 있어 마을의 큰사랑채 역할을 하는 건물이 있었고, 다시 그 동측으로 침간정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터에 건물을 세운시기를 현재의 소유자인 柳奭基씨는 9代祖인 儒窩 柳升鉉公(1680~1746)이 숙종36년(1710)에 건립한 것으로 문중에서 전하고 있다. 침간정이 이 시기에 건립되었는지는 불확실하며 또 얼마나 변형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하여간 文翰의 家風을 이어받아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던 용와公의 遺著로 儒窩集이 있으며 선비의 가풍과 생활상이 건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남향으로 자리잡은 정자의 바로 뒷편으로는 수목이 총총한 가파른 언덕이 있고 앞쪽으로는 지형의 경사를 따라 형성한 층단이 진 마당과 그 앞으로 소로와 그 남쪽으로 개울이 흐르고 있다. 아름다운 경치는 아니지만 산·바위·수목·개울이 어우러진 소박한 산간의 정경 속에 정자를 배치한 것이다.

2.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정면3칸에 측면2칸의 6칸집으로 홀처마 남도리의 5량 팔작지붕 구조로서 막돌로 가단을 돌린 10.3평 규모의 건물이다. 서편의 두칸이 큰 온돌방이고 중앙부에는 작은 온돌방 한칸과 마루가 있고 동편의 두칸이 대청으로 구성되었다.

주거건축의 평면형식 분류로는 측면이 두칸으로 구성된 집을 곁집(양통집 또는 여칸집이라고도 한다)이라 하는데 침간정도 이와 유사한 형태이며 중앙칸의 온돌방을 넓히기 위해서 중앙의 기둥이 앞으로 내밀어져 있다.

이 건물의 평면과 유사한 것으로는 영덕군에 있는 葛川洞까치구멍집이 있다. 좌측에 방2칸, 중앙에 방과 마루, 우측에 부엌과 외양간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건물의 평면에서 부엌과 외양간을 대청으로 바꾸고 중앙의 기둥을 전면으로 내밀면 침간정의 평면이 구성된다. 이와같은 곁집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산간지방에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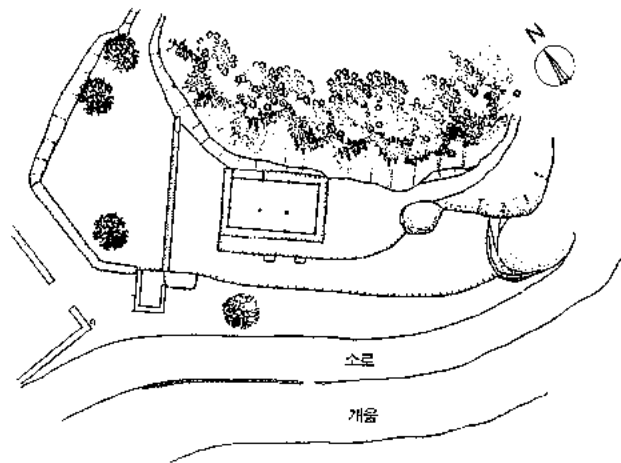


정자건축에서도 이런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건축의 역사성을, 유사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변화한다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면의 간살은 정면 중앙칸이 2.35m, 좌우측칸이 각각 2.7m이고 측면이 2.2m씩 두칸이 되나 온돌방쪽은 중앙기둥을 0.45m 앞으로 내밀어 방을 넓혔다.

평면규모에 대한 부재의 치수를 살펴보면 기둥은 6치각에 높이는 8자반 정도이고 대청마루 위에서는 7자가 된다. 도리는 6치에 7치각, 장여는 3치에 5치각, 서까래는 직경 4치에 처마길이 3자반으로 구성하였다.

창호는 온돌방 정면에 새살문 두짝씩을 설치하고, 서측면에는 새살창 두짝과 한짝을, 동측면에는 판문 두짝씩을 설치하였고 판문좌우로는 판벽으로 구성하였다. 대청의 북측면과 동측면 1칸에는 머름중방위로 판문과 판벽을 두었다. 온돌방 사이로는 궁편이 있는 새살분합문 두짝을, 작은 온돌방과 대청사이에는 4짝의 새살분합문을 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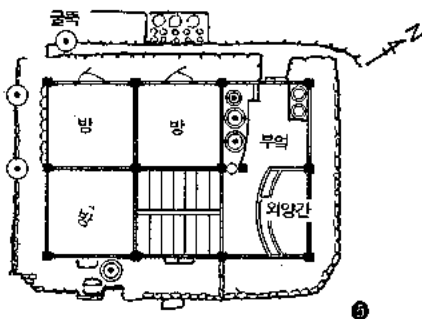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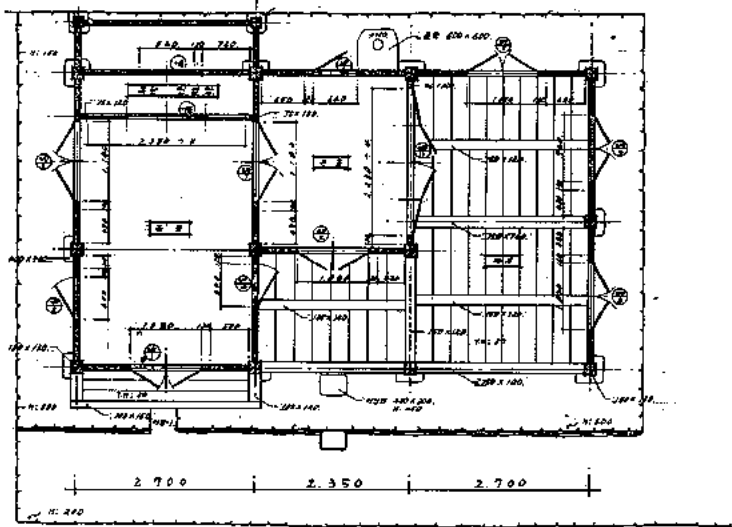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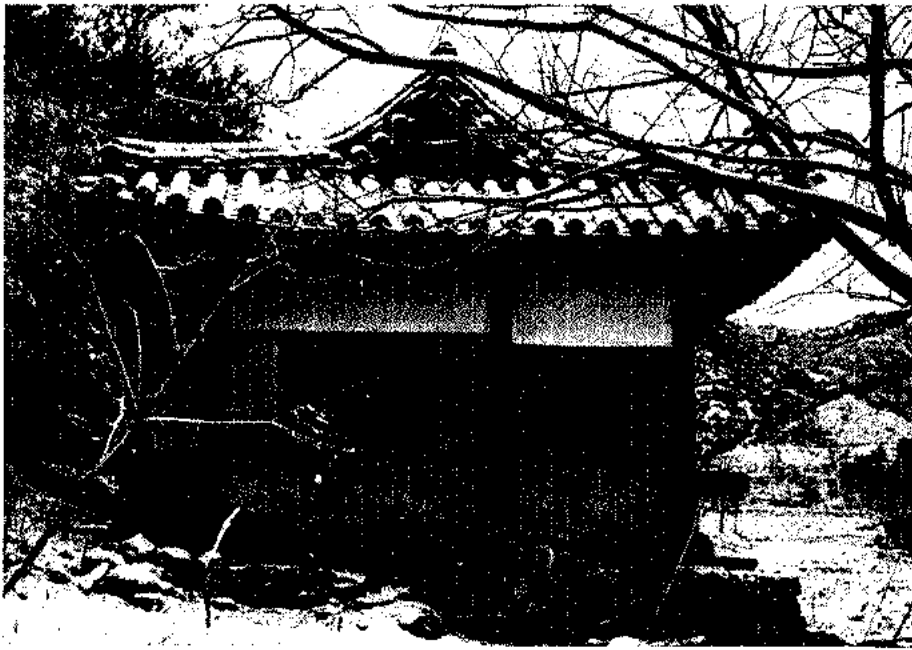


필요할 때는 대청쪽으로 개방하여 통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돌방의 아궁은 정면의 퇴마루 밑에 설치하고 굴뚝은 배면 중앙칸 부분에 얹으막하게 설치하였다.

큰 온돌방의 북측에는 퇴벽장을 돌출시켰는데 하인방 높이로 널판을 깔고

- ① 침간정 정면
- ② 배치도



주택에서는 고미반자위를 다락으로 꾸며 집기를 수장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나 이 건물은 살림집이 아니므로 고미다락은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고미반자위의 지붕속은 합각벽의 공간을 통해 환기가 되도록 하였다.

3. 건물의 특징과 응용요소

정자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좌향설정을 주변 경치의 조망이 좋은 방향으로 하게 된다. 침간정에서도 남쪽이 넓게 트인 방향이나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서남향으로 자리잡은 것은 산기슭의 협소한 터에 건물을 세우게 된 대지조건 때문인 것이다. 즉 지형의 경사에 따라 정자 앞의 마당을 정리하기 위해서 막돌석축을 두단으로 구성하고 상단의 석축 서편은 건물의 기단과 합쳐진다. 건물과 주변환경의 형국을 보면 마치 천연적으로 마련된 환경에 건물을 세움으로써 분위기가 완성되는 듯한 자연스러운 인상을 주고 있다. 이 특징은 근래에 세워진 정자들이 돌출된 곳이나 언덕의 정상부에 대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지으면서 환경의 스카이라인을 단절시키고 어색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예가 적지않게 있는 점과도 관련하여 배치계획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정자자체를 조형적인 감상의 대상으로서 작은 언덕의 정상에 세우는 경우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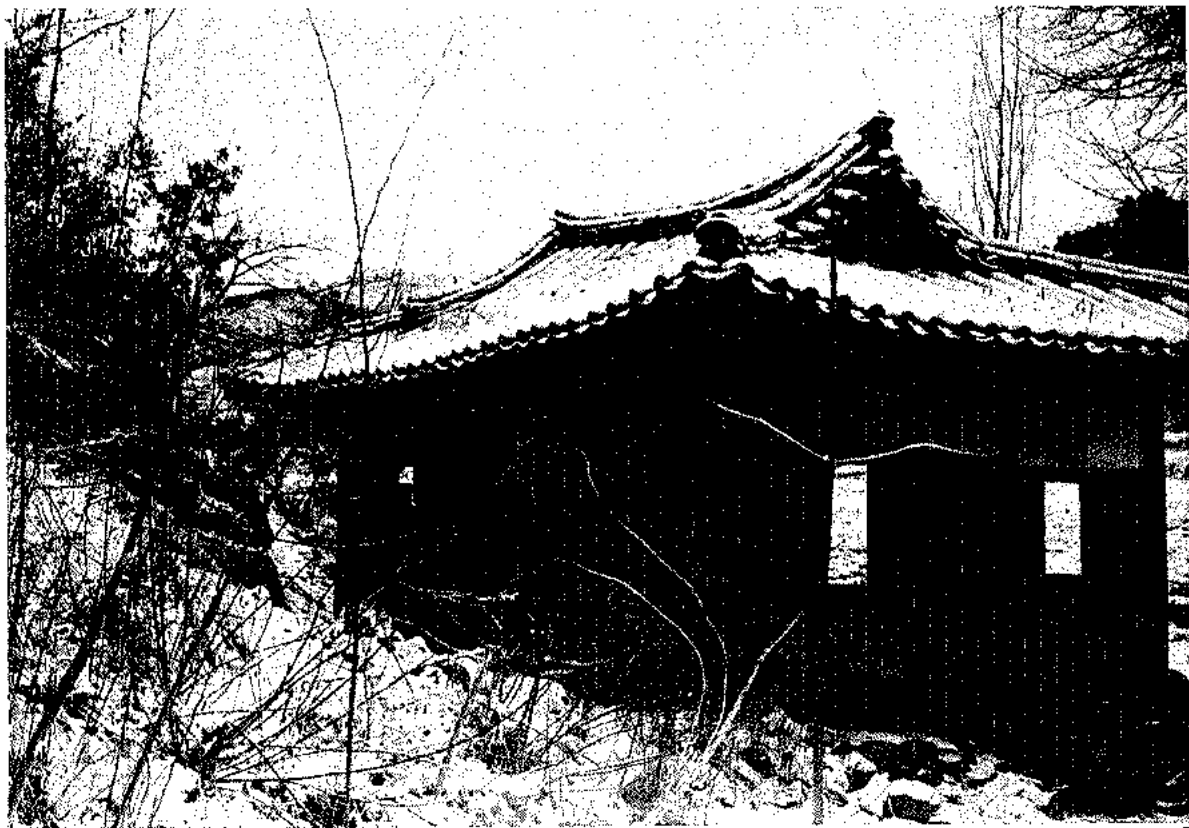
둘째로는 건물의 구성을 살림집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용도면에서 단순한 휴식처로 사용되는 뿐만 아니라 선비들이 한적하게 글공부도 할 수 있도록 별당채의 품격으로 세워진 점이다. 이것은 물론 주택에 소속된 정자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선비적인 기풍이 깃들어 있는 점이기도 하다. 대청에 걸린 寄傲軒, 枕澗亭, 懋窩吟 등의 편액이 그런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산골마을을 폐쇄하고 누워 자연을 읊으며 살고 싶어하는 옛선비들의 이상향을 건물로서는 이와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자건물에 주거기능이 추가되면서 방의 구성에서도 지역의 기후환경에 적합하도록 배려하였다. 동쪽에는 큰 창문을 달고, 서측에는 작은 창을 내고, 고미반자를 설치하고, 남측은 개방하는 등으로 日照와

그하부는 개방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후대에 증설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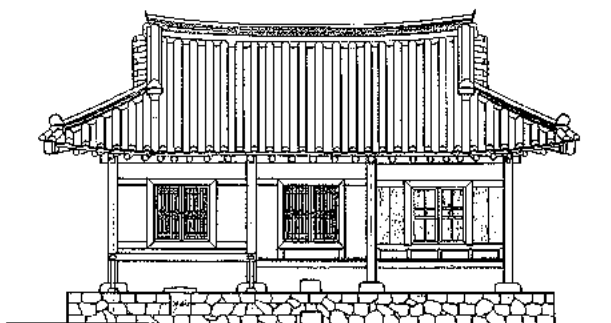
대청의 기틀은 1.1m 간격으로 비교적 넓게 배치된 모습이고 대청의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이나 중도리 사이로만 우물반자로 꾸미고 있다.

온돌방의 천장에는 6치각의 고미보를 걸고 2치에 2치반 각의 고미가락을 걸친다음 의류기 위에 보토로 마감한 고미반자를 구성하였다. 고미반자는 산간이나 북부지방에서 출거나 더운 환경에서 건물내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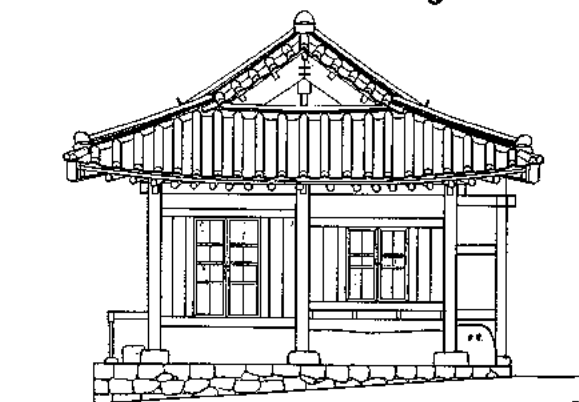


- ⑤ 침간정 좌측면
- ⑥ 평면도
- ⑦ 鶴川洞초가
까치구멍집 평면도
- ⑧ 침간정 좌측배면
전경
- ⑨ 정면도
- ⑩ 배면도
- ⑪ 우측면도
- ⑫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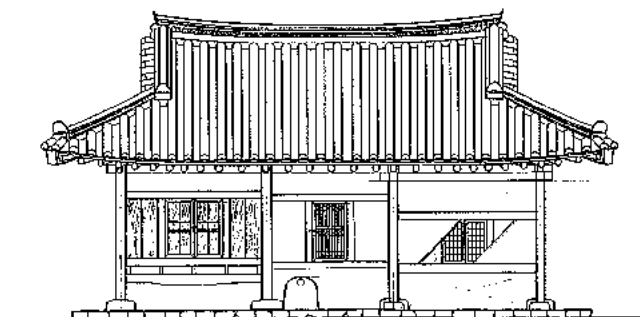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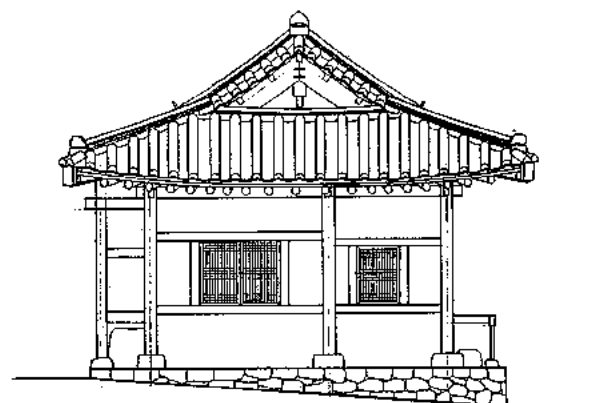
⑦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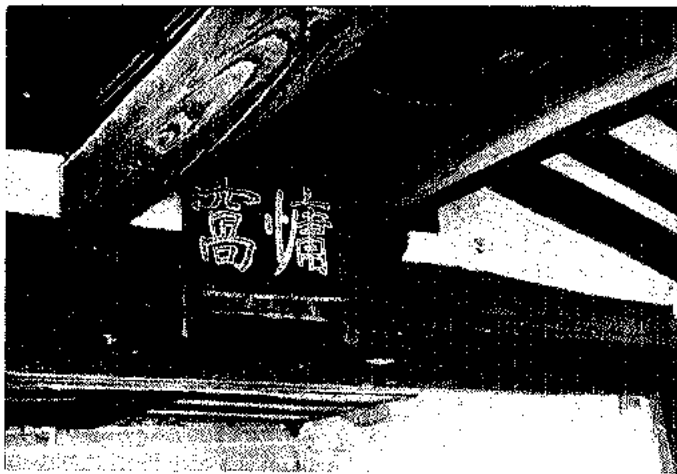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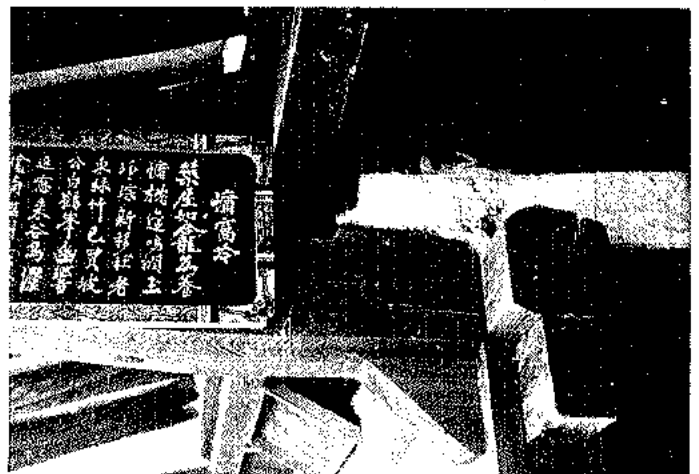
⑩



15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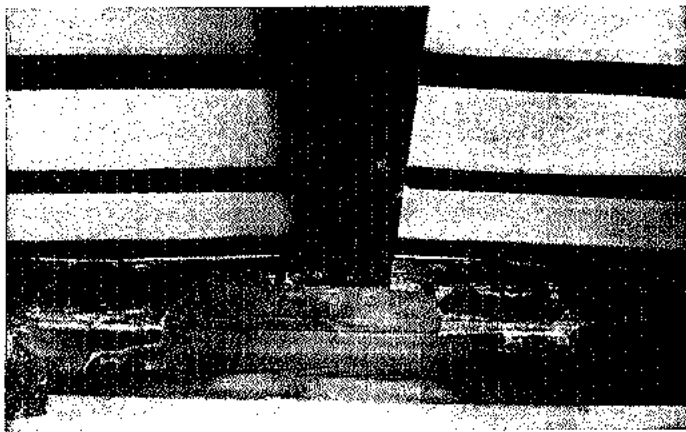
기온의 변화에 적응되도록 하였다. 건물사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자연의 기후변화에 건물자체로 적응시키는 이런 지혜를 현대건축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인다면 더욱 관리하기에 편리한 건물이 될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대부분의 민간건축이 그러하듯이 별다른 치장이 없이 소박한 구성이면서 창호와 벽체의 조화에 따라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막돌을 사용한 기단과 넓적한 돌을 그대로 사용한 덩벙주초, 자반의 경사에 따라 뒤틀린 기둥은 짧고 전면의

기둥은 길게 사용하고 있으며, 대청의 귀틀도 등성등성 설치하여 장마루에 가까운 귀틀마루를 구성하고 처마의 곡선도 약하게 잡아 추녀가 우람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다만 이 건물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창호와 벽체구성인 것이다.

온돌방은 토벽에 상하인방의 높이와 창호의 규격이 다르고, 대청부분은 판벽에 판문을 사용하면서 머름중방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으며 판벽의 상부벽은 역시 토벽으로 처리하고 있다. 모두 6칸뿐인 건물에서 세살문과 판문의 두종류 창호로 이처럼 다양하게 구성하는 이유를 현대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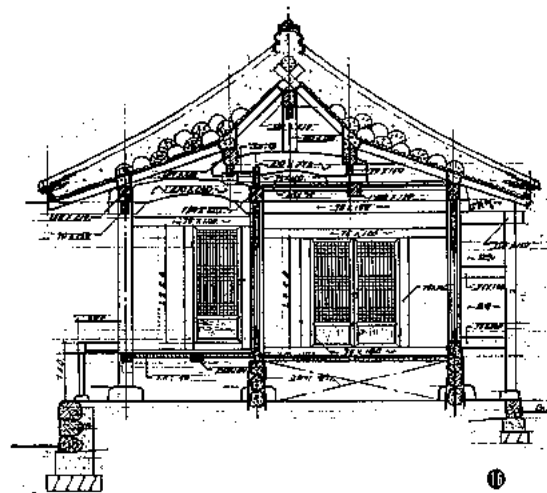
개념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간단히 생각하자면 건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벽과 개구부의 면적비례를 조화시키려는 심리적인 요구사항을 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창문하인방의 높이는 방에 앉아서 창에 기대 앉거나 내다보기 좋은 높이로 하고, 상인방의 높이는 벽체의 크기에 따라서 두쪽문에서는 높게하고 외쪽문에서는 낮춤으로써 벽면적과 개구부의 면적비례를 조정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실내공간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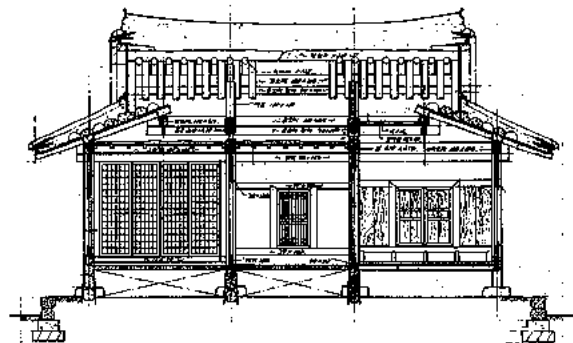
14



15



16



17

그렇게 본다면 실내환경에서의 심리적인 비례구성은 현대건축에서도 놓치기 쉬운 점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변화는 통일된 외관으로 구성하려는 건축계획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피하는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건물이라면 외관적인 모습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실내에서의 건물사용자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비례구성이라면 외관적으로도 수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응용해 볼 만한 요소라 하겠다.

이 건물에서의 벽체와 창호의 비례구성으로는 대체적으로 기둥 중심간 거리의 $\frac{1}{2}$ 내외로 개구부의 폭을 설정하였고, 벽높이의 $\frac{1}{2}$ 정도를 창호의 높이로 잡았으며 창문 상부의 벽높이와 하부의 벽높이 비율은 4:5 정도로 구성되었다. 정상적인 출입문에서는 높이 구성비례는 약간 다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구부 면적은 벽면적의 $\frac{1}{4}$ 정도가 되고 있다.

또한 실내에서는 벽높이 2.1m에 문인방 높이 35cm, 창높이 1.1m, 도리맡까지의 상부벽 높이가 0.65m 정도이므로 역시 창호높이는 벽높이의 $\frac{1}{2}$ 에 근사하게 된다. 그런데 문인방 높이와 창문의 높이를 합하면 1.45m로 출입할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드나들어야 하며, 이 점은 창과 문의 구분이 명확치 않다는 때문에 자유롭게 구성되는 이유기도 한 것이며, 서서 움직일 때 보다는 앉아서 내다보기에 편리한 비례구성이라 하겠다.

벽의 길이와 높이에 대한 개구부의 비례가 $\frac{1}{2}$ 이라는 수치는 한옥에서 창호설정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단순한 비례이지만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비례로서 주간의 변화에 따라 침간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비례인 것이다.

다만 현대건축에서는 좌식과 입식이 혼용되고 특히 업무시설에서는 입식위주로 계획되고 있으므로 실의 용도에 따라 벽에 대한 창호의 비례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4 침간정 우측면

15 대청상부

좌측의 우미랑과 우측의 중도리 장혀 사이로 소림반지와 건축주의 호를 새긴 편액이 보인다.

16 대청의 가구 구조

중앙기둥 머리에서 보가 함보되고 보 위로 주도형태로 중도리와 종보를 받고 있다.

17 고미반자

중앙에 세로로 지나는 고미보가 있고 그 좌우로 고미가락이 걸쳐져 있다.

18 기둥과 초석

평평한 자연석을 별도의 가공없이 설치하고 그 위로 기둥의 하단을 석재에 요철에 따라 그림이질하여 세우는 덩방주초 수법이다.

19 종단면도

20 횡단면도

이 건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명성이 높은 정자건축은 아니지만 지역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자체로서의 개성을 지니고 있는 건물이라는 점이다. 한국적인 현대건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와같은 한국적인 특징과 건물자체의 개성을 어떻게 살리는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建築士の 單獨住宅 設計傾向

—建築士誌の 設計作品을 中心으로—

Design Trends of Detached Houses by Architects

‘건축사’誌를 통하여 소개되는 주택작품들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통해서 그때 그때의 사회적 배경을 진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릇 주택이란 당대의 법적·제도적·기술적 환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한 수단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1. 서론

‘대한건축사협회’는 창립이후 지금까지 기관지인 ‘건축사’지를 통하여 거의 매호마다 회원들의 ‘대표적’인 주택작품들을 몇예씩 소개해오고 있다. 이 기관지를 통해서 소개되는 주택(단독주택)들은 그것이 어떤 선별과정을 거쳐 대표(게재)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이들 소개된 주택작품(이하 작품주택이라 한다)들을 통시적으로 들여다 봄으로써 건축사들의 주거건축에 대한 설계경향이나 태도 뿐만 아니라 건축주들의 설계에 대한 요구성향까지도 대체적으로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작품주택’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통해서 그때 그때의 사회적 배경을 진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릇 주택이란 당대의 법적·제도적·기술적환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한 수단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우리나라 건축가들의 주거건축에 대한 설계태도의 일단을 그들의 작품주택의 평면을 통해서 파악하여 앞으로의 주택설계 일반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의 선정과 성격

조사는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간구분과 일치시켜 기간별 50예씩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그림 1, 2] 및 [그림 3]은 제2기

(1967~71)에서 제5기(1982~86)까지의 작품주택의 규모(연면적)분포의 시대적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제2기에서는 40평에서 100평사이에 주로 치우쳐 분포되다가 제3기(1972~76)에 와서는 1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60~80평이 오히려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제4기(1977~81)에 들어와서는 더욱 움츠러 들어 40~60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²⁾

조사대상주택 185예의 연면적분포는 40평(132㎡)에서 100평(331㎡)까지가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소 33평(110㎡)에서 최대 168평(55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³⁾

또 185예중 1층 면적 표시가 안된 56예를 제외한 129예를 대상으로 1층 건평 분포를 보면 20~50평 84.5%로서 평균 38평(124.2㎡, 최소65㎡~최소270㎡)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185예)주택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수는 5~6개가 62.2%로 가장 많으며, 7개가 16.8%, 4개, 8개가 각 8.1%를 차지하여, 평균 방수는 5.83개(3~9개분포)이다.

3. 평면의 특징

1. 각실의 위치층

전체 조사대상중 94.6%로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층주택 가운데 현관이 1층에 위치하는 173예를 대상으로 보면 주침실인 안방은 78.6%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金鍾仁 + 嚴仁燮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Zong-in & Eom, In - Sup

1층에 거실을 두는 경우는 90.2%이며, 거실이 2개 있는 경우(52예)는 주거실(두개의 거실이 있는 경우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안방이 위치하는 층의 거실을 주거실로 봄)이 1층에 있고 부거실이 2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96.2%이다. 또 안방과 거실이 같은 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78%를 차지하고 있다[표 2참조].

‘가족실’을 두고 있는 경우(38예) 1층에 42.1%, 2층에 52.6%를 각각 두고 있다.

‘응접실’을 두고 있는 경우(21예) 71.4%가 1층에, ‘서재’를 두고 있는 경우(41예) 1층과 2층에 각각 31.7%와 53.6%로 이를 두며, ‘객실’의 경우(14예)85.7%가 1층에 두고 있다.

이상에서 안방을 위시하여 주거실, 응접실, 객실은 주로 1층에, 부거실, 가족실,

서재는 주로 2층에 위치하여 각각 외향, 내향의 정도를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바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한편 안방이 1층이외의 층에 위치하는 경우(37예) 같은 1층에는 부엌(및 식당)이 91.9%, 주거실이 75.7%, 가족실이 42.9%, 응접실이 57.1%로 분포되어 있으며, 방은 평균 2.19개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2. 실규모의 경년변화

1) 거실

평면도상에 거실로 기재된 실만을 대상으로 보면, 거실이 2개 있는 경우(52예)와 거실을 두고 있지 않은 2예를 포함한 평균 거실수는 1.27개이다[표 3].

거실규모는 전반적으로 30㎡ 정도를 2기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전체주택규모에

대한 구성비는 3,4기에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5기에 와서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성비의 전체평균은 12.7%이고(최저5.1%~최고33.3%)67.0% (124/185예)가 7~15%에 집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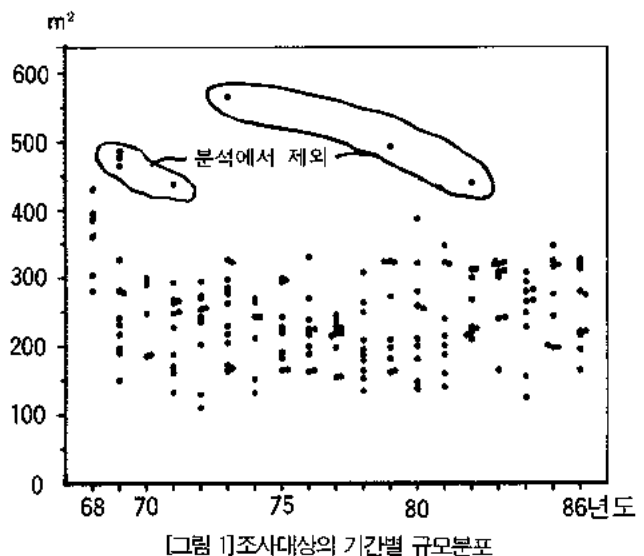
[그림 5, 6참조]

2) 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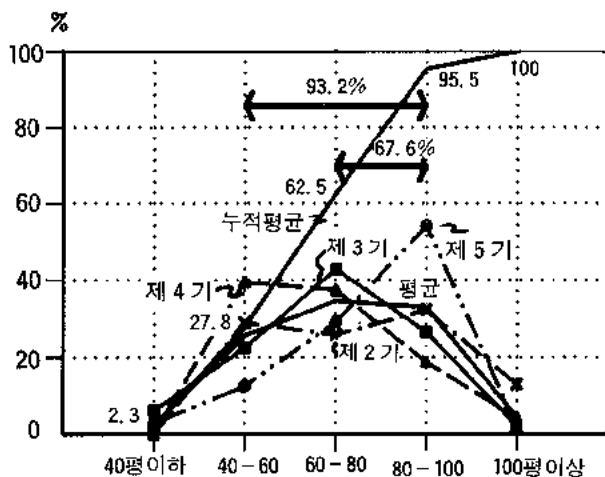
‘안방’명칭의 실외에도 ‘부부침실’ 명칭의 실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는 28.2%(54예)나 된다. 이러한 경향은 3,4기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4기에서는 34%나 되고 있다[표 4참조]. 이것을 안방만 두고 있는 경우와 여기에 부부침실을 추가로 두는 경우와를 연면적과의 관계면에서 비교하면 전자는 9.6%, 후자는 8.4%로서 전자가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다. 연면적에 대한 비율분포는 최저4.0%~최고19.9%로서

년 도	조사대상(예)	비 고
1962~1966	0	제1기
1967~1971	35	제2기
1972~1976	50	제3기
1977~1981	50	제4기
1982~1986	50	제5기
계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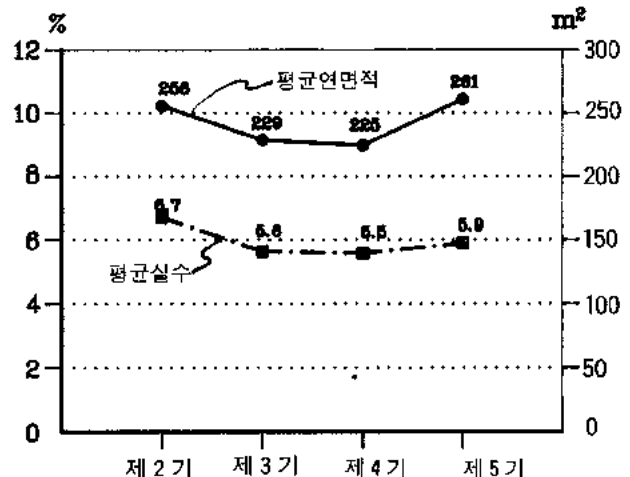
[표1] 조사대상의 기별분포



[그림 1] 조사대상의 기간별 규모분포



[그림 2] 기별 평균연면적 및 평균실수의 추이



[그림 3] 기별 작품주택의 규모추이

거실 안방	1 층	2 층	중 층	계
거실이 없는경우	2 100.00 1.48	0 0.00 0.00	0 0.00 0.00	2 100 1.16
1층	127 82.05 94.08	22 14.10 81.48	7 4.44 63.64	156 100 90.17
2층	2 40.00 1.48	3 60.00 11.11	0 0.00 0.00	5 100 3.47
중2층	4 40.00 2.96	2 20.00 7.41	4 40.00 36.36	10 100 5.20
계	135 78.03 100.00	27 15.61 100.00	11 6.36 100.00	173 100.00 100.00

단위 : Frequency
Row Pct
Col Pct

[표2] 거실과 안방의 위치층 분포

기 비고	거실없음	1개 보유	2개 보유	소 계
27기	0 0.00	26 74.29	9 25.71	35 100
37기	0 0.00	40 80.00	10 20.00	50 100
47기	1 2.00	34 68.00	15 30.00	50 100
57기	1 2.00	31 62.00	18 36.00	50 100
계	2 1.08	131 70.81	52 28.11	185 100.00

단위 : Frequency

(표3) 거실보유의 기별 현황

Row Pct

평균9.3%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중 7~11%사이가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기간별로는 거실의 변화에 비례하면서 3%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5참조].

안방면적은 2~4기까지 다소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5기에 들어 약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방외에 부부침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의 안방면적이 안방만 두는 경우보다 오히려 넓은 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에 연면적에 대한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7,8참조].

3) 식당 및 부엌

부엌과 식당의 면적을 합한 면적평균은 전체연면적의 10.0%를 차지하며, 4.5%~25.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 형식은 식당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D.K형)이 59.5%(110/185)에, 간막이벽이 없는 일체형(DK형)이 40.5%로 되고 있는데, 이를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리형(D.K형)

D.K형 평면에서 식당(D)부분의 면적비율은 4~6%범위에 54.5%(60/110)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평균은 5.1%로 되고 있다. 부엌(K)부분은 3~6%범위가

72.7%(80/110)에 차지하면서 전체평균은 5.3%이다[그림 9참조].

(2) 일체형(DK형)

부엌과 식당이 하나의 실로 된 형으로서, 그 면적비율은 7~10%사이가 대부분(40/75)을 차지하고 전체평균은 9.4%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0참조].

4. 평면유형의 분포

조사대상 평면을 기본형(3x3 Grid)에 근거하여 유형화 하면 [표 6]과 같다. 이중 (3x3) 및 (3x2)형이 각각 26.5%,

비 고	안 방	안방+부부침실	소 계
27기	27 77.14	8 22.86	35 100.00
37기	36 72.00	14 28.00	50 100.00
47기	33 66.00	17 34.00	50 100.00
57기	35 70.00	15 30.00	50 100.00
계	131 70.81	54 29.19	185 100.00

[표4] <안방> 및 <안방+부부침실>의 구성

비 고	4~10%	11~15%	16~19%	계
안 방	77 58.78	52 39.69	2 1.53	131 m=9.6%
안 방+ 부부침실	41 75.93	12 22.22	1 1.85	54 m=8.4% *
계	118 63.78	64 34.59	3 1.62	185 m=9.3%

* 단, 부부침실면적은 안방면적 계산에서 제외

[표5] 안방면적의 연면적 구성비율로 본 <안방> 및 <안방+부부침실>의 대비

14.6%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여기에 약간의 요철(Cell)을 가한 형태인 C, D, E(C의 대칭)에서 J형까지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별특장면에서는 A 형은 3기, B 형은 4기, C 형은 5기, D 형은 2기, E 형은 5기 등에 집중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형태인 A, B 형은 후기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대신 여기에 요철을 가한 형식(ㄱ, ㄴ자형)이 후기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표 6].

1. 실위치의 선호경향

평면상의 각실의 위치번호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인접도로, 대문, 주변환경과 방위 등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이들 상황을 일단 동일조건으로 가정하고 다만 평면내의 주요실인 현관, 거실, 안방, 주방의 선호위치만을 살펴 보고자 한다(방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위쪽을 북쪽으로 가정하였다).

현관의 위치는 대개가 남쪽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1]. 거실도 현관과 마찬가지로 남쪽 가운데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여기서 현관과 거실은 서로 인접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방은 중앙에 위치한 거실에 상대적으로 밀리면서도 프라이버시와 일조, 통풍, 전망이 양호한 동남쪽 또는 서남쪽코너를 선호하고 있다.

2. 각실관계

1) 거실 · 현관관계

거실과 현관간의 관계를 보면,

(1) 현관이 거실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

(2) 현관이 거실과 분리되기는 했지만 바로 거실옆에 위치하고 있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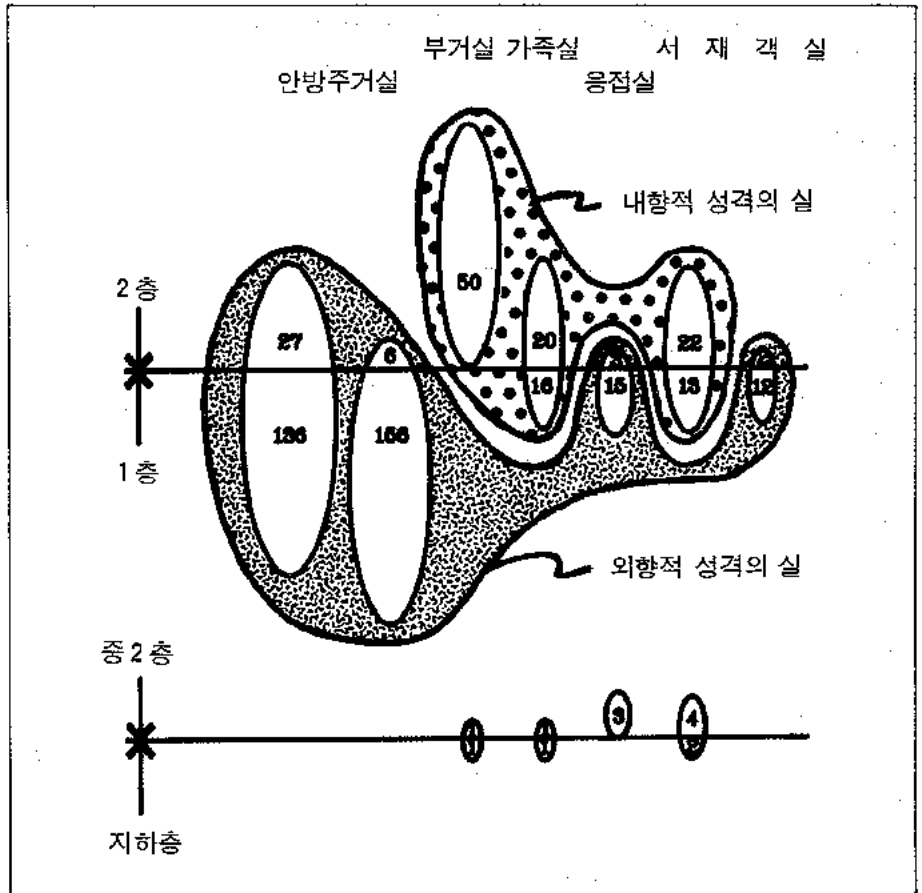
(3) 현관과 거실 사이에 복도나 실을 두고있는 형,

(4) 현관과 거실이 서로 다른 층에 소재하는 형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2)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68%를 차지하고(125/183예), 그외 (1), (3), (4)형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유형중에서 (1)형의 경우는 대체로 통풍·동선기능이 중시되는 형태이다[그림 12참조].

2) 거실 · 안방관계

거실과 안방의 위치관계는,



[그림 4] 각실의 위치층

(1) 거실과 안방의 인접하여 있는 형,
(2) 거실과 안방이 복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형,

(3) 거실과 안방이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1)형이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형, (3)형이 각각 비슷한 22%씩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1)형이 3,47기에, (2)형이 5기에, (3)형은 27기에 각각 집중하고 있다[표 7참조].

3) 거실 · 부엌관계

거실과 부엌(및 식당)의 위치관계는,

(1) 거실과 부엌이 인접하여 있는 형,

(2) 거실과 부엌 및 식당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형,

(3) 거실과 부엌 및 식당이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1)형이 가장 높은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별로도 (1)형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곧, 거실과 부엌(및 식당)이 인접하여

선호되고 있음을 말한다[표 8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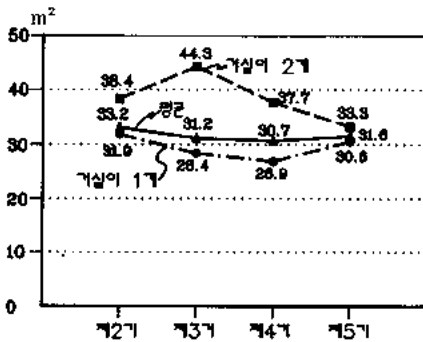
4) 거실 · 자녀실관계

거실과 자녀실간의 관계는 (1)거실과 자녀실이 같은층에 위치하는 형, (2)거실과 자녀실이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하는 형, (3)그리고 자녀실이 거실과 같은 층에도 위치하고 동시에 다른층에도 위치하는 혼합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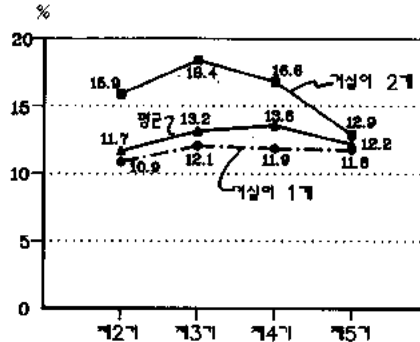
여기에서 거실과 다른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50.2%, 거실과 같은층에 함께 위치하는 형이 41.6%를 보이고 있다[표 9참조].

5. 논의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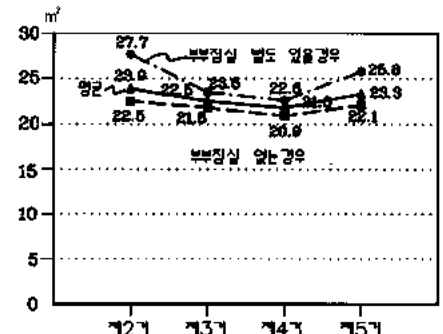
위에서 본 작품주택들의 대체적인 경향은 그것이 대규모 지향적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여타 건축관계 잡지를 통해서 소개된 '작품주택'들과의 비교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건축문화(85/101)」지에서는 평균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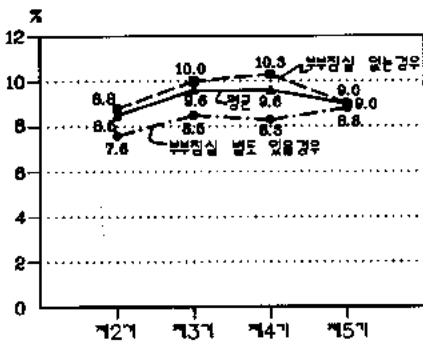
[그림 5] 거실면적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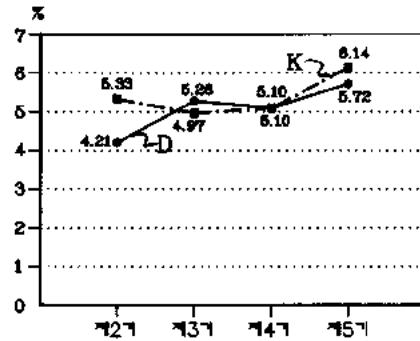
[그림 6] 연면적에 대한 거실면적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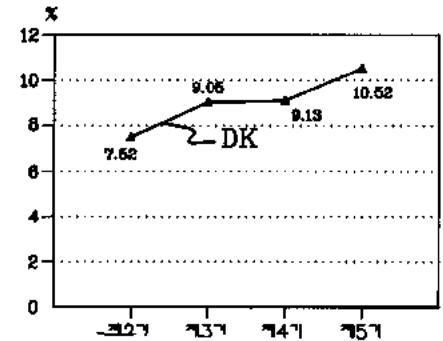
[그림 7] 안방면적의 추이



[그림 8] 연면적에 대한 안방면적비율의 추이



[그림 9] D, K형의 연면적에 대한 D 및 K의 면적비율의 추이



[그림 10] DK형의 연면적에 대한 DK면적비율의 추이

• : 5% • : 20% • : 40%

유형	실	현 관	거 실	안 방	부엌 · 식당
A 형					
B 형					
C 형					
D 형					
E 형					

[그림 11] 각실의 위치선호

「건축사회원설계작품집(65/73)」⁹⁾에서는 257m², 「아름다운 집(37/60)」⁶⁾이 397m²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60~100평사이의 주택이 차지하는 분포면에서 각각 75%, 80%, 83%, 73%로써 전반적으로 73%~83%범위내에 수용되고 있음을 보더라도 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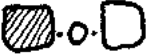
한편 거실, 주방, 식당, 응접실, 객실, 서재, 주침실(또는 안방), 부침실¹⁾ 또는 아이들방(공부방 포함), 부침실²⁾(노인방), 기타(고용인방 등)를 합산한 방수는 평균 5.83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건축문화」의 5.90개, 「아름다운 집」의 4.85개, 「건축사회원설계작품집」의 5.51개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품주택’들의 형태나 내용은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므로써 한시대의 주도적인 주거건축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 ‘주도적’이라 함은 일반적인 문화를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듯이 주거문화⁷⁾도 그 생성의 측면에서 고급의 주도적인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볼 때의

유형	기	간				소 계
		2기 '68-71	3기 '72-76	4기 '77-81	5기 '82-86	
A 0원		9 18.37	19 38.78	12 24.49	9 18.37	49 26.5
B 0원		6 22.22	8 29.63	10 37.04	3 11.11	27 14.6
C 0원		0 0.00	3 25.00	4 33.33	5 41.67	12 6.5
D 0원		4 36.36	1 9.09	3 27.27	3 27.27	11 5.9
E 0원		2 20.00	0 0.00	3 30.00	5 50.00	10 5.4
F 0원		3 33.33	3 33.33	3 33.33	0 0.00	9 4.9
G 0원		0 0.00	3 37.50	2 25.00	3 37.50	8 4.3
H 0원		0 0.00	1 25.00	1 25.00	2 50.00	4
I 0원		1 25.00	0 0.00	2 50.00	1 25.00	4
J 0원		0 0.00	1 100.00	0 0.00	0 0.00	1
기타형		0 0.00	0 0.00	0 0.00	2 100.00	2
합 계		35	50	50	50	185

(표6) 기별 평면의 유형분포

(표8) 거실·부엌(식당)관계

유형 \ 기		2기	3기	4기	5기	Row Pct	
(1)		7 20.00	16 32.00	28 56.00	12 24.00	63	141
		14 40.00	23 46.00	12 24.00	29 58.00	78	
(2)		8 22.86	5 10.00	6 12.00	6 12.00	25	
(3)		6 17.14	6 12.00	4 8.00	3 6.00	19	
계		35	50	50	50	185	

(표7) 거실·안방관계

단위 : Frequency
Row Pct

유형 \ 기	2기	3기	4기	5기	계
(1)	9 25.71	25 50.00	21 42.00	19 38.00	74
	7 20.00	9 18.00	11 22.00	5 10.00	32
(2)	6 17.14	8 16.00	6 12.00	19 38.00	50
(3)	13 37.14	8 16.00	12 24.00	7 14.00	50
계	35	50	50	50	185

(표9) 거실·자녀실관계

단위 : Frequency
Row Pct

유형 \ 기	2기	3기	4기	5기	소 계
(1)	4 11.43		3 6.00	4 8.00	15
(2)	17 48.57	3 60.0	19 38.00	27 54.00	93
(3)	14 40.00	1 32.0	28 56.00	29 38.00	77
계	35	5	50	185	

애기이다. 곧, 전자의 고급주거문화가 건축가의 창작적 열의와 전문성이 가급적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경우의 소산이라면, 후자의 대중주거 문화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크게 덜 반영되거나 전혀 외면되어 버리거나 또는 반영된다하더라도 거의 형식적인 참여(허가수속에 필요한)의 결과 조성되는 집장사들에 의한 주택의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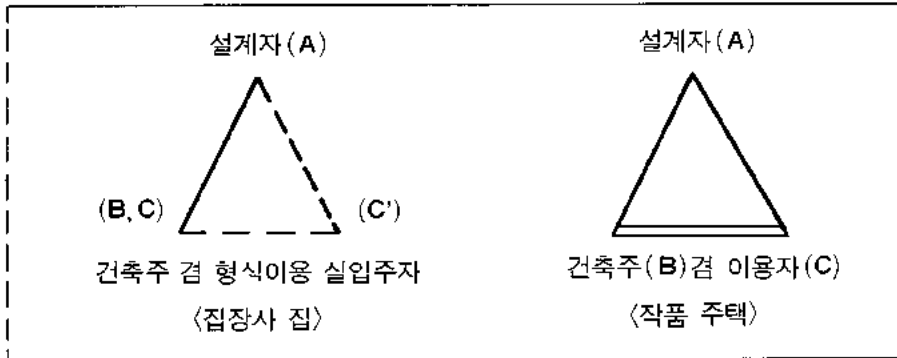
그러나 이용자의 설계에의 참여는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별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집장사집 같은 경우 [그림 13]에서 C 요소가 제거될 소지가 큰데다 이런 형식으로 보급되는 주택은 실제로 전체주택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작품주택'들은 1차적으로는 설계자(등록된 건축사)의 입장에서 (정도의

유 형	거실의 기 능	예 수	연면적(평)				연면적에대한거실비율(%)				
			-50	-100	-150	150-	-5	-10	-15	-20	20-
(1)		0									
		1									
		17									
(2)		42									
		74									
		9									
(3)		9									
		13									
		2									
(4)		14									
		1									
		1									

○ 거실 독립형 ○ 거실+복도형 ⊖ 거실통로형 ● : 5% ● : 20% ● : 40%

[그림 12] 거실·현관관계



[그림 13]

차이는 있겠으나)작품성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 제재·소개되는 것이라 이해 할 때 이들이 어떤 주도적 주거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대규모 지향에 2층지향으로 대표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반드시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과시풍조 내지 소비지향적인 사회풍조의 일부분을 무의식적으로나마 선도하므로써 국민의 건설한 주문화의 향도에 오히려 장애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평균적인 주거수준을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이하 앞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안방, 주거실, 응접실, 객실 등의 외향적 성격은 실은 1층에, 부거실, 가족실, 서재 등의 내향적 성격의 실은 주로 2층에 위치한다.

2) 거실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30㎡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면적에 대한 비율은 12%정도를 보이고 있다. 안방의 규모는 22㎡정도로 연면적에 대한 비율은 9%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때 부부침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의 안방면적이 오히려 안방만 두고 있는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부엌 및 식당의 연면적에 대한 비율은 10%정도로 되고 있다.

3) 평면의 유형은 단순형태인 (3×3 Grid)형과 (3×3 Grid)형이 가장 많으며, 이들 평면의 유형별 실위치의 선호경향은 거실과 현관은 대체로 남쪽에 돌으로써 서로 인접하게 되고, 안방은 중앙에 위치하는 거실에 밀리어 동남쪽 또는 서남쪽을

선호한다.

4) 거실과 현관의 위치관계는 간막이로 분리되기는 했지만 바로 이웃하는 형이 가장 많다.

5) 거실과 안방의 위치관계는 서로 인접해 있는 형이 가장 많다.

6) 거실과 부엌의 위치관계는 같은층에 위치하면서 바로 인접하여 있는 형이 대부분이다.

7) 거실과 자녀실의 위치관계는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하는 형과 같은 층에 위치하기도 하고 다른층에 위치하기도 하는 혼합형이 대부분을 이룬다.

註)

1) 다만 경제개발계획 제1기에는 주택작품 소개가 평면을 결구하는 형식이 아니었으며, 제2기에 들어서도 초년도에는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추출대상에서 제외하였다[표 1참조].

2) 그러다가 경제적 안정기에 든 제5기(1982~86)에 와서는 다시 80~100평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40평이하 규모는 제3기에 집중하며, 40~60평은 4기에, 60~80평은 3,4기에, 80~100평은 5기에 집중하고, 100평이상은 2기에 집중하고 있다. 100평이상의 규모가 3기 이후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오일쇼크에 직접적인 원인의에도 당시 호화주택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사회적 비판의 여론이 비등했던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여기서 연면적이 430㎡ 이상인 7예, 기타 면적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2예를 제외한 176예의 평균 연면적은 73평(242㎡)으로 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185예 중 2층주택이 거의 대부분인 94.6%를 차지하고 그 1층(8예)과 3층(2예)이 극소수 포함되고 있다. 또 skip floor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2층주택에서 31예, 1층주택에서 2예, 3층주택에서 1예씩 발견된다.

4) 조상대상 101예중 면적이 명시되어 있는 85예 분석을 의미한다. 이하 5), 6)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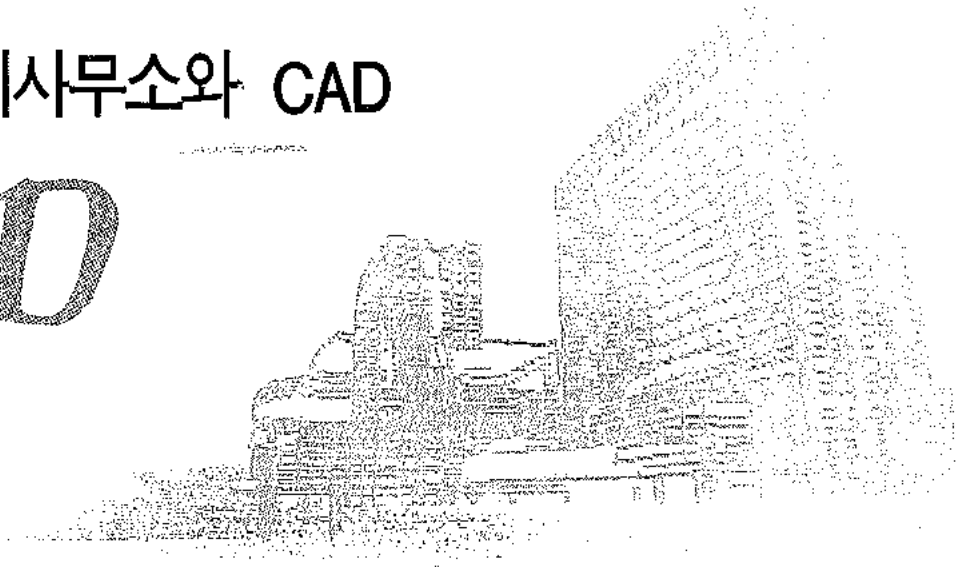
7) 본고에서는 주거건축의 설계·공급프로세스와의 관련면에 한정해서 이해한다.

8) 이런 형식으로 세워지는 주거건축은 대도시의 경우 90%이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중소규모 설계사무소와 CAD

CAD

Architet Offices
CAD System



I. 서 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라면 누구나 적어도 한번쯤은 CAD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현재 컴퓨터를 운용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일부 기업화된 대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이용 수준이나 도입계획 수립 내용이, 컴퓨터의 실제 능력이나 투자비용에 비해 엄청나게 유치(?)한 실정이다.

필자 역시 컴퓨터를 설계업무에 사용한지 1년정도 밖에 안되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설계사무소를 개설한지도 2년이 채 안되는 젊다기 보다는 오히려 어린 건축사사무소 소장에 불과하지만, 기성의 소장님들 보다는 비교적 컴퓨터와 친밀한 세대라할 수 있으며 학계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건축설계에 관해 일반 상식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컴퓨터 전문업체 또는 CAD 학원들 보다는 직접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건축인들의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향후 설계업무에 컴퓨터가 성공적으로 접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설계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은 상상의외로 광범위하며 특히 설계사무소의 규모나 설계 Project의 종류에 따라 활용 범위에 운영 방법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설계사무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사무실을 위주로

本考는 신도시건축의 李泰榮회원이 CAD 시스템을 실무에 활용하여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중소규모의 회원사무소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CAD 시스템에 대하여 기고한 글이다.

本考는 다음호까지 2회에 걸쳐 연재한다. (編輯者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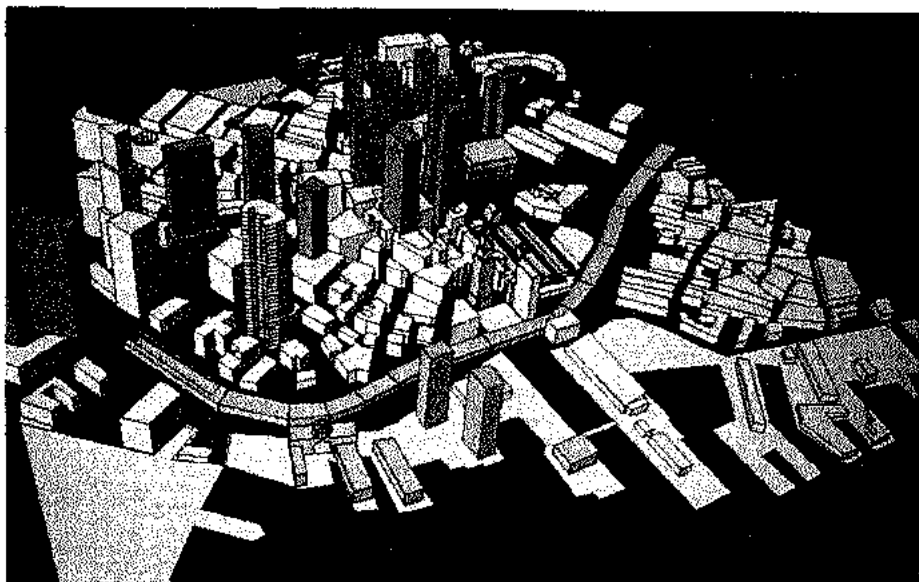
하였으며 독자의 대상도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순수한 건축인, 특히 현재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여 설계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로 하였다. 건축이 종합예술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건축설계에서의 CAD 사용은 일반 OA System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기술 습득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실 전체, 그리고 더 나가서는 건축사 협회등의 총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려운 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이해하기 쉽게 때로 전문가들 시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지루할 정도의 사족을 다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컴퓨터 키보드의 100여개 자판중 하나를 골라 적당한 시기에 누를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이 결국 컴퓨터를 쓸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어쩔을 전제하기로 하였다.

II. CAD란 무엇인가

CAD에 대하여 수많은 서적이거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용어를 구사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가들도 보고 들은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TV 보듯이 보는 것 밖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 특히 건축사사무소 소장님들이나 실장님들 등등 중견이상의 건축가들에게는 오히려 현학적인 느낌마저 들 정도로 파부에 와 닿지를 않는다.

李泰榮
종합건축사사무소 신도시건축
by Lee, Tae - Young



사실상 CAD 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공학용 계산기가 삼각함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계산기와 같다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다. 필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알고보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3」을 누르고 「0」을 누르고 「cos」라는 단추를 누르면(기종에 따라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코사인 30도”가 계산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둘째는, 무조건 직접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는 수식을 적어놓고나서 계산기 두드리는 것을 부하직원에게만 맡길 수 있겠는지? 적어놓은 공식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모르는 전혀 다른 분야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지? 또는 그 작업을 부여받은 사람이 능력상(능력에 따른 운용상의 차이는 뒤에 다시 언급키로 함) 혹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고의로 1시간 작업량을 하루가 지나도 완성치 못할 때 (물론 수작업보다는 빠르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말 것인지? 도면그리는 작업을 부하직원들이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작업순서 등은 상사가 더 잘 알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어야 하며 적어도 작업에 걸리는 시간 정도는 작업지시자가 원히 예상하고 있어야 만이 Work Schedule 에 지장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기본계획의 스케치를 도면화 하는 작업지시를 CAD 작업을 예상하고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해시키기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 A부분을「LAYER」

X,Y,Z로 작업해서「BLOCK」화 시켜 A,B,C,D 구역에「INSERT」시키고 다시 D는「EXPLODE」시켜 이 부분을 이 선까지「EXTEND」시키고 나서 여기 여기를「TRIM」시킨뒤……이곳은 회전각도에 따라 치수가 틀려지니까 5도 단위로 몇번「ROTATE」시켜 보던가 아니면「POLAR」로「ARRAY」시켜서「ZOOM」하여 확인하고……이 Facade 는 Solid 부분을 배경으로 하여 창호를 A, B, C로 만들어「BLOCK」,「INSERT」,「ARRAY」하여 ALT. I 을 만들고, 다시 창호 A', B', C'를 만들어「BLOCK」A, B, C를 A', B', C'로「RENAME」시켜 ALT. II 를, A'', B'', C''로 ALT. III 를 만들어 서로 비교해 보고나서 입면 결정 함시다.”

결국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CAD란 제도판을 계산기의 화면위로 옮겨놓고 연필대신 키보드나 다른 Accessory 를 이용하는 것 뿐이며, 따라서 건축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도구(자, 스케일, 콤팩스 등과 같은)인 것이다.

III. CAD의 활용영역

사실상 설계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어떤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왕에 CAD를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도입하였다면 그 컴퓨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군가가 이런 업무에 쓰십시오 라고 가르쳐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설계사무소에서의 업무를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또 단순히 이해한다고만 해서 될일이 아니므로) 따라서 우리 건축인들이 스스로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며 실제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직까지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작업 외에는 무슨일이고 컴퓨터가 거의다 해 낼 수 있으리라 여겨 진다.

이제 전술한 바와 같이 중·소규모의 설계사무소를 기준으로 하여 CAD 작업을 포함한 컴퓨터의 활용 영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대규모 설계사무소에서의 컴퓨터 활용 영역이라 해서 별개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 Project의 성격에 따라 CAD의 활용범위가 크고 작아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글에서 많은 직원이 있는 대규모 설계사무소를 위한 「인사관리 Program」등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굳이 중·소규모 설계사무소라는 단서를 붙인 것이다. 예로 Project 하나의 설계비가 수익원에 이르는 설계를 주로 하는 사무소와 그렇지 못한 사무소와는 컴퓨터 운용을 위한 당장의 투자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컴퓨터에 관한 한 아직 길을마단계인 입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획득을 등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아직 능력 밖의 부분이 필요해지면 우선 컴퓨터전문가에게 외주를 주는 방법(잠시 운전기사를 채용하듯이)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쩌다 한번쯤 건축주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물 원경으로부터 출입구를 통과하여 건물 내부를 속속들이 실제 걸어 들어가서 둘러보는 것 같은 묘사(분당 신도시 아파트 단지계획에서 기 연출되어 TV로도 방영된 바 있음)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때 우선은 외주처리를 하고 점차로 필요한 기술과 프로그램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전문가에게 외주를 줄때에도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현재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으므로) 컴퓨터 전문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제로 설계사무소에서 CAD를 운용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하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보인다. 예를들어 AutoCAD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명령들을 이용하는 단계와 그 명령어들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간혹은
있다.이와
제도판을
컴퓨터
다만 Accessory
따라서 건축
대신한
문화스
것이다.

수정시키거나 조합시키는 등 프로그램 자체를 변형시켜 주는 Autolisp 라는 단어가 있다. 여기서 우리 건축인들이 Autolisp 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운 시간을 들여 공부하기 보다는 복잡함이 요구되는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번만 자기 사무소취향에 맞게 고쳐주면 되며 또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고 익히기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고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이기 위함이니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컴퓨터가 우리 설계사무소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맨 먼저 건축주가 어떤 설계 Project 를 의뢰하면 그 대지에 대한 분석과 법규검토를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각종 브리핑용 도면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필자가 사용해본 바 투입 Man Power는 반 이상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건축주에게 인식되는 신뢰도는 가히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 이때 첨부되는 설계비 견적서나 독자적으로 개발된 건축법규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당해 Project 에 관계되는 법규 List 등은 건축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처 빠뜨리기 쉬운 법규를 사전에 Check 할 수 있어 상당기간 진척된 계획설계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준다. 실제 필자의 힌트로 모 전문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건축법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어 거의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이것은 주어진 대지조건과 건축주의 요구조건(건축물의 용도등)을 입력시키면 이에 관계되는 건축법규가 출력되며 현행 법규상 최대 가능규모 같은 것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초작업이 마무리되면 컴퓨터 화면상의 대지위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혹은 확보해 놓은) Data 들을 이용하여 (Data 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함) 계획설계로부터 기본설계에 이르기까지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흉내내기 어려운 많은 작업들을 순식간에 한 두사람의 힘으로 처리하게 된다. 건축계획이 자꾸 바뀌어 보고 다듬고 또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인 만큼, 그리고 유사한 개념과 요소들이 자꾸

반복되어 사용되는 만큼 컴퓨터의 가치가 점점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중축을 고려해야 할 Project 라면 실로 놀라우리만치 경제적인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설계한 모 증권회사 지점 신축설계의 경우 도시설계구역이며 대지 규모가 현재 요구되는 건물규모에 비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 지점용 건축물의 임대비율 등의 관계로) 향후 100% 정도의 확장성(수직뿐만 아니라 수평으로도)을 고려하여야 했는데, 1차 공사는 편심 Core 에 전체 옥외주차로 하고 증축후 최종 예상 건축물을 Center Core 가 되며 증축될 부분의 지하층을 옥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이에대한 몇가지 ALT. 를 가진 1차 공사분 계획도면을 가지고 「COPY」, 「MIRROR」, 「EDIT ...」하여 수작업으로는 일주일 이상이 걸릴 증축예산 도면작업을 단 이틀만에 끝내어 브리핑을 한 적도 있다.

보다 많은 Alternative 를 손쉽게 표현해 냄으로써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통해 기본안을 확정짓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작업해 놓은 기본도면을 부분별로 확대시켜 디테일한 요소들 몇 가지만 첨부해 넣음으로써 시작과 동시에 끝을 맺게되는 것이다. 더우기 기준 1개층을 소요 층수만큼 「COPY」하거나 한 File 내에서 층별로 「LAYER」를 구분하여 층별 변형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며, 확대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분을 「COPY」, 「ZOOM」하여 불필요한 주변을 정리하고 추가 표현 요소만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창호나 마감재료, 잠철물공사, 방수, 단열, 각종 Joint 부분이나 부착물 설치 등에 관한 상세도면은 사무소 특성별로 이미 작업해 놓았거나 확보해 놓은 표준상세 Data 들을 마치 주머니 속에서 도장을 꺼내어 찍듯이 「COPY」하여 필요에 따라

약간의 수정, 보완함으로써 한 Project 의 도면작업이 끝을 맺게 된다.

이제 설계도면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몇가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구조계산, 공사비 내역서 등은 이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으며, 시방서도 대규모 설계사무소에서는 이미 Word Processor 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내고 있는데, 이를 널리 보급, 유용하는 방법은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일반 OA 용 프로그램인 'Lotus'나 Data Base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작업으로 금전출납부 작성과 참고서적 정리를 들 수 있겠다. 수O-지출=잔고 라는 1차원적 계산만으로 정리적인 한 두사람이 투입되는데 결국 오랜시간의 계산 결과가 불확실한 답안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컴퓨터로 정리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 낸은 물론이고, 지출 비목별(일반관리비, 문구 복사 교통비, 식대, 직원급여후생비, 외주비 등등)로 분류하여 예산수립, 집행에 큰 효과와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Project 별로 실제 투입원가를 뽑아 봄으로써 향후 설계비 책정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리장부를 소장이 직접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참고서적, 건축잡지 등을 컴퓨터로 간단히 정리해두고 필요할 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예를들어 '호텔 Project 에 대해 참고하고 싶다'라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 스스로가 기 입력된 자료들을 검색하여 '무슨책 몇 페이지, 무슨잡지 몇 페이지.....를 보시오'라고 대답한다. 또는 '외부 알미늄쉬트 마감을 한 기존의 작품들을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어디어디를 보라고 답한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잡지(국내외를 막론하고)들의 내용을 사람이 일일이 기억해 두었다가 참고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의 주소록정리 라든가 공문 서식 등등 일련의 작업들이 반복되는 업무는 무엇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주택구구식의 사무소 운영에서 조직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으로의 탈바꿈이 바로 설계사무소에서의 컴퓨터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메소포타미아 건축 순례 (2)

Tours of Mesopotamia Architecture

기적적인 건축—세계최대의 벽돌 조적조 ARCH

CTESIPHON궁전

裴元泰

構美건축구조연구소 소장

by Bae, Won - Tae

「기적적인 건축」이라는
세계 최대의 벽돌 조적조 Vault 인
이 「Ctesiphon 궁전」은
아직 국내의 「서양건축사」 기록에도
언급이 없는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2천여년 전에 지어진
이 Ctesiphon 궁전은
지금도 세계 최대의
벽돌 조적조 아치로서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로 本考를 통하여
많은 흥미와 감동과 함께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1. 기적적인 Architectural Planning Ctesiphon

「Ctesiphon」(AD 242~272)은 이라크
중부에 위치한 현재의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동남방 약 20마일(30km)이 되는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고대 도시이다. 이곳은
기원전 마지막 세기에 사산朝(Sasanian)
페르시아제국의 왕(Parthian)의 사냥
야영지로 가끔씩 쓰는 겨울 수도였다.

이곳에는 현재 거대한 Vaulted Hall 이
남아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Ctesiphon 의
건조 연대는 사산朝 사프르 1세의
궁전으로서 AD 531~579라고 하는데
(日本の 건축사 자료) 그 건조 연대는
그보다 더 오래전인 기원전 마지막 세기일
것으로 보인다.(이라크의 팜프렛 및
영국의 백과사전 참조)

다른 자료에 의하면 Ctesiphon 은 원래
Greek Army Camp 였다고도 하며
Ctesiphon 은 기원전 129년 페르시아의
바빌로니아후기의 軍병영으로
설립되었다고도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때 Kut 쪽의 포위공격에 앞서
영국과 터키軍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기도
했다한다.

지금 남아있는 건조물은 세계 최대의 벽돌
조적조 아치이다. 그 규모는 G.L. 에서
Arch 의 높이가 37m 아치의 폭 즉 Span 이

25.5m 벽체의 두께가 5m, 저층부의 벽체
두께가 7m, 아치의 깊이가 48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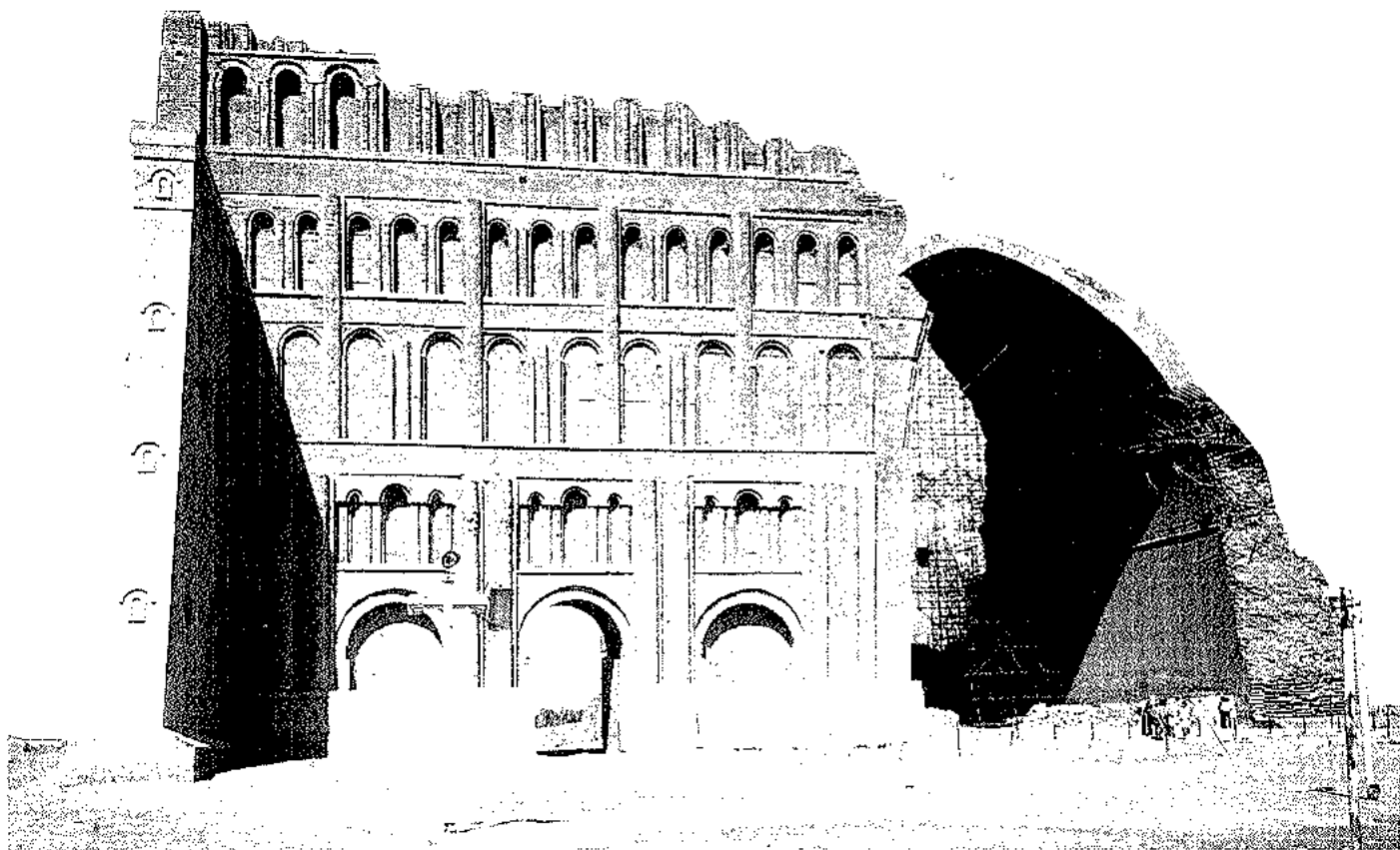
현재 남아 있는 아치부분의 최상부 두께가
얼마인지 확실치 않으나 벽체 두께인 5m는
안되게 보이며 목측으로 약 1.5m 두께로
보이고 아래로 곡선이 내려올수록 아치
두께가 두꺼워져 아치 곡선이 끝날 부분의
지점 두께는 약 3m 정도로 보이며 그 아래
벽체가 5m 두께로 보여진다.

이 거대한 Ctesiphon 의 궁전은 건조
당시의 그 시기에는 기적적인 건축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천여년 전에 벽돌
조적조로 25.5m Span 의 건축물이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건축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우거나 지금까지 2천여년 동안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은 더욱
기적적인 사실이다.

Ctesiphon 궁전건축양식은 메소포타미안
Structures Style 을 구체화한 것

Ctesiphon 의 건축양식은 로마적 요소와
근동적 요소의 혼합으로 페르시아의 원형의
계획과 Greek 의 사각배치와의
Contrasts 를 이룬 계획으로 보고 있으나,
현지의 자료에 의하면 “이 양식은 기원전
3천여 년 전부터 내려오던 사원과 궁전
건축양식의 메소포타미안 Structures
Style 을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한다.



Ctesiphon의 전면 개방 양식은 후에 모든 Islamic 공공건축에 일반화된 양식의 시효

이 Ctesiphon 궁전의 건축 양식은 전면 개방형으로 좌우에 넓은 복도가 있고 뒤쪽에 諸室이 배치된 것이 특징적이다. 전면 개방한 알현실은 후에 거의 모든 Islamic 건축의 궁전이나 종교, 공공건축에서 일반된 양식의 효시가 되었다.

벽은 자연의 변화를 걸러내는 스크린 역할

Ctesiphon 궁전의 정면의 거대한 벽은 지금 한쪽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좌우 대칭이었다. 벽돌벽이 아주 높고 길어 벽면이 거대 할 때는 그 벽면이 주는 단절감과 삭막함은 크다. 그러나 이 Ctesiphon의 벽면의 Blind Arcade는 장식적 평면 도안의 강조로 무척 아름답다. 그러나 이 거대한 Ctesiphon의 아름다운 벽은 장식만을 위한 것은 분명 아니며 후에 소개할 그 구조적인 기능 역할과 자연의 변화를 걸러내는 스크린 역할을 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걸러내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방을 비롯한 중동의 모든 지역 건물에 일반화 되고 있는 특징이다.

2. 치수와 스케일의 마술

숫자의 관념은 또한 스케일의 관념에도 대단 했다.

만약 건물의 기둥이나 벽의 두께가 5m 라면 너무 커서 투박 하다고 깜짝 놀랄 것이다.

본 Ctesiphon 아치의 두께가 5m~2m 인데도 전혀 두껍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바로 스케일 감각이 뛰어 났다는 것이며 치수 (Scale)의 마술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윗 사진은 아치 최상부와 Blind Arcade 벽의 최상부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순간의 장면을 찍은 것이다. 원 속의 사람의 크기와 아치의 규모와 비교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크기에 비교하면 이 아치의 규모가 엄청남을 알 수 있다.

건축의 발달은 숫자의 발달에서

아라비아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생기고 메소포타미아에서 10진법, 60진법이 생겼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건축의 치수 관념은 철저하다. 이 숫자관념은 건축에만 발달된 것이 아니며, 예를들면 길거리의 땅바닥에 과일을 놓고 파는 과일장사도 저울 만은 꼭 갖고 다녀 "이거 얼마 입니까"하고 물으면 그값이 "1개에 얼마, 혹은 100원에 몇개"가 아니라

꼭 저울에 달아 보고 얼마라고 대답한다.

이렇듯 그 생활의 저변에서 부터 숫자관념은 철저하다. 숫자 관념이란 바로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기적적인 요행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숫자관념,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바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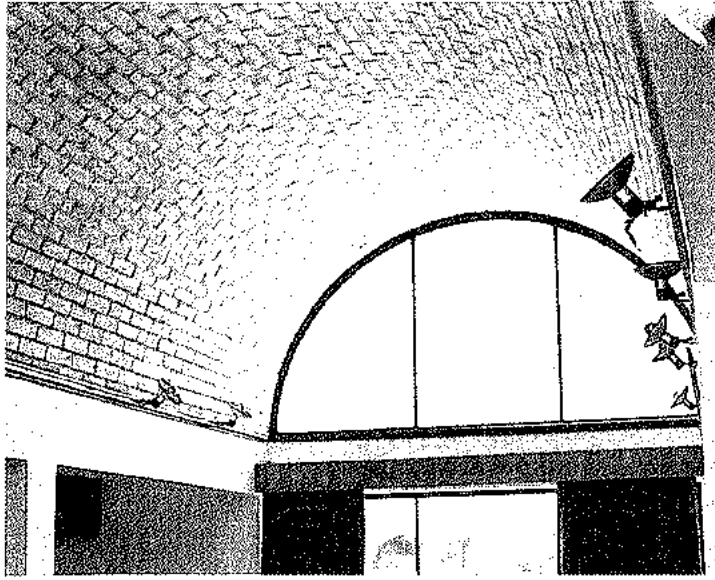
3. 놀라운 구조 기술

아치 양열의 거대한 벽은 전면과 후면 마찬가지로 그 벽은 아치의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거대한 Ball Vault 양단의 실린더 셸의 종단(보조벽) 보강과 같은 구조적 역할과 아치의 Buttress 벽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대에 이러한 구조계획에도 뛰어났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칠근콘크리트조로서 몇미터 Span 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땐, 2천여년 전에 벽돌 조적조로서 25.5m Span의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로부터 2천여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콘크리트조로서 몇미터 Span까지의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할지 참 곤란하다. 대답은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Ctesiphon의 25m



Span의 세계 최대 벽돌 조적조 아치에 대해선 어떻게 성립될 수 있었는지를 간략히 따져 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양쪽이 잡힌 끈이 드리워져 있을때 즉 빨래줄과 같은 줄이 곡선을 그리며 느려져 있을때 그 줄에는 인장력만 작용하게 된다.

본 Ctesiphon의 Arch의 적재 하중은 생략하고 벽돌의 자중에 의한 압축력만 계산해 보면, 소성벽돌의 압축강도 37.4 kg/cm^2 으로 가정하고 허용압축력을 20% 적용하면,

$374 \text{ t/m}^2 \times 0.2 = 74.8 \text{ t/m}^2$ 의 허용 압축력이 된다. 벽돌의 자중이 2 t/m^2 이니 반쪽

Arch의 벽돌 자중은

$2 \text{ t} \times 5 \text{ m 두께} \times (25 \times 3.14 \div 4) = 196.25 \text{ ton}$ 이다. 아치의 하단 넓이가 5 m^2 니까

$196.25 \div 5 = 39.25 \text{ t/m}^2$,

고로 허용 압축력이 되므로 안전하다.

단순히 압축력만으로 짐어 볼 때 허용압축력에 미달되는 여유량 만큼의 적재하중이 놓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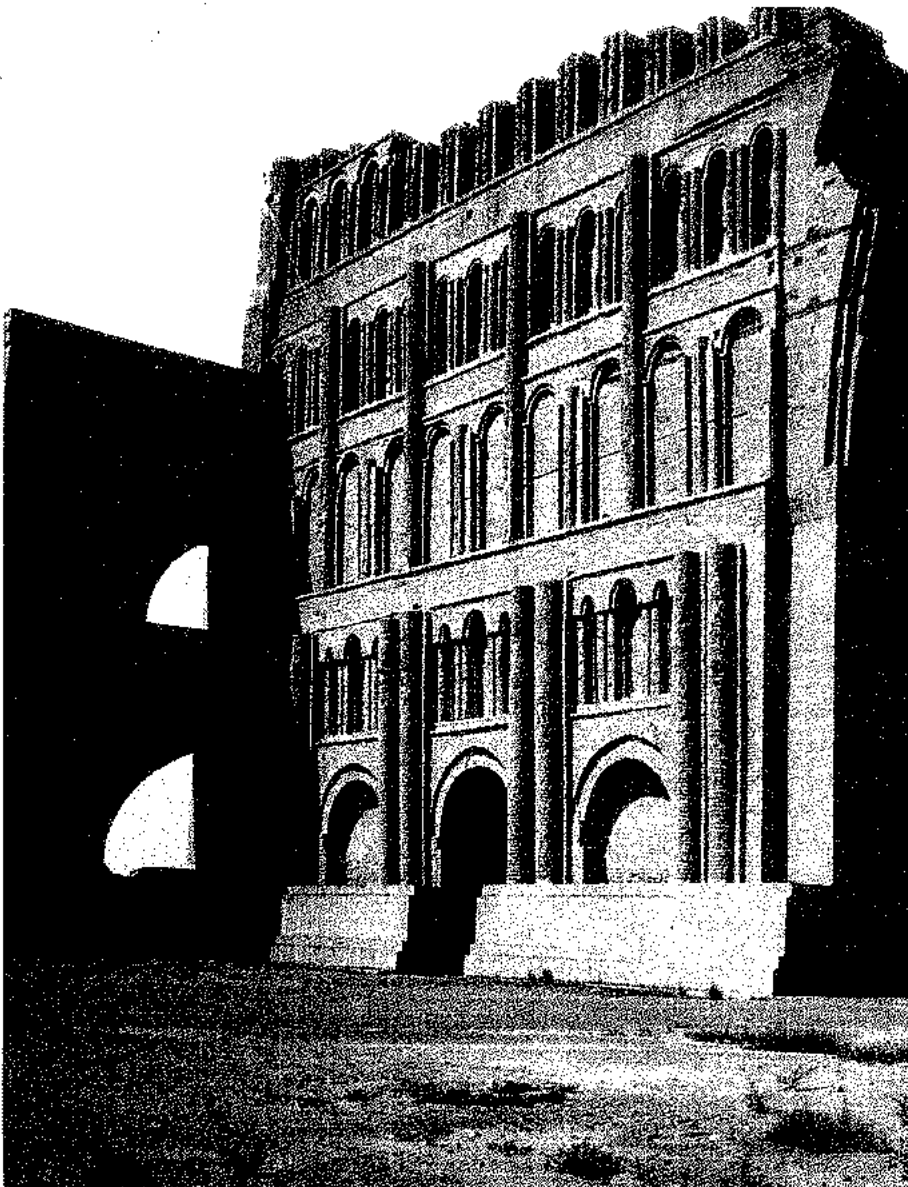
이 Ctesiphon의 아치는 그 규모만이 놀라울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찾아 보았다.

그것은 바로 견고성이다.

이 Ctesiphon 궁전의 전면, 즉 정면에서 보았을 때 중앙의 Balle Vault와 왼쪽의 거대한 정면 벽이 현존해 있으며, 오른쪽 벽은 허물어지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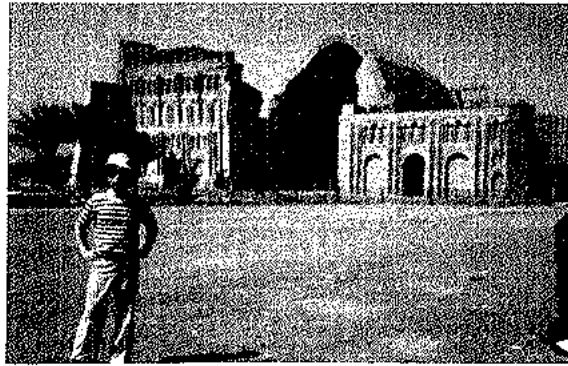
이 오른쪽의 벽은 1888년 지진때 허물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이 Ctesiphon 궁전이 1천8백년간 견재해 오다 자진이 일어나서 오른쪽의 거대한 벽면만 허물어지고 중앙의 세계 최대의 조적벽돌 아치와 왼쪽의 벽면은 지진에도 허물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견디어 오고 있다는 뜻이다. 벽돌 조적조로 만들어진 25.5 m Span의 거대한 건물이 지어진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것도 2천여년 동안의 오랜 세월의 비바람에 딛고 쫓기면서도 지진이 일어나도 허물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견디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견고성이 또한 “기적적인 건축”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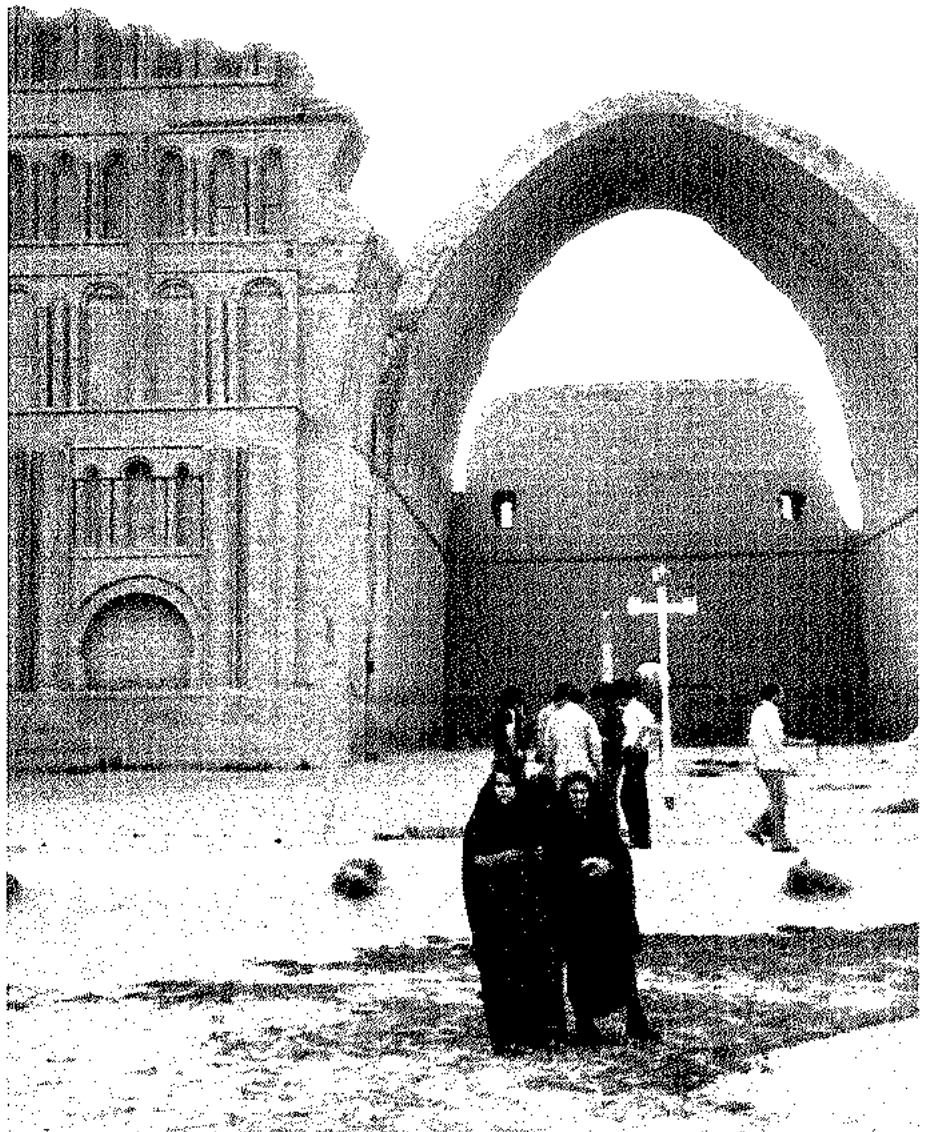


① Ctesiphon 궁전의 현존하는
세계최대의 조적조 Arch 전경

- ② Ctesiphon 궁전 유적지가 있는
공원안에 있는 근세에 지은
Rest house 건물의 내부 천장
이 건물의 지붕구조가 Ctesiphon과
Scheme으로 벽돌 조적조 Vault 구조로
재현되어 있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순수하게 벽돌로만 지붕의
내외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 ③ 집면 벽의 Blind Arcade는 장식적
평면도안의 강조로 무척 아름답다.
그러나 이 벽은 단순히 장식적만은
아니며 구조적 기능과 자연의 변화를
걸러내는 스크린 역할을 겸하였던
것이다.
- ④ 궁전 앞에서의 기념촬영
⑤ 세계최대의 Arch부



④



⑤

4. 신비로운 축조 방법

이 Ctesiphon 궁전 건축의 사용 재료는
소성연화이며 Vault 구조로서 이 거대한
Vault 축조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공 방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日本에서 발간된 건축사 자료에 의하면
“거푸집 없이 Vault 를 깔고 있기 때문에
벽돌을 기대어 세우는 것같이 기술여서
쌓여져 있다”고 한다.

그 당시엔 이 지방에는 建材로 사용할 수
있는 木材는 전혀 없었다. 또한 멀리
다른나라에서 목재를 갖고 올 수 있는 문제라
해도 거푸집으로 사용해야 할 그 많은 양의
목재가 있다면 구태여 어렵게 흙벽돌로
이렇게 지을 기술이나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며 목재로 지어 버리면 될 일이었을
것이며, 또한 목재 거푸집으로는 이러한
두께의 엄청난 하중과 높이에 견디기 힘들
것이다.

아무튼 그 축조 방법은 2천년전의
일이었으므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재현 될 수 있는 Vault 구법

Ctesiphon 궁전 유적지가 있는 공원인
“Salman Park” 내에 있는 근세에 지은
근대식 건물인 Rest house 건물의 내부
사진을 보면 이 건물의 지붕구조가
Ctesiphon 과 같은 Scheme 으로서 벽돌
조적조 Vault 구조로 재현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 건물도 순전히 벽돌로만 지붕을 구성
하고 있다.

이 건물을 보고는 필자도 언젠가는 이러한
벽돌지붕 구조로 구조 디자인 하리라고
생각해 오고 있었으나 아직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다.

이러한 벽돌 노출 Vault 구법은 현대의
건축에도 응용될 수 있는 재미있는 구조로
개발권이 제시되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Ctesiphon 궁전이 주는 건축적 교훈

필자는 먼저 이 Ctesiphon 궁전의 현장에
가 보았을 때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이 그
규모와 견고성 이었다.



이러한 관식으로 그 후 '몇 년간의 자료수집과 연구로 앞서 소개한 그러한 사실들을 정리해 보게 된 것이다.

이 Ctesiphon 궁전이 주는 건축적 교훈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아름다운 벽과 아치이다. 거대한 아치의 스케일은 결코 거대함을 뽐내겠다는 스케일의 위압감이나 구조의 불안감을 전혀 주지 않는다. Arch 벽의 두께가 2m내지 5m, 혹은 7m가 되는데도 전혀 두껍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규모에 비례한 스케일감각, 즉 구조적인 볼륨과도 일치하는 비례에 있다고 본다.

현대의 건축시각에서 볼 때 사용 재료의 단점과 무리한 큰 Span 구조물임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미적인 감각의 기초가 되어 아름다운 건축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 첫째의 교훈이다.

둘째는, 벽돌조적조로서 25.5m의 Span을 만든 아치의 구법, 즉 공법이며,

세째는, 견고한 구조이다. 이것은 2천여년 동안의 지금까지 세계 최고임을 입증하며 현대의 건축에도 재발견되어 충분한 경험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라 본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세월에도 부식이나 퇴화되어 허물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의 비결은 무엇인지 우연이나 기적이 아닌 그 비법의 원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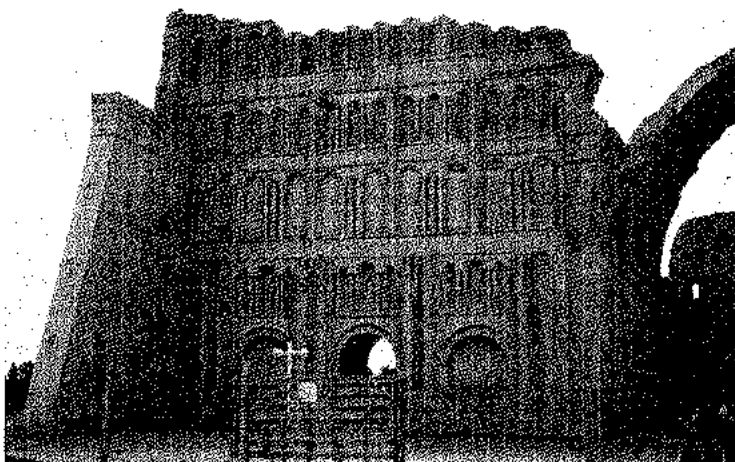
필자는 다른 유적지에서 그 비법의 원리를 발견하였다. 그 견고성의 비법을 보여주고 입구에는 숲이 있고 담장이 쳐진 유적지 정문으로 들어갔다.

주위에는 유적지 관리사무실이 있고, Ziggurat 가까이 에는 큰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음에 소개하려는 「Agargouf Ziggurat」이다.

5. Ziggurat of Agargouf

Agargouf는 현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가까운 교외의 한적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古代의 수도였던 곳이다.

필자는 이 근처의 큰길로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는데도 이 유적지를 몰랐는데, 나중에야 시간이 있어 지도를 보고 근처까지 갔지만, 찾지 못하고 겨우



주민들에게 물어서 찾아 갔던 곳이다.

비포장 진입로 한쪽으로는 시골마을이 있고 다른쪽으로는 광활한 평야에 지구렛이 우뚝 솟아 있다.

빈 공터에 주차를 하고 길을 건너가려는데, 한 무리를 지은 양떼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간다. 우리는 길가에 비켜서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난후 길을 건너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외 인위적으로 가꾸어진 시설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다. 문화재의 소위 관광개발이 전혀 안되어있었다.

Babylon 이나 Samara 등 다른 유명한 유적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관광개발이 전혀 안되어 있었다. 즉 진입도로를 똑바로 내어 포장을 하고 인도를 보도블럭으로 깔고, 광장을 만들어 보도블럭으로 단장하고 정원수를 심고 정원에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치고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건물과 상가들을 집단으로 짓고 유흥가를 형성하는 소위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유명한 유적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관광개발이 되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알고보면, 관광개발을 안해서가 아니었다. 그 나라의 사회나 경제실정에 충분하지는 못하나 상당한 예산과 많은 기간을 통하여 관광 자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곳의 관광 개발은 유적지 자체의 보존과 보호에 있으며 인위적인 환경개조개발이 아니었다. 진입로라든가 주위 환경은 옛날 그대로 자연 그대로이며, 단지 유적지 자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보강 보수 한다거나 발굴조사 하는 방향이었다. 발굴도 몇 달 몇 년의 단기간

보다 10년 혹은 20년 등의 장기 계획으로 진행 중이었다.

사실 몇 천년의 유적이 몇 달 혹은 몇 년만에 파헤쳐지고 주위를 신개발자처럼 관광시설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화재 보호는 유적지 자체의 보호와 발굴 조사로 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적지는 어떠 했는가. 불도저와 각종 중장비가 들어 와서 길을 파헤치고 넓혀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땅을 파헤쳐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편의 위락시설을 한다해서 건물을 짓고 상가를 집단으로 수용하고, 경주 같은 천년 고도에도 四通五達 마치 서부개척하듯이 길을 내고, 옛모습은 고사하고 20년 전 모습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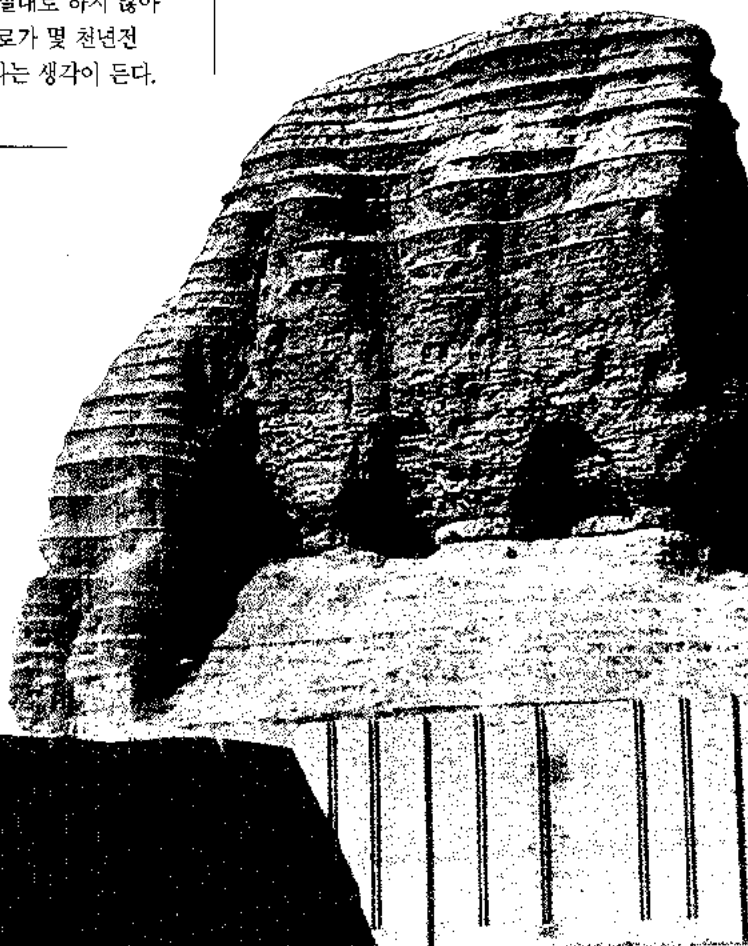
이곳 메소포타미아의 건축 유적지에는 다행히 인위적인 개발은 절대로 하지 않아 어디를 가나 이것이 이대로그가 몇 천년전 옛날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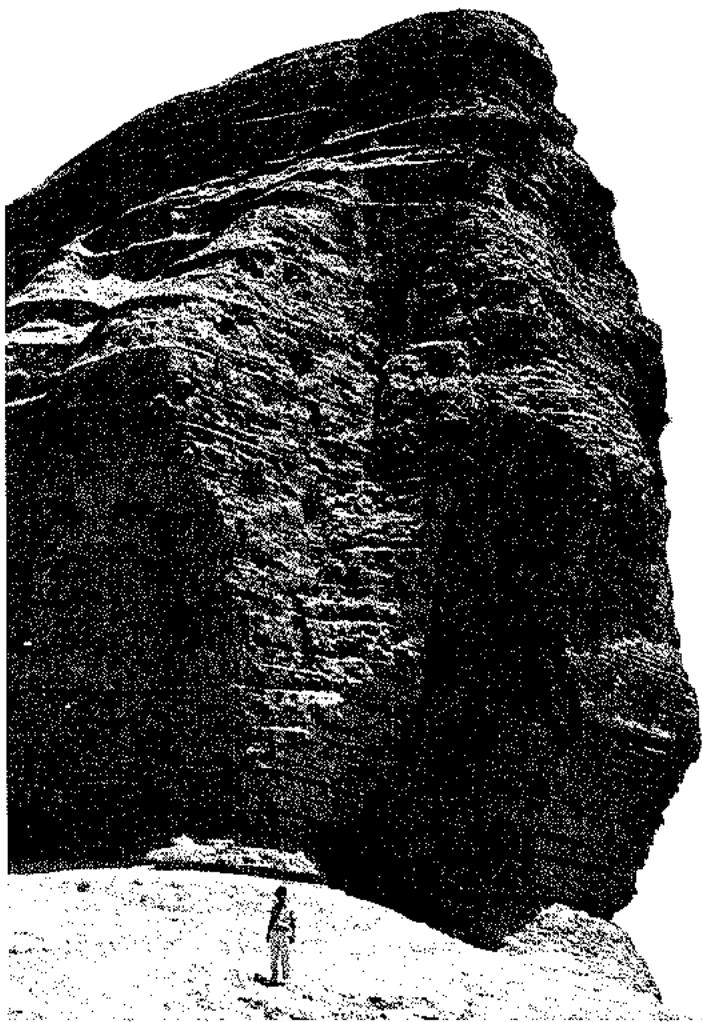
Agargouf 지구렛의 건조연대는 1438~1412년 BC Kuzigalza 1세때 건립 되었으니 지금부터 약 3천4백여년전이다.

복원·보수 작업은 1942년부터 시작하였다는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데 놀라왔다.

이 Agargouf 지구렛의 규모는 현존하는 높이가 57m 이고 아마 Originally 70m 높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지구렛의 저층 저변부에는 복원된 모습이며, 사진에서 보듯이 경사로 위의 사람의 크기로 보아 그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지구렛은 오랜세월에 외부면은 거의 모두 떨어져 나가고 내부의 허물어진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⑥ 올라다본 Arch부
- ⑦ Arch좌측 벽 상세
- ⑧ Ziggurat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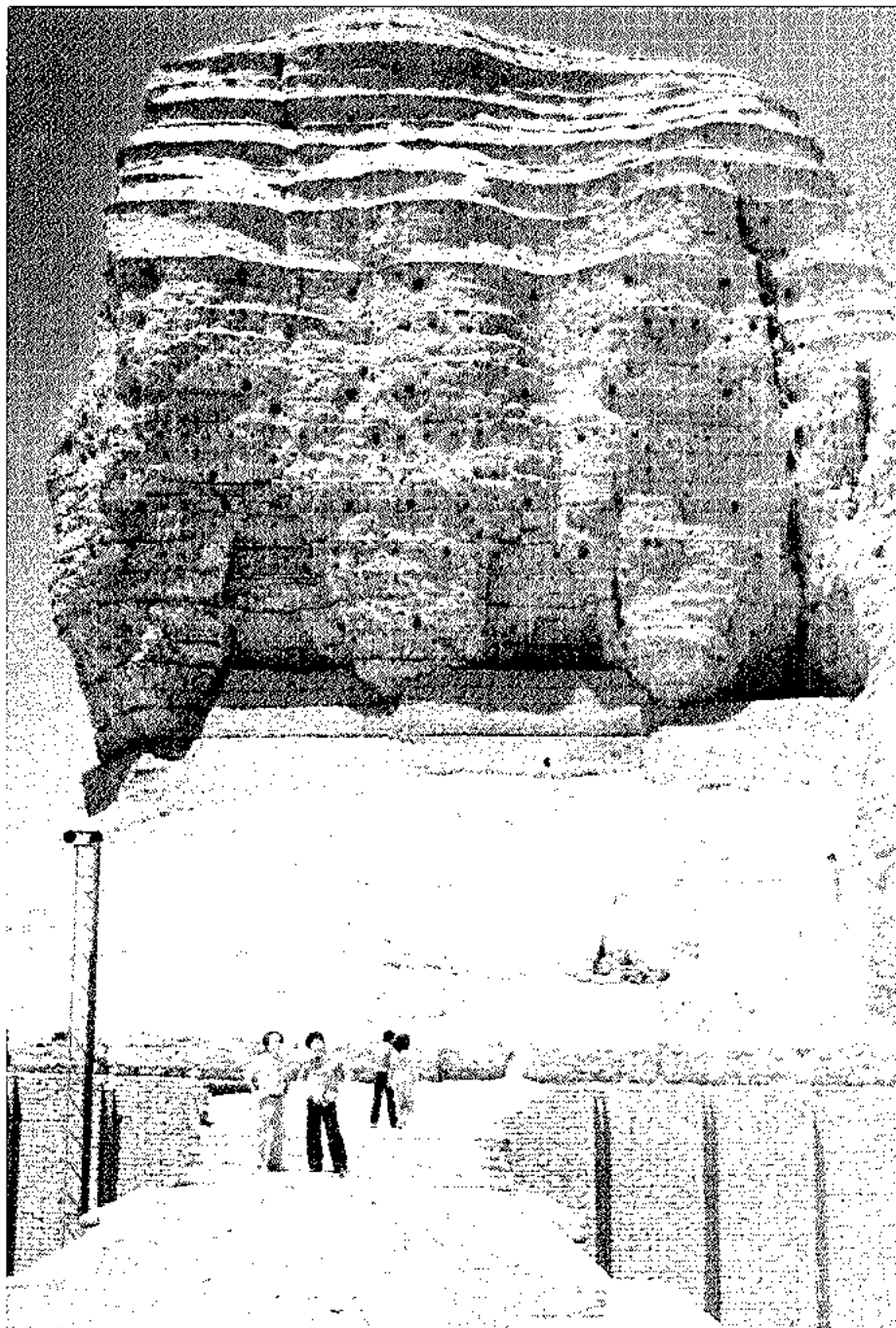
경사로를 따라 중간 높이까지 올라가 볼 수 있어서 허물어진 단면의 벽을 가까이서 유심히 살펴 보았다.

여기서 이 허물어진 벽들 단면에서 거대한 벽돌조적 건축의 견고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만약 이 거대한 건조물들이 흙이 아니고 돌이나 쇠로 만들어 졌었다 하더라도 3,4천년 동안에는 썩고 허물어져 버렸을 것이다. 3천5백여년전에 흙으로 만든 건조물이 땅속에 묻혀 왔던 것도 아니고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에 지금까지도 견디어 오고 있는 그 비법, Know How 는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첫째, 신축층을 만든 것이다. 지푸라기와 흙을 섞어 일정한 높이마다 신축 방지층을 반복하여 설치해 놓았다. 사진에서 보듯이 수평으로 줄눈이 일정하게 죽 나있는 것이 바로 신축층인 것이다. 사진의 실물 규모가 커서 줄 눈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니 신축층의 두께가 벽돌 2장정도 높이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축층간의 간격은 매 벽돌 7단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건축 교과서에 벽돌공사시 7단마다 연결 철물이나 연결 벽돌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사실이다. (단 벽돌 한 개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벽돌의 크기보다는 크다) 그렇다면 벽돌 매 7단마다의 시초가 3천5백여년 전에 지어진 이 Agargoul 지구렛으로부터나 그 이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⑨ 사진에서 보이듯이 벽체 단면에 여러개의 구멍이 보인다. 이것 또한 수천년 견고히 버티어온 비법 중의 하나인 환기구인 것이다.

여 자연환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습기가 차고 곰팡이도 끼고 부식하여 몇 천년건디지 못하고 썩어 허물어졌을 것이다.

⑩ 하부벽체

⑪ 하부벽체에서 본 Ziggurat of Agarguurf

⑫ Ziggurat에서 관광객과의 기념촬영

출벽들 매 7단마다 신축 방지층을 설치해 놓은 것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3천5백년간이나 견고히 건디어온 비법중의 하나이다.



⑪

⑫

이 신축층은 수평으로 완전히 전 건조물에 관통되도록 나있었다. 이러한 신축층이 없었으면 벌써 균열이 일어나서 파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축층의 비법은 그 후 중세 건축의 벽돌조적조의 압면에도 가끔 나타나듯이 그 비법이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의 비법은 "환기"라고 생각된다.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벽체 단면에 수없는 구멍이 보인다. 이것은 환기용 구멍으로서 남북과 동서 방향으로 건조물을 완전히 관통하여 나있는 것으로 보였다.

만약 이 자연환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습기가 차고 곰팡이도 끼고 부식하여 몇 천년이나 건디지 못하고 썩어 허물어졌을 것이다. 수천년의 오랜 세월에 건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이 자연환기인

것이다.

건축사란 축적된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의 건축사는 인류 최초의 고대문화이며 건축사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적된 경험들을 잘 계승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으로서 우리와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3천5백여년 전에 그것도 흙으로 만든 지구렛이 지금까지 남아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의 경주 석굴암은 불과 1천5백여년 전에 그것도 돌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은 2중으로 밀폐해 놓고, 전면에는 유리창으로 막아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죽은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도 속의 돌에는 습기가 차서 썩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원래 지혜로운 우리의 선조가 돌틈

사이로 자연환기가 되도록 만들어져서 1천4백여년 동안 지내오던 것을 일제시대 보수때 돌 틈 사이의 틈을 메꾸어 버렸고, 다시 광복 후 근래의 대규모 보수때 모두 파헤쳐서 돌을 2중으로 차단시키고 온·습도, 환기조절 등 기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려는 데서 더욱 큰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

일천 사백여년간 지내오던 문화유산물 당대에 와서 버려놓은 것이다.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여 기계적 물리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현대건축에 좋은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기계적인 해결 그것이 몇 백년이나 가겠는가 자연의 섭리는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建築法 改正方案에 관한 討論會



제2과제

국민의 편익증진 도모

좌 장/金熙春(서울대 명예교수)

발표자/李在玉(건설부 건축계획과장)

토론자/李宗輝(본협회 법제위원)

金性一(부산시 주택지도과장)

崔燦煥(서울시립대 교수)

김희춘: 제2과제는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는 건설부 이재욱건축계획과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욱: 이번 건축법 개정에 있어 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중 발행하는 설

계변경에 대해서는 준공전 일괄처리토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공사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하여 고발되거나, 철거당하는 등 불미한 사례가 많았고 또한 부조리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중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내용의 경중에 따라 준공검사에 일괄하여 설계변경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허가에 따른 조사·검사업무의 민간기관대행을 확대해 나갈 것 입니다. 현재 소규모 건축물의 조사 및 검사업무를 허가기관 대신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와 국민 편익제고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구조, 설비, 높이 등에 대한 조사·검사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및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벌칙과 지정 취소등의 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에 의해서 인·허가 면제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건축허가에 의해서 擬制되고 있는 인·허가 대상이 도로 점용허가, 보수정화시설 설치 신고 등 4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제고에는 미흡하여 개선을 위해 현행 4종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 등 9종을 추가해서 이를 총14종으로 확대하여 One Stop Service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업: 건축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진취적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4조의 건축행정에 필요한 대행업무를 민간기관이 대행하는 것은 획기적인 방안으로 볼 수도 있으나 법 개정의 성격을 보면 이윤배반적 모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허가 및 준공 검사(사용승인)의 관한 전체를 위임하지 않

는 이상 건축사법 제23조의 2에 의한 시행제도의 성격과 다를 바 없으며 민간기관이 행정관서가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라는 내용으로 건축사법에 의해 규정한 것을 건축법으로 달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항의 시행방법과 절차등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상호 관계되는 법 조항의 취지와 목적에서 상충과 모순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현행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조사 및 검사대행업무는 국민의 편익에 기여한 바 크나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보다 행정편의 목적에 이용되었는데 이 조항은 일정규모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각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단체, 건축사협회나 건축시공감리회사에 위임하여 전담시키는 한편 이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성실의무를 다하도록 벌칙과 지정 취소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및 준공검사에 대한 행정 대행업무를 민간 기관에 위임하는 데 있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건축법으로 규정하려 하는데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상당한 무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별도기구를 확대 설치하는 데 있어 행정수속과정의 이원적 구조의 모순은 오히려 건축주나 건축사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또한 수속절차가 2단계로 뒀을 때 혼란이 야기되며 국민은 감리비를 지불하고도 민간대행기관에 대행수속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할 것이고, 허가과 준공에 대한 업무대행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기관에 음성적으로 설계와 감리를 위탁할 소지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설계는 건축사가 하더라도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대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의 기득권을 이 조항에서는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자율적인 업무 활동을 구속하고 창작의욕을 쇠퇴시키며 건축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대행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위 위주로 건축사를 처벌하여 왔는데 이 법안도 역시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책임과 처벌에 대한 형평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행정관서가 일방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건축사는 타의에 의해 불법건축물에 연루되는 어려움을 겪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편익 측면에서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술규정의 체계강화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주택정책도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기술규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최저의 기준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관련법령은 제도적 기준이 경직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법기준은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미흡할 뿐 아니라 국가 기본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편익
국민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규정의
체계강화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주택정책도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기술규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최저의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다.

조사 및 검사대행업무를 그동안의 시행과정을 통해 제도의 불합리를 체계화하여 보완하지 않고 행정편위위주로, 막연하게 법으로 허가과 준공을 위한 대행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등의 급변적 운영으로 제도가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실효성을 얻으려 하는데는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업자 또는 면허소지자 선정등의 책임시공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위법방지에 있어서 행위자와 대행자

의 처벌의 공평성을 잃고 있는데 행정질서를 위해서라도 처벌의 규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실한 행정방향은 위법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성일 : 지금까지의 법들은 이론적이었기 때문에 일선 행정처리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즉 건축주의 재산권과 미래지향적인 도시 건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설계변경등의 업무처리중 일선 건축직 공무원들은 정제 위험을 겪어 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 현실성, 지방자치성 등의 문제를 고려한 내용인 것으로 환영합니다. 즉 공사중 설계변경에 대한 준공전에 일괄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현행 건축법상 설계변경 허가신청은 변경부분의 사전공사를 하지 않고 설계도서를 작성, 허가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계속중인 공사의 경우 그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하므로 인력, 장비, 자재 등을 완전 준비하여 시공중의 단계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사전검토 보고(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소규모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2층이하로서 연면적 1천㎡ 미만인 근린생활시설)의 조사 및 검사업무를 허가기관 대신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 국민편익 제고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이 2종의 과정을 거쳐야 되므로 상호간의 책임회피 및 처리시간 지연등의 민원이 발생하므로 건축사가 일괄처리하여 관할관청에 보고토록하고 위법방지를 위해 위법시 응분의 조치 즉 벌칙 및 지정취소등의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의한 관련규정 인·허가 면제대상 확대는 건축허가에 의하여 擬制되는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대상이 도로점용 허가, 오수정화시설설치 신고 등 4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절차간소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공이 미흡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One Stop Service 체제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취급자의 전문성 결여, 주무기관과의 협의시 협의기간 지연, 책

임회피, 고유업무의 중사 등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중간검사에 있어서는 실제 3층이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기초공사시와 단열 시공시에 2회에 걸쳐 중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 중간검사제도의 목적은 완벽한 시공과 위법건축물 예방에 있으므로 이의 목적에 부합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검사자를 공무원으로 하지말고

설계자, 시공자, 관리자가 겸사하고 사진 첨부하여 허가청에 연대 날인하여 보고토록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최찬환 :국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몇가지 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 Service 의 제고방안입니다. 지

금까지 수동적, 규제중심, 민간 건축의 감독 위주로 된 제도를 대민봉사 행정제도로 일대 전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읍·면 단위에서 건축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과 전문인력 확충, 기구조직의 개편으로 규제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행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번거롭고, 행정편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토지형질변경,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도로점용 등 건축허가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건축허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로 건축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위건물의 규제보다는 집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토질변경허가등 현실적으로 모순되어 있거나 비합리적인 지적에 관련된 규제가 건축에 제한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독의 지구상세계획에서처럼 대지내의 건축가능지와 건축불가능지로 구분하여 지적선과 건축물 형태와는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공사중의 설계변경은 감독하기 어렵고 준공검사 단계에서 표출되기 때문에 준공전 일괄신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건축허가에 따른 조사, 검사업무는 자율성과 공정성을 갖춘 엄정한 집행감독 아래 민간기관에 위임하여야 기술적, 전문적, 객관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신고 등 뿐만 아니라 각종 심의등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희춘 :수고 하셨습니다. 제2과제에서 이종엽회원은 조사 및 검사대행업무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연계해서 개정하여야 하며 건축법과 타관련 법규와의 관계조화에 중점을 두어 발표해 주셨으며, 김성일주택과장은 이제 관위주의 검사업무를 지양하고 건축주, 건축사와 시공자의 책임하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지적이었으며, 최찬환 교수는 지적사항들은 행정면에서 개선되어야하며 개별적 규제보다 집단규제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발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과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 설계변경에 따른 사전검토 보고(안)

○ 主要變更內容

變 更 前	變 更 後	備 考

○ 關係法 檢討

關 係 法 令	變 更 內 容	適 法 與 否	備 考
① 建築物의 높이制限 通法 (法 第41條)			
② 建 蔽 率 檢 討 (法 第39條)			
③ 構造 安全의 確認 與否 (令 第16條)			
④ 垜地안의 通路 (令 第46條)			
⑤ 垜地안의 空地 (法 第41條의2)			
⑥ 垜地안의 避難 및 消化에 必要한 通路 (令 第45條)			
⑦ 防 火 區 劃 (令 第30條)			
⑧ 容 積 率 (法 第40條)			
⑨ 日照權等을 위한 建築物의 높이 제한 (令 第90條)			
⑩ 地下層 設置 (法 第22條의 3)			
⑪ 消防法關係 및 各種 設備 關係			

1990. . .

上記와 같이 檢討結果 設計變更하여도 法令 抵觸이 없어 變更內容과 같이 施工하고 事後 設計變更 許可申請코자 합니다.

施工者
監理者

印
圖

정이라는 측면에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도입과 분쟁조정기구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불합리하고 무질서하여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은 건축분쟁의 조정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예고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수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여 집단적 분쟁을 예방한다는 명분론적 측면에서는 대다수가 긍정적이나 실제적인 면에서 건축법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인근주민의 사전인수적 일방적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선진민주화된 외국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위험부담이 크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건축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양분론적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우선적으로 건축행정의 공개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사전예고제가 필요할 것이며, 시민들의 사전인수적 일방적 피해의식 또는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이해 관계의 한계를 정하기 위해서도 건축분쟁 조정 방법등의 개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박영기 :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매우 발전적이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됩니다.

첫째, 대형건축물의 허가시 사전예고제 도입입니다. 민원의 발생지역은 주로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건축물도 공동주택, 골프연습장 등 민원 발생 소지 건물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민원으로 인하여 법외 준수가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민원인, 건축주 등으로 구성된 민원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허용오차 규정의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및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오차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시공오차를 허용하는 것을 악용하는 위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특수한 조건의 경우 건축기준의 탄력적 운용근거 설치입니다. 현행 건축법이 하드웨어 측면에 강조되어 있고 그 운용이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제안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노 : 수고하셨습니다. 제3과제에서 이제 옥 건설부 건축기획과장께서는 대형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시 인접주민의 민원청취제도를 도입한다는 문제와 오차허용기준의 설치, 특수한 경우 건축기준의 탄력적인 적용근거를 설치하자는 것을 주내용으로 발표하여 주셨으며, 이영희 토론자께서는 집단민원을 위한 설계계획을 사전예고하는 사전예고제에 관해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비관적이라 보고 공정한 위원회를 만들어 사전검토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양갑 토론자께서는 사전예고제가 좋겠고, 시공오차에 관해서는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일반기준도한 별도의 방침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과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 4 과 제

건축물의 사후관리 강화

좌 장 / 李光魯(서울대 교수)

발표자 / 韓昌燮(건설부 건축기과)

토론자 / 崔詢吉(인천시 건축과장)

都建孝(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실장)

李鍾敏(한국주택사업협회
사무국장)

이광노 : 제4과제 '건축물의 사후관리 강화'에 대하여 한창설 건설부 건축기과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창설 : 먼저 적법유지 상태에 대한 정기보고 강화 및 주요설비에 대한 정기 검사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법하게 유지 관리토록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군수에 게 유지 관리상태를 정기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준공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3년에서 2년으로 정기보고 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방화 및 승강기 피난설비 등 구조 안전 주요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감시원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업무의 실효성이 적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법 발생 건축물의 통계를 보면 90년 3월말 현재 23만 5천동에 달하고 있고 연간 건축사업비 25%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선 단속 건축직 공무원중에서 일정의 전문성을 가진 자를 건축 감시원으로 임용하여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여 실효성을 높이코자 합니다.

현재 위법을 자행할 시 소액으로 단 1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산시의 무허가 건축 및 신축, 개축시 30평인 경우 49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임대료 수입은 연간 2천만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과태료의 인상이 필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법시공자와 건축주의 처벌 문제에 관해서는 현행 처벌 대상은 건축주나 감리자에 국한되나 개정안에서는 시공자도 포함시켜 건축주와 감리자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현길 : 건축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법적 요인의 배제와 적법한 유지상태의 관리 기능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위법적 요인의 배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위법화된 현상을 법적으로 개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가설 건축물의 부분적 범위확대입니다.

현행 법 제47조 규정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재해복구라든가 홍행전람회 공사용 건축물등 임시용 가설건축물에만 국한하고 있어서 공업용 건축물인 공장내의 생산품이나 부품등을 야적하기 위한 구조물등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용

통성있게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둘째로 동별 준공제도는 현재 대단위 공장 등을 연차적 건설시 가사용 승인제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건축행정 건설화에 역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조정의무 면제규정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시행령에 조정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조경이 부적합시 즉 혹한기에 준공되는 건축물은 조경에 관한 조경예탁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고 준공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예탁된 금액에 대해 대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예탁된 금액으로 조경공사를 면제받는 대신에 준공후 조경지를 주차장등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네째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범위 확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존재하는 생활상의 현실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여야 할 분야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300㎡ 미만의 종교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합니다.

다섯째로 근린생활 복합시설의 용도신설입니다.

즉, 현행 주거지역내 2,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면제해주고 각종 근린생활시설중 특정용도(예: 대중음식점, 의원)가 일정면적(300㎡ 이상)포함되거나 혹은 각종 근린생활시설의 합계가 전체 일정규모이상(예: 1,000㎡ 이상)이 될 경우 근린생활 복합시설로 용도 분류케 되어 주차장법과 연계하여 주차장 설치대상 범주에 포함도록 검토함이 타당합니다.

건축물의 관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관리공단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주요업무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른 하자 보수 보증금(3/100)에치엄, 하자의 판별기능, 대형 건축물의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조사, 과태료 징수 업무입니다.

위법시공자와 건축주의 동시 처벌제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도건호: 정기보고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보고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검사기관의 선정으로 일관성 있고 공평한 평가 및 감시가 필요하며 개인 검사원일 경우 형식적 운영이나 주관적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기관의 전문성, 기술성 등 관리기술교육이 수행되어야



건축물의 사후관리라는 개념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법하게 유지 관리토록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종민

하며 정기보고 이전에 유지를 위한 기술적 참고서적, 매뉴얼, User's Guide 등의 형태로 기술지침 제공으로 정기보고 사항의 완벽을 기하는 동시에 지침구축을 위한 과감한 연구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벌칙강화는 바람직하나 금전적 벌칙보다는 사용제한 등의 엄격한 제한이 바람직 합니다.

시공자의 처벌을 포함시키려면 저질시공이 되지 않도록 시공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에 의한 사후조치 보다는 법제정, 개정시 사전 예방에 치중하는 법규, 행정지침 방향이 보다 바람직하며, 형식적이되기 쉬운 정기보고 보다는 검사기관에

의한 적극적 정기·비정기 감시가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민: 건축물의 사후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법하게 유지 관리토록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적법 유지상태에 대한 정기보고제도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하는 것은 시장·군수에게 독자적인 유지 관리에 따른 기능과 인력보장이 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별로 의의가 없습니다. 또한 주요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건축물의 중대한 위험에 영향을 주는 최소한의 설비로 축소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감시원제도의 도입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부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건축 기법 및 자료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감시원으로 단속업무를 담당케 하지 않는 한 실효성 없는 민원만 더 야기시킬 우려가 더 크므로 신축 준공검사이 철거를 기하도록 이를 강화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관리자와 시공자에게도 처벌을 강화하여 신축 또는 사후 위법건축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광노 : 수고하셨습니다. 제4과제에서는 한창설 건설부 건축계획과 건축기좌에서 건축물의 사후관리강화에 대해 발표해 주셨으며, 최현길 인천시 건축과장께서는 동별 준공제도의 확대와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야 하며, 용도변경시 사후조정 및 관리를 관리 공단측면에서 맡았다고 위법시공자와 건축주를 동시에 처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으며, 도전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실장께서는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법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종민 한국주택사업협회 사무국장께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관리자 또는 시공자 모두에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4과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5과제

건축물의 미관 및 질향상 도모

좌 장 / 李光魯(서울대 교수)
발표자 / 李聖遠(건설부 건축기획관)
토론자 / 姜泰錫(본협회 이사)
申基赫(명지대 교수)
崔榮澤(현대산업개발(주)
계획설계부장)

이광노 :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5과제 건축물의 미관 및 질향상도모에 대하여 이필원 건축기획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필원 : 첫째, PUD(특별주택사업구역)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행 신도시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 도시에도 적용하여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일단의 단지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그 지구의 특성에 맞는 건축기준을 사업자와 허가청의 협의를 통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선진국형 도시를 만

중규모
건축물은
건설법에 의한 소유권
시공자가 건축공사로써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대한 시공자격 등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
물의 공사는 건축기사, 건축사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장·
군수에게 등록한 자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설치
하려고 함.

들 것입니다.

둘째, 도시설계제도를 보완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에도 도시설계수립 과정에서 도로 변경, 지구조정 등 경미한 도시계획 사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擬制 조항이 없어 효과적인 도시설계의 수립이 어려우므로 도시설계 지구내에서는 경미한 도시 계획법상 용도지역 및 지구의 조정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병행등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擬制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설계 지역내의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심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유도제도를 마련코자 합니다. 일정 요건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공중이 이용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과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규정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감리입니다. 중규모 건축물(주거 용도 200평, 기타용도 150평 이상)은 건설법에 의한 시공자가 건축공사로써 규정되어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격 등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는 건축기사, 건축사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자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강태석 : 먼저 도시설계 제도의 보완정비가 필요합니다.

도시설계 구역내의 대지 소유주들은 용도 제한의 해제, 공동개발의 해제, 특별사업(설계)구역의 해제등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킬 것

입니다. 따라서 도시설계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 관련공무원, 도시계획가, 건축전문가, 대지소유주, 유관전문단체들을 참여시켜 충분한 토론과 검토, 수정, 보완후에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도시설계에 따른 건축물의 규제로 건축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동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건축주 상호간 이해문제, 설계의 경직성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설계 구역내에서 개발을 촉진, 유도키 위해 시행자에게 전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법정 조정면적 등의 완화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사업구역의 설정으로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설계의 규제조치를 강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위임함으로써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도심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 유도제도에 있어서 일정요건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확보한 건축법에 대하여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개선안은 찬성하나, 추

도시설계에 따른 건축물의 규제로
건축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동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건축주 상호간
이해문제, 설계의 경직성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가 용적률 부여로 건축물이 대형화 될 경우, 건축물 자체의 주차장 설치는 건축법에 준하여 확보된다 하더라도 주변도로의 통행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매연, 소음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전문가의 참여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특별주택사업 구역제 적용대상 확대는 일괄적으로 다수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개발후의 장·단점을 계획초기 단계에 점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심부에 주거겸용 복합건물을 허용하고, 도심시설의 정비와 유효이용 도모, 도

심부에서 직장과 주거근접을 촉진함으로써 교통난을 완화, 혼합용도 지역의 순화와 도시구조의 재편성을 도모하는 등 주택단지 개발에 세심한 법적 배려가 요구될 것입니다.

네째로 현행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사 대행 감리제도는 대체적으로 법규저촉여부에만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불법,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감리자인 건축사에게 적법한 절차의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등록 또는 면허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국민주택 규모이상(85㎡~165㎡)으로 하향조정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설계 및 준공도서를 비치하게 하여 제3의 건축주로 하여금 증·개축, 수선등에 참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신기철 : 금번 건축법 개정안중 도시설계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측면은 부분적으로나마 독자성과 권위주의의 범접선에 바탕을 둔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도시설계의 직분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들-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하기위한 도시설계인가 하는-에 대해서 아직은 이론과 실천, 전문계와 시민사회에 두루 걸쳐 「규범적 공감대」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듯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위 도시설계제도의 처방적 개선 내지는 부분적 확장을 기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환경의 미관과 질을 고양한다고 하는 도시설계 본연의 의의를 달성한다기보다도, 6공화국 건설정책에 편승할 독과점 건설자본의 활성화에 일익을 줄, 소위 공자유착(Public-Private Coalition)의 제도적 장치로서 원용될 것이 우려됩니다. 도시설계와 관련한 금번의 법 개정은, 6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 시행되어져온 특별용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 District) 및 계획단위 개발기법(Planned Unit Development)의 부분적인 선진제도와 선진규범의 도입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설계의 운용은 「조장적, 권장적 제어방식」이어야 하며, 「국민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택 : 도시설계란 공공이 도시의 형성과정에 대해 관여하고 간섭하는 행위로서 그 개입의 방법상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하여 규제하

는 금지위주의 방법이 있고,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각종 사업법에 의해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개발된지 오래된 지역은 도시설계대로 될 수 없습니다. 도시설계에서 제한하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권을 보상받기 위해 개발당사자가 공공기능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요구했을때, 또 이미 내용이 확정된 도시설계안과 재산권 침해로 받은 시민들과의 대

도시설계의 적용은 서로이 개발되는 지구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시가지에는 기 확정된 내용의 수정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개공지의 형태는 일정요건에 적합한 공개공지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형태 속에 공공의 성격이 강한 건축물 내부의 공간, 지하보행 통코스, 연결통로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를 증대하고 협상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 합니다. 또한 인센티브는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로 구체화될 것인바, 현재 도심지에서 용적률의 한계는 1,000%이나, 마포로 재개발지역과 같이 고층화된 건축물이 밀집된 곳을 보면 평균 용적률이 70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너스로 용적률은 1,300%까지 완화하였다 해도 이를 실제 설계상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유도책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에 의한 사전제한, 조정면적에 관한 규정, 옥외에 필요한 주차면적에 관한 규정 등이 추가로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설계의 적용은 새로이 개발되는 지구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시가지에는 기 확정된 내용의 수정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개공지의 형태는 일정요건에 적합한 공개공지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형태 속에 공공의 성격이 강한 건축물 내부의 공간, 지하보행 통코스, 연결통로 등도 포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Open Space가 주변의 도시구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 주택사업구역제 적용의 확대는 일단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단지를 계획하는 측과 개발을 시행하는 측 사이에 입장이 상이하여 민간부분에서의 무작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증대되고 부대복리시설간에 경쟁이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변칙적 시설 운영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획단계에서 의도된 내용에 비교적 충실한 개발을 위해서 규제를 통합화하고,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케 하기위해 개발단위를 대형화한 계획단위 개발이 필요해 집니다. 그러므로 슈퍼블럭과 도시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전체의 스카이라인 및 슈퍼블럭까지의 교통등 큰 골격을 다루고 각각의 슈퍼블럭에는 건축가가 작업시 고려해야 할 요구조건들을 작성하여 큰 도시설계의 테두리 속에서 건축가의 작업으로 창의성과 풍부한 건축적 표현을 얻어야 합니다.

이광노 : 감사합니다. 제5과제에서는 건축물의 미관 및 질향상 도모에 관하여 이월원 건설부 건축기획관에서 발표해 주셨으며, 강태석 본 협회이사께서는 도시설계를 하게되면 군소지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등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와 공개공지 확보에 대해서는 휴먼스케일면에서 연구해야 하며 주거점용 복합건물도 특별주택사업구역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한 신기철교수께서는 도시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과 지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고 국민을 위해야 하며, 정책입안과 시행절차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택 현대산업개발 계획설계부장께서는 도시설계를 하는데 있어 규제가 아니라 재산권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안 개선, 인센티브와 현실적 제한, 특별주택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슈퍼블럭과 같은 것은 합동회사로 하여금 단일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과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3,066호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

1990.8.8

□ 改正理由

自動車の 급격한 増加에 비하여 駐車場の 増設이 이에 따르지 못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都市駐車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停車場法の 改正(1990.4.7 法律 第4320號)에 따라 駐車專用建築物에 대한 建築規制를 緩和하고, 路外停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團地造成事業의 종류와 規模등을 정하는 한편, 附設停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施設物의 종류를 확대하고 그 設置基準을 強化하는 등 現行規定의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停車場整備地區 안에서 駐車專用建築物을 建築할 경우 당해 建築物의 建築率・坪地面積의 最小限度 및 容積率은 그 범위를 정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委任함으로써 당해 地域의 實情에 맞도록 함(令 第2條 第3項).

나. 일정규모이상의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할 경우에는 반드시 路外停車場을 設置하도록 하였는 바, 당해 團地造成事業의 종류를 宅地開發事業・都市再開發事業 등 8個事業으로 하고, 그 규모는 都市交通整備 促進法施行令의 規定에 의한 交通影響評價의 對象이 되는 규모로 함(令 第4條).

다. 建築物외에 事實上 駐車需要가 많은 골프練習場・屋外水泳場 등의 施設物에 대하여도 附設停車場을 設置하도록 하고, 附設停車場의 設置基準은 정함에 있어 현재는 일률적으로 施設物 面積만을 基準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施設物 面積외에 호텔의 客室數・病院의 病床數・競技場의 收容人員 등의 施設利用者를 基準으로 하여 附設停車場 所要面積을 算定하도록 함(令 第6條 第1項).

라. 附設停車場의 設置基準을 地域實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基準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地方自治

團體의 條例로 이를 強化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人口 50萬 미만의 都市의 경우는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基準을 緩和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第2項).

바. 車輛通行 금지 또는 주변의 土地의 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停車場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施設物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停車場의 位置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당해 施設物의 設置基準을 초과하는 附設停車場에 대하여는 당해 停車場의 用途變更을 例外的으로 허용함으로써 民願解消 및 建築物 등의 이용增進을 도모함(令 第12條 第1項).

마. 停車場을 設置할 때 占用料 減免 對象이 되는 公空施設은 현재에는 道路・公園・廣場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學校・運動場・河川・溜水池・公用的 聽舍 등에 대하여도 이를 확대하여 民間資本 유치를 통한 停車場 設置를 촉진함(令 第13條).

주차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정비지구) ①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업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및 그 주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준공업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축출물의 건폐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폐율 : 10분의 9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3. 용적률 : 1천 300퍼센트이하
- 제3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
 2.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계획의 결정
 3.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제4조(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등) ①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산업기지개발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한다.

2. 사업의 규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로 한다.

②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의 규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교통영향평가서에 정하여진 주차장의 연면적중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2. 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13조의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방법에 의한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공용 중지등의 신고)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노외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노외주차장의 공용의 중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4일전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2. 노외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의 내용. 이 경우 공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중지의 예정기간 또는 폐지의 시기

6.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공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취지를 노외주차장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에는 3분의 1의 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③주차장정비지구·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0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8대의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

③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

2. 부설주차장의 각 시설물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3. 부설주차장의 형태

4. 부설주차장 설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공사착수년월일 및 준공예정년월일(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도서(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제8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8대이하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서에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부지에 대하여 자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주차장설치의무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전 60일 이내에 평가한 토지가액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시설물의 준공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2항의 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설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차장설치 비용의 납부등)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기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시장·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교부할 때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이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 당해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하거나 기타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주차장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①법 제19조의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시설물”이라 함은 주차정비지구내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관광진흥시설·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을 말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설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의 장소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설치비용의 절감이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각 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서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의 장소에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하게 하거나 당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1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④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판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그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위치
2.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주차장 설치명령을 하는 사유
4. 주차장의 설치규모
5. 주차장의 설치기간
6. 기타 주차장의 설치와 관련되는 사항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주차장설치계획서나 설치면제신청 및 비용납부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①법 제19조의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 후에 이를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차장이 사용 개시될 때까지 이에 대체되는 주차장을 당해 부지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시장·군수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한다.

2. 시장·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 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한다.

3. 시장·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당해 노외주차장의 설치일부터 10년간 면제하고, 그 면제기간이 후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용의 청사·하천·유수지·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제14조(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2. 시장·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시장·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도시계획세징수액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될 금액) 법 제21조의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은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로 한다.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

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발하는 이유
4. 조치를 요하는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내용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②시장·군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준용)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중 일반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2조 내지 제18조·법 제22조 내지 제25조 및 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①시장·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된 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한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 4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존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부설주차장이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분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 시설물 또는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되는 경우에는 별표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된 부분에 한하여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1]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외 시설물
숙박시설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기타 부대 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인 시설물
의료시설	종합병원	3병상당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외 시설물
운동시설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기타 지역 : 시설면적 2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인 시설물
관람집회 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50인당 1대
	예식장	시설면적 60㎡당 1대
	기 타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 면적 6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외 시설물
	역·준주거지역·준공업 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 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운수시설	공항시설·버스터미널·철도역 기타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기타 지역 : 시설면적 250㎡당 1대
판매시설	백화점·쇼핑센터 기타	면적 8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위락시설	유흥음식점 기타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 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업무시설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 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종교시설·전시시설·통신촬영시설·창고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단독주택	건축면적 300㎡이하의 1대, 건축면적 3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300㎡를 초과하는 200㎡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200㎡미만인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면적 150㎡당 1대	면적 150㎡미만인 건축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외 시설물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1천㎡미만인 시설물

- 비고 : 1. 시설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말하고, 하나의 부지안에 2개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연면적은 이를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부표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산정한 설치기준 대수를 합한 대수를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대수로 한다.
4.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의 당해시설물의 각 용도별 기준으로 하고, 시설물이 증축된 경우에는 증축후의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대수중 소숫점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6.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카페·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판매시설·창고시설·운수시설 및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9.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당해 시설의 부설주차장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자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되, 대수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2] 위반 행위별 과징금액(제17조 제1항 관련)

〈내용생략〉

新入會員

NEWLY ADMITTED MEMBER



金雲玉(52年)
한림공고 건축
동성건축
제주 삼도 일동 558-7
56-5997~8



金英奎(61年)
경기공업개방대, 중앙대학원
영건축
경기 의정부 의정부 421-11
45-1600-1



韓奉烈(57年)
홍익대 건축
청맥건축
서울 강남 논현 60-12
514-7942~3



徐錫根(56年)
한양대 건축공
서정건축
서울 은평 대조 2-9
354-8018~9



李奎玉(55年)
홍익대 건축
珍補건축
서울 은평 녹번 131-77
384-1721



韓京浩(58年)
한양대 건축
예창건축
서울 마포 도화 205-14
714-7742



李相任(61年)
울산대 건축
仁宇·연미건축(종합)
서울 강남 청담 76-6
540-6540



金容成(57年)
대림공전 건축
새담건축
서울 도봉 상문 423-47
996-8834~5



金寅浩(58年)
부산공고 건축
김인호건축
부산 해운대 중1동 1378-92
741-5848



鄭鍾泰(57年)
대전공대 건축공
다들건축
대전 중구 대흥 492-2
26-4273



林裁勳(57年)
서울시립대, 연세대학원
내외그림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747-24
557-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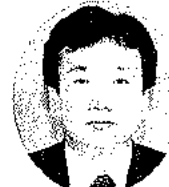
韓鎭鎬(57年)
전남대 건축
중원요셉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254-4
545-3075



高泰河(59年)
전북산업대 건축
고태하건축
제주 삼도 553-8
56-3144



朴晟鎬(32年)
철도고 건축
성일건축
경기 안양 관양 1504-7
78-0070



李 梓(54年)
중앙대 건축미술
미건사건축(종합)
전북 전주 진북 363-5
76-1669



宋奇成(24年)
전주공고 건축
부민·공간건축(종합)
전북 전주 서노송 602-3
84-7455



崔完好(54年)
서울시립대 건축
예소건축
서울 마포 서교 465-2
338-6326



尹文壽(52年)
연세대 건축
(주)서울건축(종합)
서울 영등포 여의도 35-4
783-7563



金英培(57年)
한양대 건축공
김영배건축
충북 옥천 삼양 222-32
32-5452



韓南洙(54年)
조선대 건축공
토문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82-20
515-5001~3



崔斗鎬(52年)
청주대 건축공, 한양대학원
토문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82-20
515-5001~3



崔基澈(57年)
충남대 건축공
토문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82-20
515-5001~3



尹駿變(54年)
중앙대 건축공, 同대학원
광익건축
서울 성북 보문 105-1
926-5414~5

7월 전국도서신고현황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89년도	1990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959,540	3,311,922	1,352,382	69.02%
	부산지부	658,834	811,282	152,488	23.14%
	대구지부	321,327	543,811	222,484	69.24%
	인천지부	435,296	1,207,398	772,102	177.37%
	경기지부	1,505,812	3,651,844	2,146,032	142.52%
	충북지부	328,635	414,955	86,320	26.27%
	충남지부	212,637	599,293	386,656	181.84%
	경북지부	527,148	694,853	167,705	31.81%
감소지역	경남지부	895,375	1,417,674	522,299	58.33%
	광주지부	405,353	292,010	(113,343)	-27.96%
	대전지부	541,588	199,120	(342,468)	-63.23%
	강원지부	374,462	318,059	(56,403)	-15.06%
	전북지부	462,700	392,301	(70,399)	-15.21%
	전남지부	325,826	321,325	(4,501)	-1.38%
합	계	9,069,094	14,280,467	5,211,373	57.46%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7월분 9백6만9천94㎡보다 57.46% (5백21만1천3백73㎡) 증가한 1천4백28만4백67㎡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7월 누계 5천8백13만6천9백1㎡보다 41.12% (2천3백90만4천2백98㎡) 증가한 8천2백4만1천1백99㎡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6월분 1천3백58만9천5백34㎡보다 5.08% (69만9백33㎡) 증가한 1천4백28만4백67㎡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 별	6월분	7월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1,360,885	1,674,548	313,663	23.05%
다 세 대 주 택	852,733	1,406,506	553,773	64.94%
연 립 주 택	172,873	231,978	59,105	34.19%
아 파 트	5,674,849	4,543,680	(1,131,169)	-19.93%
근린생활시설	2,705,430	2,879,579	174,149	6.44%
종 교 시 설	119,082	78,712	(40,370)	-33.90%
의 료 시 설	41,372	78,808	37,436	90.49%
교육연구시설	224,022	300,808	76,786	34.28%
업 무 시 설	387,429	944,018	556,589	143.66%
숙 박 시 설	25,210	101,821	76,611	303.89%
공 장	1,317,618	1,224,737	(92,881)	-7.05%
기 타	708,031	815,272	107,241	15.15%
계	13,589,534	14,280,467	690,933	5.08%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7월 合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33,141	33,804	15,612,605	873	953	465,473	0	0	0	34,014	34,757	16,078,078
부산지부	9,193	11,205	6,547,318	2,123	2,720	378,932	343	366	241,028	11,659	14,291	7,167,278
대구지부	6,526	6,841	3,266,112	2,979	3,074	355,739	231	232	64,640	9,736	10,147	3,686,491
인천지부	6,728	7,861	5,326,400	351	456	150,042	138	175	53,481	7,217	8,492	5,529,923
광주지부	2,859	3,154	2,041,795	961	1,039	232,620	98	98	35,965	3,918	4,291	2,310,380
대전지부	2,971	3,210	2,307,069	374	375	109,346	625	629	152,509	3,970	4,214	2,568,924
경기지부	24,221	26,662	16,802,284	1,717	1,899	929,844	555	562	404,759	26,493	29,123	18,136,887
강원지부	3,676	4,388	2,301,998	900	1,055	294,887	116	123	26,450	4,692	5,566	2,623,335
충북지부	4,534	5,109	1,983,882	816	928	472,117	325	330	248,312	5,675	6,367	2,704,311
충남지부	3,439	3,654	2,338,419	860	867	342,198	195	195	138,079	4,494	4,716	2,818,696
전북지부	2,919	3,370	2,232,309	708	777	189,379	164	165	41,409	3,791	4,312	2,463,097
전남지부	3,879	4,580	2,611,443	1,155	1,360	334,562	148	153	57,011	5,182	6,093	3,003,016
경북지부	5,677	6,698	3,592,641	1,598	1,832	780,588	178	178	127,388	7,453	8,708	4,500,617
경남지부	10,240	11,600	6,760,287	2,440	2,768	875,543	237	240	151,411	12,917	14,608	7,787,241
제주지부	1,560	1,826	605,111	366	374	57,814	0	0	0	1,926	2,200	662,925
합 계	121,563	133,962	74,329,673	18,221	20,477	5,969,084	3,353	3,446	1,742,442	143,137	157,885	82,041,199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7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5,239	5,399	3,249,726	150	201	62,196	0	0	0	5,389	5,600	3,311,922
부산지부	1,581	1,838	727,151	284	332	53,430	50	56	30,701	1,915	2,226	811,282
대구지부	917	990	499,327	526	529	34,126	35	36	10,358	1,478	1,555	543,811
인천지부	1,505	1,724	1,182,227	59	64	23,119	12	18	2,052	1,576	1,806	1,207,398
광주지부	390	418	235,404	98	118	51,703	15	15	4,903	503	551	292,010
대전지부	395	419	145,926	49	49	15,030	116	116	38,164	560	584	199,120
경기지부	3,935	4,555	3,433,879	206	235	157,359	85	85	60,606	4,226	4,875	3,651,844
강원지부	521	624	284,646	123	140	29,394	16	16	4,019	660	780	318,059
충북지부	584	668	331,398	108	117	47,575	61	61	35,962	753	846	414,955
충남지부	496	545	453,160	156	156	65,244	43	43	80,889	695	744	599,293
전북지부	402	477	365,217	92	96	21,748	23	23	5,336	517	596	392,301
전남지부	550	654	281,453	160	194	36,145	12	12	3,727	722	860	321,325
경북지부	716	853	574,097	228	263	105,975	21	21	14,781	965	1,137	694,853
경남지부	1,520	1,722	1,217,372	303	378	189,723	26	26	10,579	1,849	2,126	1,417,674
제주지부	227	300	95,673	68	68	8,947	0	0	0	295	368	104,620
합 계	18,978	21,186	13,076,656	2,610	2,940	901,714	515	528	302,097	22,103	24,654	14,280,46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7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7,994	8,149	1,591,340	1,091	1,129	76,436	88	88	6,772	9,173	9,366	1,674,548
다 세 대 주 택	3,927	4,264	1,398,912	72	72	5,905	16	16	1,689	4,015	4,352	1,406,506
연 립 주 택	207	248	231,520	2	3	458	0	0	0	209	251	231,978
아 파 트	287	1,180	4,510,577	8	18	14,115	5	5	18,988	300	1,203	4,543,680
근린생활시설	4,900	5,053	2,683,717	578	599	113,501	263	264	82,361	5,741	5,916	2,879,579
종 교 시 설	83	100	52,279	48	52	22,257	12	12	5,176	143	164	78,712
의 료 시 설	13	13	62,400	10	11	13,625	1	1	2,783	24	25	78,808
교육연구시설	67	80	135,930	122	154	96,204	21	21	68,674	210	255	300,808
업 무 시 설	157	163	881,136	58	59	42,664	14	14	20,218	229	236	944,018
숙 박 시 설	42	44	86,967	21	21	7,322	7	7	7,532	70	72	101,821
공 장	519	857	815,026	270	402	362,912	38	46	46,799	827	1,305	1,224,737
기 타	782	1,035	627,852	330	420	146,315	50	54	41,105	1,162	1,509	815,272
합 계	18,978	21,186	13,076,655	2,610	2,940	901,714	515	528	302,097	22,103	24,654	14,280,46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7월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60,899	61,870	11,100,573	8,551	8,788	600,762	462	463	34,970	69,912	71,121	11,736,305
다 세 대 주 택	15,352	16,401	4,686,767	734	743	53,868	49	49	4,426	16,135	17,193	4,745,061
연 립 주 택	772	1,028	1,132,556	21	24	10,514	4	4	4,156	797	1,056	1,145,226
아 파 트	1,653	6,996	26,524,880	86	142	257,615	23	24	94,435	1,762	7,162	26,876,930
근린생활시설	31,913	32,656	16,252,732	3,752	4,193	793,803	1,637	1,649	539,546	37,302	38,498	17,586,081
종 교 시 설	654	747	416,322	375	419	157,563	50	54	60,071	1,079	1,220	633,956
의 료 시 설	58	62	133,757	63	71	74,456	29	29	24,463	150	162	232,676
교육연구시설	287	401	829,219	478	578	605,763	169	178	156,481	934	1,157	1,591,463
업 무 시 설	1,244	1,339	4,158,559	377	388	275,712	72	72	62,774	1,693	1,799	4,497,045
숙 박 시 설	598	644	1,253,105	157	161	64,582	74	74	164,364	829	879	1,482,051
공 장	3,387	5,646	4,871,106	1,679	2,566	2,160,204	341	379	394,213	5,407	8,591	7,425,523
기 타	4,746	6,172	2,970,097	1,948	2,404	918,242	443	471	204,543	7,137	9,047	4,088,882
합 계	121,563	133,962	74,329,673	18,221	20,477	5,696,084	3,353	3,446	1,742,442	143,137	157,885	82,041,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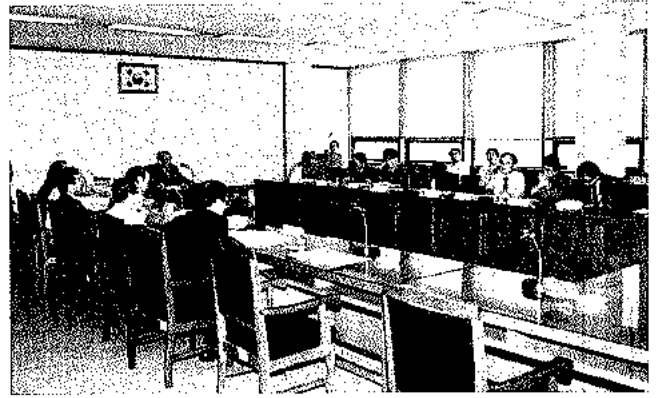
건축법 개정案에 대한 합동회의 개최

지난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건설부 관계자와 본협회 건축법 개정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법 개정案의 문제점 사정을 위한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本協會는 지난 7월2일 건설부 공고 제80호로 건축법 개정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건축법 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에 따른 Task Force Team 운영에 참여하는 한편 鄭煥鎬법제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건축법개정대책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허가 및 사

용승인 등의 민간기관 위임에 대한 개선”, “조사·검사업무 대행제도 개선” 등에 대한 본협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대책소위원회와 이사회등에서 정리된 개선안을 지난 20일과 23일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Task Force Team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건설부 초안에 대하여 건설부와 본협회의 이견 사항에 대해 중점토의한 이번 건설부와의 합동회의에서 토의된 건축법 개정案에 대한 주요 협의사항과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다.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건설부 합동회의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합동회의 토의내용

입안조문	건설부의견	본협회의견	조정 의견
제10조 [건축계획의 승인]	○ 당초 대형건축물 사전예고제 사항을 수정·보완, 건축계획 사전승인으로 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의 사전검토제를 반영한 것으로 ○ 2천년대를 내다 본 One Stop Service 개념에서 허가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 설치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다.	○ 안착한 자체는 건전하고 좋으나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는 건축계획을 사전승인 받고 또 건축허가를 받게 되므로 사실상 2중 허가제이다. ○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할 때 인접건물과의 분쟁방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하고 있다.	○ One Stop Service 차원에서 착안한 것으로 2천년대를 내다 본案임. ○ 대한건축사협회측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겠음.
제24조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등의 대행 등]	○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단체로 할 것을 요구하나 법의 체계상 모범에 민	○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는 설계 및 감리의 연장이므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가 하고 조사 및 검사업무는 타 민간기관에서 할	○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나 ○ 건축법에 기관을 명시한다는 것은 타법과의 형평상 법제처,

입안조문	건설부의견	본협회의견	조정 의견
제72조 [현장조사 및 검사자의 공무원의 제]	간기관을 명시할 수 없다. 다른 법의 경우를 보면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은 조사 및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로서 그러한 조직이 갖추어진 기관을 상상하면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은 알수 있다.	경우 감리와 검사기관이 상이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도시설계의 수립 및 작성에 있어서 도시설계는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로 명시하였으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대행기관을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단체로 명시 요망함.	법무담당관실에서 반대할 것이므로 어려움.
제30조 [건축감시원]	○ 건물준공후 용도변경, 불법증축등 위법건축물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건축감시원 제도를 신설함.	○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자에게 권한을 주는 대신 벌칙을 강화하자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기에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것이 신설된 것임. ○ 건물준공후 용도변경, 불법증축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 건물준공후 위법건축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야 함.	○ 대한건축사협회측의 추측과는 전혀 다르며 “공무원의 제조항”은 관계부처 협의시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입안조문	건설부의견	본협회의견	조정 의견
제64조 [도시설계의 수립 및 작성등]	○도시설계는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 공간의 활용에 관하여 작성하며 ○도시설계 정비기간은 10년으로 하였음.	○도시설계 작성시 건축물은 높이 및 용도로, 공공시설은 위치 및 규모로 기준을 정하여 작성하고 ○도시설계 제정비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	○도시설계 제정비 기간을 5년으로 하향 조정
제66조 [공개공지확보]	○임정규모 용도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통행인 등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공개공지를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으로 하여 공개공지의 개념을 확대코자함.	○공개공지를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으로 함
제19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자가 공사중 위반사항 발견하였을시 건축주, 시공사에게 서면 통보 사항을 적기에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 요망 ○“미시정시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보고” 사항에서 “지체없이”를 삭제 요망	○본협회 의견을 적극 수용 검토기로 함.
입법예고(안) 제19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사 등록]	○입법예고(안)에는 반영하였으나 건설진흥국에서 건설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삭제 하였음.	○건축법에 반영하였다가 건설법 개정시 반영하면 건축법에서는 삭제할 것.	○건설법 개정시 꼭 반영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임.

※ 굵은 글씨는 본협회 의견을 반영토록 합의된 내용임.

圖書奇贈

정성제일 고보 및 정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기술직 및 미군정청 건축서장을 지낸 바 있는 故 張然采씨의 遺品 圖書를 고인의 유지에 따라 차남 장한기씨가 지난 8월3일 본 협회 정보자료실에 기증

하였다.

이번 기증도서는 1918년부터 1938년까지 간행된 건축관련 도서 1백3권 및 조선총독부건축청사 사진자료 및 기타 사진도집 50매로서 건축계의 귀중한 자료들이다.

綜合建設業免許制 積極對處

— 本協會 決死反對기로 —

본 협회는 최근 정부가 UR협상의 일환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면허제 도입에 대처하기 위해 수시로 관계위원회의 개최와 임원협의회를 통한 협회의 대응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 협회의 기본대책으로는 “건축물의 시공(공사업)만을 전담하는 대형건설회사가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대응책이란 미명아래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설계와 공사감리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본 제도의 도입을 결사 반대 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와 관계요로에 접촉, 적극 대처기로 하였다.

본 협회의 본 제도 반대이유와 대정부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반대이유

- 대형건설회사가 設計・監理業務를 일괄 수행하면 기업이윤의 추가로 建築文化의 死藏 및 건축물의 질적 저하 초래할 수 있고,
- 건축물은 시공과 設計・監理業務가 반드시 분리 전제되어야 부실건축물을 방지할 수 있다.
- 기술용역의 육성정책에 역행하며 專門分野別 중소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 건축물은 인간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造形藝術 分野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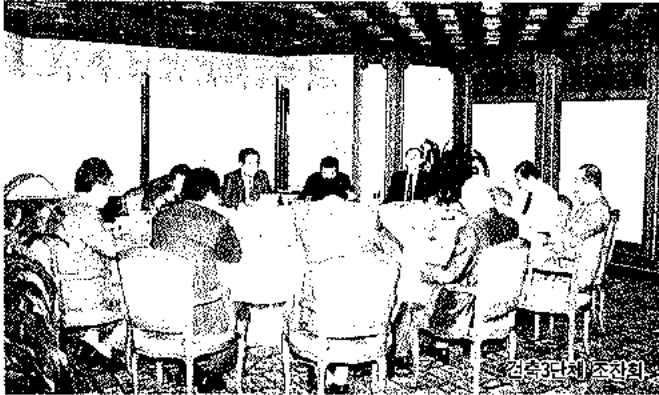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승시키는 綜合創作 行爲이므로 기업의 영리를 추구하는 건설업자(사공사)가 독점하도록 위임할 수 없다.

- 따라서 建築設計와 工事監理 業務는 建築士가 獨立的으로 遂行 육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의사항

- 建築士사무소와 건설업체간의 同伴者 (Partner Ship) 制度 導入
- 설계의 국외발주시 외국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재확설계에 국한하고 국내건축사로 하여금 실시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케 하는 協同體制의 制度化
- 建築士 고유업무인 설계·공사감리는 현행제도로 보호, 육성되도록 국가의 지원 필요 (금융·세제)

이에 앞서 본 협회는 '89년 12월 본 제도의 공청회(1989. 12. 13. 건설회관 에 참석하여 제도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對정부 건의안을 관계요로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0 전국건축사대회에서는 3천5백여 전 회원의 총의로써 반대결의안을 채택,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8회 理事會

本協會 '90 제8회 理事會가 宋基德회장의 주재로 지난 8월 9일 개최되어 종합건설업면허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종합건설업면허제도에 대한 대책(안) 승인
- 前페이지 記事 참조
- ◆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안) 승인
-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따른

본 협회 의견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건설부에 개진기로 함.

- ◆ 조사, 검사대행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
- 설계와 감리업무는 현행과 같이 각자가 수행토록 하고 조사, 검사업무 또한 본 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계속 수행토록 하되 그 방법을 개선하여 공증번호사사무소와 같이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그룹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함.

市道支部 監事會議

1990년도 제25회 정기총회를 대비한 자체 정기검사가 전국에 걸쳐 실시된다. 금번 정기검사는 지부별로 시도지부 소속 지부 검사가 실시하고 결과보고에 의한 서면감사로 대체하며 미진 지부에 대하여만 현지출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3, 14일 양일간 춘천 리오호텔 회의실에서 각 시도지부 감사 및 실무직원 집체교육이 실시되어 감사방향 및 지침이 시달되었다.

한편 본부 및 각 시도지부 감사 실시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감사기간
본부 : 10월중
지부 : 9월중(지부실정에 따라 선택)
- ② 감사자
본부 : 오운동, 김일영 감사
지부 : 소속지부 감사
- ③ 감사결과 제출
본부 : 1990. 10. 30
지부 : 1990. 9. 30

建築三團體 朝餐會

本協會는 建築三團體 조찬회를 지난 30일 롯데호텔 아스트홀에서 주최하고 건축계 현안에 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축3단체 회장단 및 행정담당자가 참석한 이날 조찬회에 본 협회는 宋基德회장, 鄭淳虎

부회장, 李永熙서울지부회장, 任仁赫사무처장이 참석하여 본 협회 주요 추진업무 현황 설명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비책, 건축법개정공청회등 건축3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본협회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건축실무 CAD 활용에 관한 세미나

本協會는 국제위원회(위원장 : 金知德)와 업무전산위원회(위원장 : 金昌端) 주관으로 건축실무 CAD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백여명의 CAD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英國 에딘버러대 교수겸 CAD 연구소 소장인 Aart Bij 씨와 金正植회원(양우종합건축)이 연사로 등단하여 CAD의 활용 및 관리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건축실무 CAD 활용에 관한 세미나

대전지부 건축사보 교육



大田直轄市 支部(會長 康祐植)

'90 건축사보 교육 실시

大田지부(회장 康祐植)는 지난 31일 대전 카톨릭문화회관에서 '90건축사보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내 건축사보 1백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송승호 지부부회장의 "건축사보 정신교육 및 오늘의 건축현실" 강연과 충남대 박만식교수의 "현대 건축물의 비고분석"의 順으로 진행되었다.